CS-24-E6-014

2023년 접수 건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배포본]

2024. 7.

국토안전관리원

일 러 두 기

▣ 취지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민원 사례집[배포본]을 발간합니다.
2. 단순 불만 민원사항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접수된 민원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안내

1.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1,2종 시설물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9. 취약공종
10. 안전관리비
11. 정기안전점검
12.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13. 기타

목 차

1. 1·2종 시설물 ····· 1
1.1. **하수처리시설 1 · 2종 시설물 여부(하수 처리장)** ····· 1
1.2. **1 · 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문의(건축물)** ····· 2
1.3. **1 · 2종 시설물 해당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문의(배수펌프장)** ····· 3
1.4. **제1 ·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 4
1.5. **제1 ·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옹벽)** ····· 5
1.6. **제1 · 2종 시설물 여부 문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6
1.7. **제1 · 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 7
1.8. **제1 ·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옹벽 형식에 따른)** ····· 8
1.9. **제1 ·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철도교량)** ····· 9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11
2.1. **의뢰기관 담당자 변경 방법** ····· 11
2.2. **공기연장으로 인한 기존 검토완료건 변경 방법** ····· 12
2.3. **현장점검에 대한 CSI 기능개선 건의** ····· 13
2.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가입의무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문의** ····· 14
2.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관련 공사 조회불가 현상 문의** ····· 15
2.6. **KISCON 공사 검색 시 공사명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 확인 문의** ····· 16
2.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시 공사명 변경 입력 가능 여부** ····· 17
2.8. **CSI 내 계정 담당자 변경 문의** ····· 18
2.9.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제출 승인 절차 개선 건의** ····· 19
2.10.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회원가입 문의** ····· 20
2.11. **CSI 건설사고 신고시스템 신고대상 문의(정보통신공사)** ····· 21
2.12. **CSI 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건 이력관리 여부 문의** ····· 22
2.13. **현장점검 조치결과 업로드 용량 제한 조치 건의** ····· 23
2.1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시스템 개선사항 건의 (1)** ····· 24
2.1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시스템 개선사항 건의 (2)** ····· 25
2.16. **안전관리계획서의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의 CSI 관리망 구축 건의** ····· 26
2.17. **CSI 로그인 ID의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27

2.18. **CSI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입력사항 개선 건의** ····· 28
2.19.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담당자 변경 방법 문의** ····· 29
2.20. **현장점검 대상 수립 시 SMS 문자서비스 시스템 개선 건의** ····· 30
2.2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공동활용 정보 API 요청 건의 (1)** ····· 31
2.2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공동활용 정보 API 요청 건의 (2)** ····· 32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 33
3.1. **5m 이상 거푸집에 대한 구조기술사 확인 대상 문의** ····· 33
3.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가능 여부** ····· 34
3.3.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검토 전 타워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문의** ····· 35
3.4.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견 중 '검토 미의뢰' 관련 문의** ····· 36
3.5. **안전관리계획서 가설장비 관련 문의(지하주차장 지붕층 중차량 이동에 따른)** ····· 37
3.6.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측계획 관련 문의** ····· 38
3.7.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의 적용 범위 질의** ····· 39
3.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조건부 적정' 시 사용승인 가능여부 문의** ····· 40
3.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관련 문의** ····· 41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43
4.1. **공구별 나누어진 옹벽 2종시설물 등록 방법 관련 질의** ····· 43
4.2.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작성에 관한 질의(한 건의 도급계약서 내 각각의 인·허가기관 승인 현장)** ····· 44
4.3. **현장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45
4.4.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 ····· 46
4.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보고 관련 문의** ····· 47
4.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문의** ····· 48
4.7. **종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문의** ····· 49
4.8. **준공 예정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문의** ····· 50
4.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가시설 계측 반영 여부** ····· 51
4.1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52
4.11. **통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 53
4.12. **안전관리계획서 내 공종별 자체점검표 관련 문의** ····· 54
4.1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기간 초과에 따른 질의** ····· 55
4.14. **시공사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승계 절차 등 문의** ····· 56
4.15. **시공사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승계 절차 등 문의** ····· 57
4.16. **철거공사, 건축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주체관련 문의** ····· 58

4.17.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 승인 완료 시기(공사준비 작업 해당 여부)** ····· 59
4.18. **하나의 허가신청에 따른 2개의 별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가능여부** ····· 60
4.1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점 문의** ····· 61
4.2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문의** ····· 62
4.2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주체에 대한 문의** ····· 63
4.22.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 64
4.2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문의(컨소시엄공사)** ····· 65
4.24.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준비 관련 문의** ····· 66
4.2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건축주 직영공사)** ····· 67
4.26.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착공 가능 범위 문의** ····· 68
4.2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감리미지정일 경우 문의** ····· 69
4.28.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문의(2019. 7. 1. 이전 입찰 대상)** ····· 70
4.2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구조계산서 첨부 관련 문의** ····· 71
4.30.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문의(제101조의2제1항 4의2호 관련)** ····· 72
4.3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문의** ····· 73
4.32.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지하매설물 현황 관련 문의(지하안전평가서 대체 가능 여부 문의)** ····· 74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 75
5.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관련 질의** ····· 75
5.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관련 질의** ····· 76
5.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절차 간소화 질의** ····· 77
5.4. **안전관리계획서의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중복 승인 및 검토결과 제출 문의** ····· 78
5.5. **CSI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담당자 변경 요청** ····· 79
5.6.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문의** ····· 80
5.7. **CSI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내용 수정 요청** ····· 81
5.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문의** ····· 82
5.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완료 전 공사진행 가능 여부 문의(콘크리트 타설 등)** ····· 83
5.10. **CSI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에 현장대리인 입력 문의** ····· 84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 85
6.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범위 및 CSI등록 여부** ····· 85
6.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관련** ····· 86
6.3. **CIP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 87
6.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 ····· 88

6.5.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 ····· 89
6.6. **거푸집설치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 90
6.7. **총괄, 건설장비, 가설구조물 시공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 91
6.8. **안전관리계획서 개정 시 검토기관 의견 필요 여부** ····· 92
6.9. **가설비계 설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강관 조립말비계 → 시스템비계)** ····· 93
6.10.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이후 단순 변경 시 승인 필요 유무 문의** ····· 94
6.11. **공사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재작성 여부 문의** ····· 95
6.1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범위 문의** ····· 96
6.13. **공동도급(분담이행) 수행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절차** ····· 97
6.14. **타워크레인 마스트 일부 파손으로 교체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및 승인 사항여부 확인** ····· 98
6.15.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보완 작성 문의** ····· 99
6.16. **구조계산서(검토서) 변경 시 보완 검토의뢰 여부** ····· 100
6.17.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및 변경 제출 기준** ····· 101
6.18.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시 계측수량 변경(감소) 관련 문의** ····· 102
6.19. **공사 범위 및 시기 변경에 따른 해체계획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103
6.20. **시행사(발주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 ····· 104
6.21. **안전관리계획서 인계 또는 양도에 관한 업무 절차 문의** ····· 105
6.22. **시공사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 ····· 106
6.2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도면 사업승인인가 변경 건)** ····· 107
6.24. **안전관리계획서 경미한 변경의 검토의뢰 및 발주청 승인 여부 문의** ····· 108
6.25. **안전관리계획서 변경/보완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문의** ····· 109
6.26. **안전관리계획서 상 공기변경 관련 문의** ····· 110
6.27.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의뢰 여부 문의(타워크레인 기종변경)** ····· 111
6.28. **기존 건축공사업자의 공사이행포기 시 안전관리계획서는 승계 여부 문의** ····· 112
6.29.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검토 의뢰 여부 문의(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을 수직보호망 수정)** ····· 113
6.30.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문의(낙하물방지망 변경)** ····· 114
6.31. **공법의 추가 시 안전관리계획 변경 의뢰 및 CSI 제출 여부 문의** ····· 115
6.3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기존에 제출한 2개의 공법 중 하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 116
6.33. **건설기계의 변경 시 안전관리계획 변경 여부** ····· 117
6.3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터널 보강 공법 추가)** ····· 118
6.35.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 문의(공사관계자 변경 시)** ····· 119
6.36.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방법 문의** ····· 120

6.37.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흙막이 설계 변경)** ····· 121
6.38.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콘크리트 타설 시공방법 변경)** ····· 122
6.39.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총괄:현장대리인, 조직도 등)** ····· 123
6.40.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옹벽 등 공종 추가)** ····· 124
6.4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설계변경 등)** ····· 125
6.4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경미한 설계변경 시)** ····· 126
6.4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리프트카 규격 변경)** ····· 127
6.4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업무 처리절차 문의** ····· 128
6.45. **검토의뢰(검토의견서) 보완 ·변경 여부에 관한 문의(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 조정 시)** ····· 129
6.46. **CSI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의 현장대리인 변경 관련 문의** ····· 130
6.47.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점 문의(설계변경 시)** ····· 131
6.48.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 ····· 132
6.49.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문의(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33
6.50. **안전관리계획서 인수인계 등 절차 문의(시공사 변경 시)** ····· 134
6.5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흙막이 설계의 경미한 변경)** ····· 135
6.5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 ····· 136
6.5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흙막이 공사 추가)** ····· 137
6.54. **안전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기준 관련 문의** ····· 138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139
7.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기준 문의(처짐 방지조치)** ····· 139
7.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성토 및 절토공사)** ····· 140
7.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기존 2종 시설물인 방파제에 추가 공사 시)** ····· 141
7.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건축주 직영공사)** ····· 142
7.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해체 가시설물)** ····· 143
7.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 144
7.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문의(5m이상 동바리 공사 관련)** ····· 145
7.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원자력시설공사)** ····· 146
7.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승인기관 문의(2m 이상의 자립식 가시설 사용 공사)** ····· 147
7.1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교량 보수공사)** ····· 148
7.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대수선 공사)** ····· 149
7.1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냉동기 설치공사 관련)** ····· 150
7.1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소규모 건축공사 중 2m 이상의 지보공)** ····· 151

7.1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절토사면 내 계단식 옹벽)** ····· 152
7.1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폭발물)** ····· 153
7.1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다수의 건축물로 되어있는 관광숙박시설)** ····· 154
7.1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낙하물방지망)** ····· 155
7.1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헥사곤(테트라포트) 제작)** ····· 156
7.1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폭발물)** ····· 157
7.2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가설울타리 계획변경)** ····· 158
7.2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국가하천 내 호안형 스톤네트)** ····· 159
7.2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160
7.2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공사 종류별 해당 여부_발전기 시설)** ····· 161
7.2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워킹타워)** ····· 162
7.2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전기공사)** ····· 163
7.2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발파공법 변경적용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 164
7.2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해체공사)** ····· 165
7.2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증축공사)** ····· 166
7.2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흙막이 지보공 추가)** ····· 167
7.3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고속철도 교량 내진보강공사)** ····· 168
7.3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종외 시설물)** ····· 169
7.3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단지조성)** ····· 170
7.3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에 따른)** ····· 171
7.3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3단 보강토 옹벽의 해석기준)** ····· 172
7.3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방열공사 및 냉동장비 설치공사)** ····· 173
7.3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건축물 일부 해체 및 리모델링 시)** ····· 174
7.3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기초 콘크리트 철거)** ····· 175
7.3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전기공사의 부대공사 등)** ····· 176
7.3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가로수·가로등 이설공종)** ····· 177
7.4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전기공사 내 관로공사)** ····· 178
7.4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리모델링)** ····· 179
7.4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가설구조물 중 동바리)** ····· 180
7.4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건설장비(천공기))** ····· 181
7.4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굴착_압입공법)** ····· 182
7.4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차수를 위한 시트파일(차수벽) 설치)** ····· 183

7.4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파이프 동바리 시공에 따른)** ····· 184
7.4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설계변경 및 5m이상 거푸집 끊어치기)** ····· 185
7.4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186
7.4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87
7.5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유지보수공사)** ····· 188
7.5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관급자설치 관급(가교))** ····· 189
7.5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토양정화용역)** ····· 190
7.5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워킹플랫폼 및 리프트(호이스트) 등)** ····· 191
7.5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엘리베이터 박스 시공 사례)** ····· 192
7.5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정기안전점검 항목 문의** ····· 193
7.5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DCM 공법 시 해상선 리더길이 관련)** ····· 194
7.5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문의(소규모안전관리계획_조절식 간이흙막이)** ····· 195
7.5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해체계획서 관련)** ····· 196
7.5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국가보안 시설물)** ····· 197
7.6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198
7.6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해체 허가대상과 해체 신고대상)** ····· 199
7.6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200
7.6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수중 발파공사)** ····· 201
7.6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하천시설물)** ····· 202
7.6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타당성 검토 공사)** ····· 203
7.6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옹벽공사)** ····· 204
7.6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05
7.6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문의(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 ····· 206
7.6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문의(기존 교외선 시설물 보수, 보강 및 개량 공사)** ····· 207
7.7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기존 교량의 일부 구간 확장공사)** ····· 208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 209
8.1. **2종시설물 주차타워 해체 신설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관련 질의** ····· 209
8.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체 선정 관련 문의(종외 시설물)** ····· 210
8.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문의** ····· 211
8.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검토 의뢰 기관** ····· 212
8.5. **안전관리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문의** ····· 213
8.6.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주체 및 해당 공종 관련 문의** ····· 214

8.7.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검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15

9. 취약공종 ····· 217
9.1.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타설용 동바리의 취약공종 적용 여부** ····· 217
9.2. **합동검토회의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문의** ····· 218
9.3. **안전관리계획서 중 합동검토회의 관련 문의(ILM교량)** ····· 219

10. 안전관리비 ····· 221
10.1. **1종, 2종시설물이 없는 공사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비 산출시 적용규정 관련 질의.** ····· 221
10.2. **안전점검비용 요율 산정 보간식 계산시 순공사비 관련 질의** ····· 222
10.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문의** ····· 223
10.4. **도급내역 상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 관리** ····· 224
10.5.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안전점검 계약금액 변경 관련 문의** ····· 225
10.6. **건설공사 안전점검비 사용 관련** ····· 226
10.7.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증액 계상 관련 문의** ····· 227
10.8.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기준 문의(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여부)** ····· 228
10.9.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 229
10.10.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계상 등에 대한 문의** ····· 230
10.11. **안전관리비 증액 관련 문의** ····· 231
10.1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 문의** ····· 232
10.13.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정 관련 문의** ····· 233
10.1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문의** ····· 234

11. 정기안전점검 ····· 235
11.1.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점검 질의** ····· 235
11.2. **안전관리계획서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변경에 관한 질의** ····· 236
11.3.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 237
11.4. **정기안전점검 횟수 질의 문의** ····· 238
11.5. **정기안전점검 완료 일자 기준 문의** ····· 239
11.6. **정기안전점검 수행 관련 질의** ····· 240
11.7.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건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 241
11.8. **건설기술진흥법-타워크레인점검 문의** ····· 242
11.9.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점검 대상 관련 질의.** ····· 243
11.10. **천공기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 확인** ····· 244
11.1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 245

11.12. PBD(Plastic Board Drain) 장비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 ····· 246
11.13.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여부 문의(보도육교 (L=96M(58+38 2경간) ····· 247
11.14. 정기점검업체 선정방법 문의 ····· 248
11.15. 초기점검 용역시 상태평가 필수여부 문의 ····· 249
11.16. 정기안전점검 횟수 관련 문의 ····· 250
11.17. 블루모듈폼 정기안전점검 대상 관련 질의 ····· 251
11.1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질의 ····· 252
11.19. 초기점검 계약 관련 질의 ····· 253
11.20. 거푸집 끊어치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 254
11.21. 초기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시기 ····· 255
11.22. 옹벽시공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여부 ····· 256
11.23. 장비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질의 ····· 257
11.24. 안전관리비 사용 시 정기점검에 대한 질의 ····· 258
11.25. 해체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계획 ····· 259
11.26. 건설중 안전점검에서 초기점검 대상여부 질의 ····· 260
11.27. 종시설물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질의 ····· 261
11.28. 추가공사(철거공사)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행여부 문의 ····· 262
11.29. 정기안전점검 대상 항목 중 복합가설시설물 및 가설교량에 관한 질의 ····· 263
11.30. 건설기술진흥법상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문의 ····· 264
11.31 시스템비계 높이 10-20미터 내외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 문의 ····· 265
11.32 건설현장 안전점검 관련 질의 ····· 266
11.3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 관련 문의 ····· 267
11.3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의 제1항 4의2 관련 문의 ····· 268
11.3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 관련 문의 (1) ····· 269
11.3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 관련 문의 (2) ····· 270
11.37.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점검 시 간단한 부재 변위 조사 관련 ····· 271
11.38. 정기안전정검 시기 경과 관련 문의 ····· 272
11.39 정기안전점검에 관련 문의 ····· 273
11.40.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문의(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74
11.41.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계획 변경 문의 ····· 275
11.42.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차수 및 실시 시기 문의 ····· 276
11.43.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관련 질의 ····· 277

11.44. **발주청이 지정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문의** ····· 278
11.45.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건설용 리프트)** ····· 279
11.46.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조정 문의** ····· 280
11.47.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 281
11.48.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82
11.49.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점검비용 문의** ····· 283
11.50.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관련 종합보고서 제출여부 등 관련 문의** ····· 284
11.51.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횟수 문의** ····· 285
11.52.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문의(지방상수도 이설 공사 및 우수관 공사)** ····· 286
11.53. **정기안전점검 관련 문의(터널 지보공)** ····· 287
11.54.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문의(상수도이설공사(지상상수도)** ····· 288
11.55. **정기안전점검 관련 문의(슬러리월 공법)** ····· 289
11.56.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한 문의(Top-Down 공법)** ····· 290
11.57. **정기안전점검 업체선정 관련 문의** ····· 291
11.58.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합벽데크)** ····· 292
11.59.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문의(가설장비 추가에 따른)** ····· 293
11.60. **정기안전점검 항목 관련** ····· 294
11.61. **타워크레인 등 정기안전점검 적용기준 문의(입찰공고 2020.12.14. 이전 현장)** ····· 295
11.62. **초기점검 실시관련 문의** ····· 296
11.63.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문의** ····· 297

12.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 298
12.1. **"안전점검 완료 후 제출"에서 완료 후의 정확한 시점 질의** ····· 298
12.2. **안전점검보고서 제출 대상 문의(개 · 보수공사)** ····· 299
12.3.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CSI 내 등록) 기한 문의** ····· 300
12.4.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문의** ····· 301

13. 기타 ····· 302
13.1. **건설공사현장의 동절기 안전점검의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 ····· 302
13.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의 건 관련 질의** ····· 303
13.3. **화재감시자 인건비 관련 질의(1)** ····· 304
13.4. **화재감시자 인건비 관련 질의(2)** ····· 305
13.5.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승인 기일** ····· 306
13.6.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관련 문의** ····· 307

13.7.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변경가능여부** ····· 308
13.8.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방법** ····· 309
13.9.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벌과규정 문의(과태료 등)** ····· 310
13.10. **기중기장비 항타작업에 사용시 장비등록기준** ····· 311
13.1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312
13.12. **건설공사 착공에 대한 질의** ····· 313
13.13.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서 작성 여부** ····· 314
13.14. **파일공사 관련 진단방법 질의** ····· 315
13.15. **해체공사 및 증축공사 동시 진행 가능 문의** ····· 316
13.16. **대수선공사 감리업체 선정필요 여부 문의** ····· 317
13.17. **안전관리계획 법령 관련 문의** ····· 318
13.18.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기준(신청자격) 문의** ····· 319
13.19.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적용 여부 문의** ····· 320
13.20. **타워크레인 조종사 취업 문의** ····· 321
13.21. **타워크레인 검사원 자격 문의** ····· 322
13.22.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진행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 323
13.2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3조(안전교육) 관련 문의** ····· 324
13.24. **계약 공사기간 종료 후 건설공사 중 사고 발생 책임 소재 문의** ····· 325
13.25. **해상교량 재하시험 문의** ····· 326
13.26.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건설공사 착공 가능 범위 문의** ····· 327
13.27.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 유무 문의** ····· 328
13.28. **지하안전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협의 간소화 건의** ····· 329
13.2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관련 질의** ····· 330
13.30.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등 CSI 정보망 외 타기관 제출 여부** ····· 331
13.31. **가설구조물의 종류 문의(터널 연직갱(수직갱) 출입 통로)** ····· 332
13.32. **제2종시설물의 초기점검 시 재하시험과 구조해석 실시여부 문의** ····· 333
13.33.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 334
13.34.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 유무 문의(1)** ····· 335
13.35. **정기안전점검기관 자격 유무 문의(2)** ····· 336

1. 1·2종 시설물

1. 1·2종 시설물

1.1. 하수처리시설 1 · 2종 시설물 여부(하수처리장)

● **질의 내용**

당현장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2종 시설물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장 계약 현황
공 사 명 :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공사(토목,건축/ 기계,설비)
발 주 처 : OO시 하수과
시 공 사 : OO종합건설, 공사금액 : 4,994,176,000원(vat포함), 계약일 : 2020.12.08

작업내용: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 =55톤/일, 건조시설 (신설) =60톤/일, 토목 가시설 지하 2층 9.1m 깊이 (폭10 , 길이 20m), 건축 구조물 지상 9.0m RC구조물, 나머지 소방 설비, 이 모든 공사가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계약입니다. 토목25%, 건축24%, 기계 50%, 설비 1% 입니다.

가) 2종 시설물 판단 확인
나)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판단 요청입니다.

● **회신 내용**

가. 상기 현장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현재 FMS상 구리하수처리장은 2종시설물인 것을 확인하였음)

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2종 시설물

1.2.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문의(건축물)

● **질의 내용**

연면적 9,322㎡(= 교육 연구 시설(4,974㎡)+운동 시설(4,347㎡))
해당 사업이 1 · 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질의하신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 종외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종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1·2종 시설물

1.3. 1 · 2종 시설물 해당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문의(배수펌프장)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군청이 발주처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도급금액 120억(관급 포함 150억) 정도의 하천 및 관로, 펌프장, 비개착공사 등으로 이뤄진 복합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용지보상 등의 문제로 착공 1년정도는 지났지만 공정율은 10% 내외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기 또는 재해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110㎥/min)을 거쳐 국가하천(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은 용지보상 관계로 아직 시공전인 상태)이 있습니다.

최초 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1 · 2종시설물에 저희 현장에 관한 사항(배수펌프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1 · 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하고 CSI에 등록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같이 우기시나 재해 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을 사용하여 국가하천으로 방류 하는 경우가 1 ·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에 내용처럼 만약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해당될 경우 1 · 2종 시설물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 재작성 및 CSI에 재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별도로 재작성 및 등록 없이 현장을(이력관리 등)관리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1)국가 하천의 배수펌프장, 2)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나.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기존에 CSI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종외시설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종시설물에 해당 될 시 CSI상 2종시설물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1. 1·2종 시설물

1.4. 제1 ·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 **질의 내용**

OOOOOOOOOO단지 진입도로(OO교 ∽ OO교차로)개설공사
BOX형 : 486m, ,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
제방겸용도 2차로에서 3차로 변경으로 해당 차로를 하천에 BOX형으로 개설하는 공사 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교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 **회신 내용**

가. 질의내용 및 첨부도면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은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형식의 도로교량에 해당하여 2종 시설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의 나항과 같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1]에 “1. 교량/ 가. 도로교량/ 제2종시설물/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및 [별표 1] 하단의 비고에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1. 1·2종 시설물

1.5. 제1 ·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옹벽)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자연석옹벽(산벽) 높이 4.9M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종시설물은 높이 5m 길이 100m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이 2종시설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말씀하신 1~3단의 옹벽의 기초는 옹벽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 기초가 맞지만 하부 옹벽이 상부 옹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참고하면 옹벽 및 절토사면의 2종 시설물의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이므로 노출된 높이가 5.0M 이상 이므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1·2종 시설물

1.6. 제1 · 2종시설물 여부 문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질의 내용**

증설하는 정수장에 대한 정기안점검 및 초기점검 용역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업체입니다

기존 정수장은 용량 1000톤 이상으로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금회 300톤 용량에 신축되는 시설물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축되는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 분리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질의 :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시설물은 용량 300톤 시설물로 초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이 용량 300톤의 시설물로 초기점검 미대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이 2종이기 때문에 초기점검 시설물로 적용이 되는건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귀하가 질의한 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최대 처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며, 별도 구조물로 증설하는 건설공사이나 동일 사업장에 동일 시설물로 운영관리 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지관리공사가 아닌 증설공사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이므로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설되는 용량 300톤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하셔야됩니다.

1. 1·2종 시설물

1.7. 제1 · 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 **질의 내용**

국가하천 둔치 저류부 저수호안이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국가하천의 제방은 2종시설물이며,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방편에 제방 시설물 중 호안에 저수호안이나 호안머리보호공 등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저수호안은 제방 시설물의 부속시설로 2종시설물에 포함됩니다.

1. 1·2종 시설물

1.8. 제1 ·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옹벽 형식에 따른)

● **질의 내용**

도로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절토부와 성토부에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 및 차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재료형식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네일식생 옹벽, 기타 특허 옹벽 등 모든 옹벽이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이면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2. 2종 시설물로 구분되는 높이 5m 이상의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 노출되고,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이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1) 3개 단으로 이루어진 옹벽이 높이 5m가 넘어가는 부분은 연장이 70m 이나 높이 5m 이하인 부분도 포함하면 연장이 100m 를 넘어가는 경우 점검대상 시설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적으로 높이가 4m 이지만 연장이 200m 가 넘어가는 옹벽의 경우에는 점검대상 시설물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물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를 말하며, 다단식으로 된 경우 옹벽의 높이는 각단의 높이의 합을 말합니다.

나. 즉, 다단식 옹벽의 경우 1단 옹벽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이므로 각단의 옹벽 높이의 합이 전체 옹벽 높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란 하나의 옹벽에서 5m 이상인 옹벽구간들의 합을 말하며, 만약 대상 옹벽이 2종시설물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5m미만 구간도 하나의 시설물(옹벽)이므로 5m미만 구간도 포함하여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다. 귀하께서 첫번째 예시로 든 옹벽은 높이 20m의 계단식옹벽이며, 각단의 옹벽이 모두 가장 긴 연장의 70m옹벽 구간 내에 존재한다면, 높이 5m이상인 옹벽연장이 70m인 옹벽이며, 계단식 옹벽이 전개도상 어떠한 형태로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5m이상인 옹벽의 연장이 달라져서 2종 시설물 해당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 든 높이 4m 연장 200m가 넘는 옹벽은 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1·2종 시설물

1.9. 제1 ·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철도교량)

● **질의 내용**

문화광장 내 순환열차 궤도 설치공사 중 철도교량(연장 100미터 이상)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되나요?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에 철도교량에 대한 종별 구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철도교량의 제2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법령에 ‘철도’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정의)제1호에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호에 철도의 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 해당 순환열차 철도교량이 연장 100미터 이상이라면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 의뢰기관 담당자 변경 방법

● **질의 내용**

인사발령으로 발주청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나, 시공자가 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시, 이전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경우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내용**

가. 우선 변경된 발주청 담당자가 CSI 내 회원가입 후 시공사에서 의뢰개요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검토완료 시 : 의뢰개요 → 처리현황 조회 → 의뢰개요 수정 → 발주청 담당자 변경)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2. 공기연장으로 인한 기존 검토완료건 변경 방법

● **질의 내용**

당 현장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연장되어, 기존에 검토 완료 되었던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 및 보완하려 합니다.

검토가 완료된 건이라, 수정이 되지 않는데 추가 보완 및 변경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현장 담당자인 민원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시어 의뢰개요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변경·보완 검토의뢰를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3. 현장점검에 대한 CSI 기능개선 건의

● **질의 내용**

현장점검 계획과 결과를 서면(공문)으로 하다가 CSI가 생기면서 이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고 CSI로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현장은 CSI 사용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점검 완료를 하지 못하는 건이 너무 많습니다. 대전국토관리청뿐만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도 점검 미완료 건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될 경우 점검만 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자가 현장에서 받은 조치 결과를 CSI에 직접 등록하고 점검을 완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조속히 기능을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현재 CSI 현장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방법은 점검 수검자가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점검자도 입력할수 있도록 기능개선 요청하는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나. 2021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이 만들어지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업 종사자들 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가입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도 많은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현장점검 결과 입력 방법을 설명해주는 점검자의 노고가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제도 개선 시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는 국토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개선 제안을 위해서는 저희 원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음으로 국토부민원을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가입의무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문의

● **질의 내용**

1. 건설사업자는 무조건 CSI에 가입하는지 궁금합니다.
  1-1. 건설사업자가 가입해야 한다면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는 가입해야하는 조건 이 궁금합니다.

2. 안전관리수준평가는 건설공사 200억이상(관급자재포함) 인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1 평가기관은 ?
 2-1 평가대상 은 누가, 언제 ?

3. KISCON에 등록한 공사는 무조건 CSI에 등록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등)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가입을 하여 업무진행을 하고, CSI에 등록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CSI 미가입시 업무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65조(평가대상 등)에 의하여 200억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평가주체는 국토교통부로, 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대상 선정 자체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하고, 선정시기는 11월 중으로 통보예정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록된 공사를 입력이 필요합니다.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대장 및 업무처리 흐름도를 알고싶으시다면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 수준평가 탭에 매뉴얼 다운받기 및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관련 공사 조회불가 현상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KISCON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공사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사명 : 0000광역(0단계) 0000 송수관로 이설공사

● **회신 내용**

가.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근 KISCON과 CSI의 연계 시스템 기능 개선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검토결과 제출 등 KISCON 건설공사대장 검색 시 누락공사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KISCON 건설공사대장 검색 시 신고한 공사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의 사본(pdf)을 아래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은 KISCON에 통보 후 CSI에 등록되기까지 1일이 소요되오니 당일 등록하신 공사대장은 명일 공사명 검색 후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6. KISCON 공사 검색 시 공사명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 확인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사명 기재 시 KISCON공사명 사용을 위해 검색 시 검색이 안됩니다.

접수 전 KISCON으로 통보하였으며 1일 경과하였을 경우 전산의 오류가 있겠거니 하여 기다렸습니다.

2일째에도 변함없이 검색이 안되는데 전산오류 이신건지 아니면 KISCON통보 절차가 잘못 되었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명 : OO OO교육도시 D-9 공동주택 신축공사 로 KISCON 통보하였는데 검색이 안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는 KISCON 공사대장과의 연계를 통해 1일 1회 주기로 연계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명으로 연계데이터의 검색결과 CSI에 전송되는 KISCON공사대장의 DB검색 결과 해당 공사명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나. CSI에서의 연계오류는 없는것으로 판단되오니 KISCON 공사대장 통보가 올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시 공사명 변경 입력 가능 여부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공사명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에 따른 (1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작성 중입니다.

1. 질문사항
KISCON 입력 공사명은 도급계약서 명칭인 'OO개발사업 신축공사'로 공사명이 입력되어 있으나, 이를 자체공사 클릭후 'OO 해체공사'로 수정하여 입력해도 되는지요?

2. 사 유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존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금번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해체공사만 포함됩니다. 'OO해체공사'로 공사범위를 명확히 표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공사명은 ①KISCON 공사명 사용, ②세움터 공사 사용, ③자체공사 공사명을 입력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나. 기존에 입력하신 KISCON 공사명을 자체공사 공사명으로 변경요청시 인·허가 기관의 확인 후 변경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또한 신규등록 전에는 공사명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8. CSI 내 계정 담당자 변경 문의

● **질의 내용**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정보변경을 통해 담당자를 변경하려 하는데, 이름칸 비활성화, 핸드폰번호 변경 불가 등 담당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계정 담당자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유선상으로 통화 후, CSI 회원 탈퇴 및 재가입을 통해 계정 담당자를 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렸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9.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제출 승인 절차 개선 건의

● **질의 내용**

현재 CSI 시스템 운영상
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감리확인→발주청확인
2)검토완료 후 결과보고 제출시 : (감리확인) → 발주청 확인
3)정기안전점검보고 실시시기를 수정코자 하면 해당내역 다 삭제 후 재작성하고 건건이 발주청 확인 필요함

확인하는 스텝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계획서, 결과서, 점검보고서 메뉴가 나뉘어지는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있을 수 없나요? 계획서 제출해서 검토완료되었으면, 결과보고서도 제출완료하고 단계별 승인과정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발주청에서 빠르게 확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때마다 연락해서 아쉬운 소리해야하고, 연락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해주는 것도 아니고...시공사 입장에선 난감합니다.

정기안전점검시기 수정같은 경우도 내역 건건이 발주청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한꺼번에 승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되나요?

시스템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검토의뢰, 승인, 제출 등 모든 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부터 제7항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단계별, 공사 단계별 등으로 진행되어 절차의 간소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발주청 승인 전 감리확인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 발주청 승인 통보 후 7일 이내 CSI에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CSI 제출
- 공사 종료(준공) 후 3개월 이내 종합보고서 제출

나. CSI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도 CSI 기능개선 및 절차 간소화가 일부 적용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중 1·2종 시설물의 경우 1·2종 검토의뢰 불러오기를 통해 제출할 경우 감리확인을 생략하고 발주청 확인 단계로 넘어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 CSI 기능개선 및 절차 간소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의하신 사항 중 추후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0.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회원가입 문의

● **질의 내용**

일선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건설안전을 공부할 동기가 있어서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건설안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입을 하고자 했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넘사벽이 있더군요.
(우선 부서 직책의 기입 그리고 승인관리자의 승인 등)

몇 달 씩 일을 하다가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근무 형태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도
현실의 실무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자기 회사의 근로자로 생각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도 발급해주지 않으려는 회사가 많은 실정이므로
사이트 가입을 위해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승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체의 그 저의가 있지는 않은지?
무엇 때문에? 등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 볼 것 같아 말을 꺼내는 자체부터 부담스럽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소속도 직책도 없습니다. 그저 비계공일 뿐입니다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능공이라서 안전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안전에 대한 소식과 기술은 세상에 널리 퍼질 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요?

건설교통부산하 전문 국가기관의 홈페이지가 마치 국가기밀을 다루는 주요보안기관인 마냥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회원가입할 길을 마련해주세요 신원확인에는 다양하게 협조하겠습니다.

● **회신 내용**

가.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 CSI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관련 정보 취득 및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해당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소속으로 회원가입하시어 사고사례문자 등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며,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추가로 건설안전 관련 정보는 CSI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Library"에 건설안전 관련 자료를 제공(비회원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1. CSI 건설사고 신고시스템 신고대상 문의(정보통신공사)

● **질의 내용**

00 000지구의 정보통신공사 업체입니다. 안전기획실-3258(2023.07.07) 공문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사고가 발생 했을시 CSI를 통해 건설사고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의무 미 이행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CSI에 가입을 해야하는 바.
저희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CSI에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가입이 되지 않아 CSI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고의 신고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는 나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CSI 건설사고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회원가입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2. CSI 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건 이력관리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현장 내부에서 감리단과 안전관리계획서 최초 승인 이후 1차수정이 있었고 2차 수정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CSI에는 최초이후 1차수정은 이력관리기준으로 보고 2차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수정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확인후 CSI에도 필수로 꼭 올려야하는지 아니면 이력관리로 감리단과 시공사만 가지고 있어도 이상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1.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 공사 예정공정표 및 가설물 배치계획도 수정내용첨부
   다.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 조직표, 협의체 구성조직표, 안전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서류 수정내용 첨부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화재소방 조직도, 수방 조직표, 비상복구장비 및 자재비치 계획은 수정내용 첨부

2. 공정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외부시스템비계 설치계획도 수정내용 첨부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종 외 시설물은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CSI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3. 현장점검 조치결과 업로드 용량 제한 조치 건의

● **질의 내용**

조치결과서 사진첨부 양식 중 첨부 가능한 용량이 너무 작아 붙여넣기가 힘듦
첨부파일 업로드 용량을 키워 첨부 파일을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회신 내용**

가. 현재 현장점검 조치결과의 업로드 용량은 10MB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조치결과 내용과 관련없는 방대한 자료 를 업로드 하는 경우나 조치결과와 무관하게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의 방지를 위함입니다.

나.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는 점검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부분만 발췌하여 업로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파일 크기 축소 등 기능을 활용하여 업로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시스템 개선사항 건의 (1)

● **질의 내용**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검토결과 제출 시 "검토의뢰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어 업무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편의가 향상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의뢰 불러오기를 통해 제출 시 "진행상태 내역" 란에 시공사의 제출일자가 표기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이력 확인이 어려운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면 확인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토의뢰 불러오기를 사용하면, 별도의 등록/제출 절차 없이 바로 "05.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제출"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기 등록 첨부파일 + 검토의뢰 불러오기로 불러온 첨부파일이 한꺼번에 업로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시 : 감리/인·허가기관 반려자료를 다시 재제출하는 경우)

이에, 검토의뢰 불러오기 시 기존에 첨부된 문서를 삭제시키고 새롭게 불러온 문서로 대체하는 방법이나, 검토결과 불러오기와 검토결과 제출 메뉴를 나누어서 "불러오기 〉 시공사 담당자가 첨부파일 중복여부를 직접 확인/삭제 〉 검토결과 제출 버튼을 클릭"하는 식으로 업무를 세분화 한다면 중복자료가 제출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 내용**

가. ‘진행상태 내역’에 제출일 미표기 및 ‘검토의뢰 불러오기’ 이후 수정기능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시스템 개선에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나. 참고로, ‘검토의뢰 불러오기’ 후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러오기 후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기 전 확인/취소 화면에서 취소를 선택, 공사개요 우측 하단의 임시저장 후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시스템 개선사항 건의 (2)

● **질의 내용**

1. 지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시스템 개선사항 건의의 건"의 후속입니다.

2. 해당 건의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 답변 나. 에 따르면, "'검토의뢰 불러오기' 후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러오기 후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기 전 확인/취소 화면에서 취소를 선택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3. 해당 답변을 확인한 뒤 검토결과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여 한개 현장을 선택한 뒤 검토결과 불러오기를 직접 시행해본 결과, 확인/취소 팝업창에서 취소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제출 단계로 넘어가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또한, 비슷한 문제로, '1·2종 검토의뢰'에서 처리현황 조회 〉 기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선택한 뒤 "변경·보완 검토의뢰"를 선택하면 별도의 팝업 또는 알림 없이 바로 보완(n차) 시공사 작성중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5. 이로 인하여 CSI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담당자들은 본의아니게 검토결과 제출을 하거나, 보완 검토의뢰 페이지를 생성하고 이를 삭제하기 위해 국토관리원이나 인·허가기관의 담당자에게 삭제요청을 하거나, 삭제 방법을 몰라서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6. 따라서, 검토결과 제출(불러오기) 및 1·2종 검토의뢰 〉 변경·보완 검토의뢰 시 시공사 측에서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삭제권자(국토안전관리원 및 인·허가기관 등)의 업무부담 감소 함께 시공사 업무담당자가 본인의 실수를 직접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제안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검토의뢰 불러오기' 후 확인/취소 화면의 취소기능은 확인 결과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불특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조속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결과 제출의 '검토의뢰 불러오기' 및 1·2종 검토의뢰의 변경·보완 검토의뢰 후 팝업창에서 확인 또는 수정(취소)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 '검토결과 제출(불러오기) 및 1·2종 검토의뢰 〉 변경·보완 검토의뢰 시 시공사 측에서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은 시공사의 회수 및 삭제 기능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후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6. 안전관리계획서의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의 CSI 관리망 구축 건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공사현장은 대부분 자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시행하는 와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체안전점검은 매일 시행하는 것이고,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는 2주에 한번씩 시행하게 되어있어 낭비되는 종이의 양이 엄청납니다

전자서류로 관리 할 수있게, CSI에서 망을 구축해서 관리할 수 있게 건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자체안전점검 및 이행보고 서류 등의 전자문서 CSI 등록관리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건설공사의 규모,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일괄 적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나. 다만, 건의하신 사항 중 추후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7. CSI 로그인 ID의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CSI에 등록 및 회사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전회사의 ID(sam*****)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등록한 상태인지라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는데, ID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비밀번호 분실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며, 소속기관(회사) 변경은 '마이페이지-내정보 변경-소속기관 변경'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나. CSI ID는 1인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계정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 CSI ID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ID를 탈퇴 후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ID로 재가입 불가)

라. 이외의 방법으로는 ID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8. CSI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입력사항 개선 건의

● **질의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

2.4.2 공사개요 기관정보 입력
공사개요 입력 후 기관정보 입력단계입니다.

03.난의 기재사항의
1) 건설사업관리인 또는 공사감독자 관련
→ 입력자들은 설명(~인은 사람을 뜻함)에 따라 이름을 기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하지만 돋보기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업체명 또는 발주청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혼선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이 경우에는 공사감독을 발주기관이 직접할 경우에는 기관명으로, 발주청의 감독업무을 전문용역업체에 대행시킬경우 용역업체명을 기재하도록 설명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감리단장 관련
→ 감리단장 보다는
→ 상기과 관련하여 직접감독인 경우에는 담당감독자명, 대행용역인 경우에는 담당안전관리담당자명 기재가 보다 더 업무진행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 이는 최근 발주청의 대행용역시행시에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공사 전기간을 통해 해당공사 안전관리담당 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1)번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입력에 대한 내용은 먼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소속기관을 돋보기를 클릭, 검색하여 선택하면 담당자 돋보기 검색 시 선택된 소속기관의 소속인원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 선택 시 선택의 편의를 드리기 위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2)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감리단장 뿐 만 아니라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내문구를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19.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담당자 변경 방법 문의

● **질의 내용**

기 제출 의뢰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시공사 업무담당자 변경 요청 드립니다.
시스템 상에서는 변경이 불가하여, 이렇게 문의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뢰 공사명 : 000 공장 00000PJT (SD-0000-00000)
시공사 업무담당자 : OOO -〉 시공사 업무담당자 : 김영주 / 010-OOOO-OOOO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담당자 변경은 '해당 현장의 개요 상 지정된 담당자 또는 승인관리자'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담당자 변경시 신규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 CSI(안전관리계획서)→1, 2종 검토의뢰→처리현황조회→공사명 클릭→공사개요 하단→공사개요 수정→변경된 담당자 지정 후 저장
- 신규 담당자 회원가입 방법은 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통합포털→[온라인 교육 자료]종합정보망 회원 가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CSI상 담당자 변경 공사개요 변경 등에 관하여는 CSI 시스템운영 콜센터(1588-8788)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20. 현장점검 대상 수립 시 SMS 문자서비스 시스템 개선 건의

● **질의 내용**

CSI 내 기능개선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현재 현장점검을 수립 및 실시 후 결과통보 시, 건설기술인에게 sms(문자서비스)발송되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문제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점검시행자는 해당 점검대상자(건설기술인)에게 점검3일전'까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CSI점검계획을 수립시 점검대상자에 별도 발송이 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행정처리가 중복으로 진행되고있으며, 그렇다보니 점검대상자가 해당점검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 민원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점검계획 수립시 건설기술인에게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가능한지 문의

● **회신 내용**

가. 현장점검 대상 선정 시 문자서비스 발송을 시스템 적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등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사항 등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2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공동활용 정보 API 요청 건의 (1)

● **질의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공동활용 정보 API 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CSI에 회원 가입이 되어야만 요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건설업에 등록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사례 및 아차사고 API 서비스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건설업 등록 없이 불가한 사항인지요?

정보 요청 사유는 사고 사례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 **회신 내용**

가. 현재 CSI의 정보공동활용체계시스템은 CSI에 가입된 회원에 한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대국민 개방에 대한 사항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제도적인 사항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데이터 개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2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동활용 정보 API 요청 건의 (2)

● **질의 내용**

저는 어느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현재 CSI의 정보공동활용체계시스템은 CSI에 가입된 회원에 한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대국민 개방에 대한 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제도적인 사항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데이터 개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데이터를 빠른시일 내에 대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1. 5m 이상 거푸집에 대한 구조기술사 확인 대상 문의(끊어치기, 분할타설)

● **질의 내용**

1. 해당 현장은 총 높이 7.40m(근입장 1.5m 포함)인 시트파일 가시설과
총 높이 5.05m(확대기초 높이 0.5m 포함) 인 RC 저류조 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때, 확대기초 0.5m를 포함하는 총 높이 5.05m 의 RC 구조물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되어
거푸집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시공 시 확대기초 0.5m를 먼저 완공한 이후, 벽체는 높이 2.1m 씩 두 번에 거쳐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를 타설한 이후, 마지막에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5m 이상의 거푸집을 일시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5m 이상 거푸집에 대한 구조기술사 확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설치기준은 바닥 구조체 등 상부면에서 설치구간의 상부 슬래브 하면 및 측면 거푸집까지 높이를 의미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의 높이 또는 거푸집의 단일 규격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다. 또한, 존치된 1차 거푸집 위로 연결하여 2차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설구조물로서, 이에 대한 전도, 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조체의 거푸집 높이를 합산하여 거푸집 높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라. 따라서 5미터 이상의 기둥, 벽체 거푸집을 끊어치기 할 경우에도 하단부의 거푸집이 존치되어 있다면 거푸집 총 높이에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가능 여부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장에서는 전문업체(파일지정공사, 타워크레인 설치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사업승인청, 국토안전관리관리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확정 전이므로, 항타기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같은경우,
현장투입 예상되는 장비기종 2~3가지 사양 모두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성해서 심사의뢰를 하고,

추후 시공전문업체 선정 후, 그 기종안에서 선택해서 설치사용하고,
만일 예상되는 기종으로 설치되지 않을경우에는,
기종변경 승인심사를 요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항목 중 타워크레인은 사용예정인 기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전성계산서 포함)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착공 전에 장비 기종을 확정지을 수 없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추후 업체 선정 후 제출하겠다는 검토제외 요청을 하시면 검토 미의뢰로 회신합니다.

나. 항타기나 천공기의 경우는 사용 예정인 기종을 선정하여 검토요청하시면 됩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3.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검토 전 타워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타워크레인 브레이싱이 미확정인 관계로 검토 미의뢰 하였음

관리원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에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중 브레이싱 안전성 계산서 및 연결상태 보완 요청하였으며, 관리원의 검토의견에 의거, 발주청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 하에 타워크레인 설치하였음 추후 브레이싱 안전성계산서 및 연결상태 보완하여 귀 원의 적합 판정후 브레이싱 설치함

타워크레인 설치 시 귀 원의 보완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브레이싱은 타워크레인 설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발주청 의견(공문수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공사(타워크레인 기초설치포함)를 착수한 사실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위반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검토기관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시행령 제98조제5항의 각호의 기준으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음에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다만, 문의하신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 안전성 검토항목이 보완 또는 검토 미의뢰일 경우 타워크레인의 기초 구조 안정성 계산과 타워크레인 제원표에 자립고 유지가 가능한 높이에 대해 검토를 완료 받았기 때문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다.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제작 전 현장의 여러 변수들이 작용 할 수 있음으로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제작 전 현장 실측 후 구조안전성검토와 제작을 진행하고 설치 전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4.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견 중 '검토 미의뢰'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당 현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적정으로 검토 받았으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가.가설공사', '나.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다.콘크리트공사' 항목 중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기로 하고 '검토 미의뢰'로 검토의견을 받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 미의뢰된 세부공종 착공 전 보완 제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수검 시 점검 지적사항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갑지 중 공종별 세부 안전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이 '검토 미의뢰'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세부공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모두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소명하고자 합니다.

문의 1. '검토 미의뢰'로 되어 있는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의 모든 공종은 착공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첨부문서(을지)에 있는 '검토 미의뢰' 항목만 제외하고 착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문의 2. 만약 검토 미의뢰된 세부 공정외의 다른 공정은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검토 미의뢰'로 표기되어 있는 검토의견서를 '조건부 적정' 등으로 표기하고, 주요내용 란에 "일부 검토 미의뢰항목(○○○,□□□...) 외 착공가능"으로 표기하여 검토의견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7] 제1호에서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토록 되어있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종은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와 같이 위 규칙에서 명시한 대공종을 말하며 해당 공종을 작업분류체계(WBS)에서 어느 단계의 작업까지를 말하는지 규정은 없습니다.

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검토기관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시행령 제98조제5항의 각호의 기준으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안전관리계획서 판정.승인기관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시 해당공종의 범위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으로서 우리 관리원에서는 해당공종 착공 전의 의미를 대공종의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공종 착공 전 모든 해당 공종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곤란함으로, 위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각 목의 대공종인 '콘크리트공사' 등이 아닌 '갱폼', '층고가 높은 거푸집동바리(시스템동바리)' 등과 같이 세부 공종을 해당공종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5. 안전관리계획서 가설장비 관련 문의(지하주차장 지붕층 중차량 이동에 따른)

● **질의 내용**

저희 현장은 공사중지 중 가시설 해체 작업만 승인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 중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문의입니다.

타워크레인해체시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할 예정인데, 저희 현장 기존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중 공사차량 운행에따른 지하주차장 지붕층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레미콘차량, 덤프트럭, 펌프카)

현재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할 자리에 추가로 구조검토 의뢰를 맡겨놓은 상황

이 구조검토결과를 CSI에 추가적으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신규 검토 시 장비 사용계획에 따른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현장에 투입될 이동식 크레인의 용량별 제원 전체, 양중자재의 최대중량을 고려한 전도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동선에 따른 주요 부재 구조안전성 검토, 중차량 이동 및 작업구간 하부 슬래브의 안전성 확보 방법 및 그 결과에 따른 보강 상세도면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나. 당 현장의 경우 기존에 중차량 이동 및 작업구간 하부 슬래브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 검토 받은 구조안전성 검토의 장비 하중 조건이 크게 변경되어 구조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받은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이 필요하겠으나, 기존과 비슷한 조건이거나 이전보다 장비 중량이 하회할 경우 추가로 받으신 구조 검토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6.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측계획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2종시설물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2종시설물(500톤. 하수처리장 및 관로공사)은 건진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따라 계측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흙막이 계측관리로 맨홀펌프장 81개소 (굴착 4.5m 이상) 추진 4개소 등에 대해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변형율계 등을 계획했습니다.

VE진행중 경제성을 높이고자 펌프장(81개소, 계측계획을 삭제), 추진기지(지중, 지하, 변형계 각 4개/기지 설치 → 각 2개/기지 설치)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관련 법률(건진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3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설치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설치개소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당 현장 펌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최대 15일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여 주신 펌프장의 계측기 전체 삭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설치계획이 필요함으로 일부간에 계측기 설치를 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추진기지의 계측기 설치 개소의 축소는 부위별 심도에 따른 위험구간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계측기를 설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기존계획 계측기 설치개수 변경을 하실 경우 관리원에서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승인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7.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의 적용 범위 질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상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 적용 범위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 아래와 같은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1) 이동식 지능형 CCTV
2)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스마트 변위 측정기
3) 근로자 안전모 부착식 위험 알림기기
4) 밀폐공간 작업 관련 스마트 가스측정기
5) 스마트안전 통합관제시스템
6) 스마트안전 시스템 데이터 중계기

상기와 같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따라서 사용 목적(성격)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분이 됨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나와있는 품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나와있는 품목 외에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사용 목적에 대해 협의하여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조건부 적정' 시 사용승인 가능여부 문의

● **질의 내용**

저희 현장은 최초 착공 전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의견을 "조건부 적정"을 받은 상황으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입주자사전점검 및 도품질점검을 거쳐 관할 허가청에 사용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할 허가청에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 공종별 검토결과를 필히 "적정"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판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 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기관인 관할 인·허가청에서 검토기관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시행령 제98조제5항의 각호의 기준으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대상 공사의 사용승인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참고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7] 제1호에서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토록 되어있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승인을 득하면 됩니다.

3. 검토 의견 관련 질의

3.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회신 내용 관련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안전성계산서'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2. 검토의견 중 '건설기술 용역업자 서명 또는 날인 필요'는 기제출된 상세도면에 보완하여 업로드를 하면 되는지 것인지
3.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4. CSI 내 '컨설팅요청' 이 무엇이며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지

위 4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1,2) E/V 기계실 바닥 슬래브 설치계획에 대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로 보이며, 안전성 계산서 작성시 안전성계산서에 대한 서명 또는 날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3)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서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원설계 용역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용역계약상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 작성검토업무가 원설계 용역업자의 과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가설구조물 조건상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를 말합니다.

다. (4) CSI 안전관리계획서 '컨설팅요청' 항목은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해당현장 검토자가 직접 답변하여 민원만족도를 개선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반복적인 재검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검토의견에 대한 컨설팅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컨설팅요청'을 활용하시어 검토의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 공구별 나누어진 옹벽 2종시설물 등록 방법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1. 문의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규정에 따른 '준공 또는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제2종시설물 관련 서류 제출(등록)여부 확인 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배 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시·군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각 별개의 시설물(1동~8동)에서 건축허가의제로 진행되는 '개발행위준공 신청'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기가 각 동별로 상이 할 경우, '준공 또는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이 A건설사(사업주체)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상에 제2종시설물(보강토옹벽:H=0.5 ~ 5m, L=953m)관련 서류를 제출(등록)하였는지 확인해야하는 시점

* A건설사(사업주체)에서 총8개(1동~8동)의 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계획(붙임 도면 참고)

● **회신 내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물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나.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해주고 결과에 대해 관리를 하는 기관이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강토 옹벽시공에 따른 2종시설물 등록 시점 및 정기안전점검 횟수에 대해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 다만 동별 개발행위 허가를 각 동별로 받고 전체 준공후 하나의 2종시설물 옹벽일 경우 '나. 을설'과 같이 가장 먼저 공사가 완료된 주택부지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이 신청된 시점에서 제2종시설물 관련서류를 제출(등록)하고 추후에 보강토 옹벽공사가 완료된 부지는 앞서 등록한 제2종시설물 관련서류를 변경신청 하여야 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작성에 관한 질의(한 건의 도급계약서 내 각각의 인·허가기관 승인 현장)

● **질의 내용**

1. 당 현장은 하나의 도급계약서로 계약되어 있으나 하나의 부지 내에 지식산업센터(연면적 46,304.95m2-OO구청 인·허가, 서울 OO구 OO도시개발사업구역내 D15 위치)와 OOO(연면적 16,575.42m2-△△시 인·허가, △△ △△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Ds15위치)으로 각각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개의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 현장은 각각의 인·허가 승인을 받은 현장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나의 인·허가 건에 대해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허가 한 건에 대해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현장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각각 다름으로 기관별 안전 및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3. 현장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질의 내용**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작업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로 정의되어 있어 나무 정리등의 작업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 공사는 가능하나 본공사를 위한 터파기 진행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 공사 착공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추가작업은 지양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4.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

● **질의 내용**

최초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가설 등 몇 가지 공정에 대하여 착공 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검토 미의뢰한 건이 있습니다.

이후 인수인계를 과정에서 관리원의 최근 검토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 이미 해당 공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검토 미의뢰)

안전점검은 수행하였으나, 안전관리계획서가 미리 검토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정기안점검검 미수행에 따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15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벌점,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며 늦었지만 미수행한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시정명령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 1항 4호(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확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안전점검 종류 및 절차)를 위반한 해당 현장에 대하여 아래의 건설기술 진흥법을 참고하시어 관련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행정처분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1]과태료의 부과기준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보고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가. 종외 안전관리계획서의 1 · 2종 변경관련
- 최초 0000 0000 0000 신축공사에 대해서 타워크레인만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종외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검토결과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현장 감리단/국토안전관리원 검토결과 당사 공사는 "종외"가 아닌 "1 · 2종"으로 검토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1 · 2종"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검토 의뢰 후 신규 및 변경3차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1 · 2종"으로 검토 완료된 자료를 검토결과 등록을 하려고하니 당사 KISCON 공사명으로 이미 "종외"로 등록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본 외에 추가할 수 없어 당시 국토안전관리원에 문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종외"로 등록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보완차수로 "1 · 2종"으로 검토의뢰 완료한 자료를 차수별로 검토결과를 등록
2) "1 · 2종"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선택은 "건축물"로 선택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OOOO 측의 안전관리계획서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

나. 안전관리계획서 이행보고 관련
-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보고를 위해 발주청(00시청) 문의결과 건진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발주청은 발주자를 의미하고 OO시청은 OO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에 대한 승인을 한다고 함. 따라서, 당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이행보고는 발주자(000)에게 보고 필요

위 평택시청 답변에 따라 발주청(00시청)이 아닌 발주자(000)에 대해 보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종외 안전관리계획서의 1 · 2종 변경 관련해서는 기존 안내 받으신대로 등록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종외"로 등록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보완차수로 "1 · 2종"으로 검토의뢰 완료한 자료를 차수별로 검토결과를 등록
2) "1 · 2종"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선택은 "건축물"로 선택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OOOO측의 안전관리계획서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에 따라 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를 참조 하면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정의)에 발주청은 모든 발주자를 발주청이라 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자금이 50%이상 출자한 정부기관을 이야기함으로 당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는 인·허가기관인 00시청에 이행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현장입니다.
비계와 동바리도 사용하는 현장으로써 비계는 15m, 동바리는 3m로 모두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사항]
1. 조립도와 구조검토서(기술사 날인x)만 첨부하면 될지, 혹은 기술사 날인이 필요 여부

2. 안전작업계획, 조립도, 구조검토서 등의 첨부 여부

3. 높이 31m 미만 비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해당 안되므로 비계 관련 내용을 다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에 따라 안전성계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를 등록하실 때 비계 및 동바리 설치 평,단면도(X,Y)방향, 구조도 등을 모두 첨부가 필요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7. 종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문의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 · 2종 시설물 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1) 설계안전성 검토 의뢰는 어느 곳에 의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인지)

2) 안전관리계획서 의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안전진단 전문기관 의뢰 후 검토 결과가 조건부 적정(또는 적정)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곧 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조건부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도 국토교통부에 검토결과에 대한 적정성 의뢰를 해야 되는지와 의뢰를 해야 할 경우 업무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문의사항 1번에 대한 답변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실시설계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나. 문의사항 2번에 대한 답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항에 따라 해당 현장이 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3번에 대한 답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른 공사 착공여부의 판단 및 승인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4번에 대한 답변
검토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CSI의 안전관리계획서-적정성 검토(계획서) 탭을 확인 및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8. 준공 예정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문의(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준공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임을 인지한 상황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현장에서 잔여공사가 남아있지 않아 현장 출력인원이 없는 상태에서「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발주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3)「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해「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양호하다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 **회신 내용**

가. 문의사항 1번에 대한 답변

잔여공사가 남아있지 않은 현장에 정기안전점검은 수행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제1항제1호에서 3호까지 안전점검실시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으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기준 외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는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문의사항 2번에 대한 답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7호,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제87조 제5항 관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3번에 대한 답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양호를 받았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는 관리원에서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관련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의견을 수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가시설 계측 반영 여부

● **질의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선협상자인 민간사업자가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지자체)에 제출하였고, 주무관청은 접수한 기본설계도서를 공공기관으로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요청하여 해당기관에서 현재 기본설계VE 수행 중.

'갑설' VE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의견
1. 펌프장(심도 4.5~7m)의 가시설(Sheet Pile 및 H빔+토류판 Type)은 펌프장 설치 기간이 짧으므로 가시설의 계측을 전체 삭제할 것
2. 추진기지(심도 1.5~4.9m)의 가시설(H빔+토류판 Type)은 추진공사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심도가 낮은 구간은 계측 전체 삭제, 심도가 깊은 구간은 경사계, 지하수위계 각 1개만 설치로 조정할 것

'을설' 설계도서를 작성한 민간사업자 의견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계측적용 범위에 지하굴착공사가 명기되어 있어 가시설을 반영된 지하굴착공사에는 지반계측이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7조 2항에 따라서도 계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22년 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가시설이 설치되는 굴착작업의 계측은 발주처가 되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시설로 인한 공사기간이나 깊이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계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의견 차이가 있어, 장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시 '가시설이 있는 지하굴착공사시 계측 공사기간이나 깊이에 따라 계측을 반영하지 않아도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3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설치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설치개소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해당 현장 펌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최대 15일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여 주신 1번질의:펌프장의 계측기 전체 삭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설치 계획이 필요함으로 일부간에 계측기 설치를 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2번질의:추진기지의 계측기 설치 개소의 축소는 부위별 심도에 따른 위험구간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계측기를 설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기존계획 계측기 설치개수 변경을 하실 경우 관리원에서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승인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질의 내용**

OO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 건설공사 제외) 으로 볼것인지(국토안전원에서 검토), 그 외의 공사(민간)로 볼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댐만 고려한다면 대부분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댐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는 1·2종 시설물로 보고 모든 건은 국토안전원에 검토를 의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사는 댐체 자체 공사와는 무관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취수탑에서 취수터널을 거쳐 폐쇄콘크리트(플러깅) 이후에 1,200mm 관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되는 형태인데, 이 1,200mm관을 1,500mm로 확관(그리고 그에 따른 밸브 교체 및 밸브실 재건축)하는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로 보면 되는 것인지? 유지관리 공사이므로 제외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요청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질의하여 주신 OO댐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참조하시면 해당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기존의 배관 및 밸브 확장 공사의 경우 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1. 통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 **질의 내용**

해당 현장은 공장부지 내에 통합공사 진행현장으로
공장 내 4개의 동에 대한 공사(해체 후 신축공사, 증축공사, 신축공사 등)가 한번에 진행되어
대수선 공사로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을 통합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에 작성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가 4개동 중에 2개동만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자 안전관리계획서를 2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추후에 나머지 2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 신청을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시 4개동 공사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혹은 먼저 진행되는 공사 2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장을 2개동에 대한 내용만 진행하고 나머지 2개동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때에
변경 신청하여 반영을 해도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내용**

가.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공사건에 추가공사를 진행할경우(1 · 2종 및 종외 시설물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을 통하여 추가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장비동선,
해체 순서에 따른 해체 시공계획 수립 등을 변경 신청하여 진행하는것이 가능 하오나 변경에
따른 변경검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초 등록 시 여러 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 후
정기안전점검 및 구조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검토 미의뢰로 남겨놓으실 경우 추후 보완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변경 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아직 2개동에 대한 도면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공사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내용을 유선
통화로 전달받았으며 해당 공사의 경우 최초 검토 시 실 착공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시고 추후
변경 검토로 등록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고 드렸습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2. 안전관리계획서 내 공종별 자체점검표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지하철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내에서 공종별 자체점검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1. 점검표가 약 50여가지가 있으며, 현재 저희 현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 30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30여가지의 점검표를 모두 매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점검표를 첨부와 같이 1페이지에 점검란을 일주일치로 만들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2조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조치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종에 대해 자체점검이 매일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2조제2항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서식)의 경우 현장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기간 초과에 따른 질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1) 총괄 안전관리계획 과 2)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이 구분되어 있고

제출기한이 1) 건설공사 작공 전까지 와
2)공종별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로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에 수립하지 못하였지만
착공 후에 이를 인지하여 해당 공종 전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면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항에 수립대상, 진행절차 및 통보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은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검토 의뢰만 받기때문에 관련 행정사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4. 건설사업관리자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가능여부

● **질의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검토의뢰) 절차상 CSI에 등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인·허가기관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제출 시점에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뢰 요청)이 가능한지요?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나. 단, 최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미지정하여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완(1차) 검토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5. 시공사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승계 절차 등 문의

● **질의 내용**

공동주택(2종 시설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의 부도 또는 타절로 인하여 시공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기존 시공사에서 작성 및 검토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인계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새로 계약된 시공사가 재작성 후 검토 의뢰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내외부 마감 및 부대토목 공종만 남은 경우입니다.)

기존 시공사에서 작성 및 검토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인계 받는다고 한다면,
국토안전관리원(CSI)에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승계 또는 신규 작성 여부는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승계를 통한 변경 또는 신규 작성 모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종외 시설물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7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시 시공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사 담당자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시공사 변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6. 철거공사, 건축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주체관련 문의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철거공사업체(A사)와 건축공사업체(B사)가 별도로 발주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지상층 철거가 완료된 상태로서 건축공사업체(B사)가 건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와 동시에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면 A사가 기존 지하층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하층 철거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완료(멸실)신고 확인증을 받아 00시에서는 철거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공사업체(B사)가 착공 준비 중인 도중에 CSI에 기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철거공사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무부서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철거공사업체(A사)가 별도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고 철거공사 진행
2. 건축공사업체(B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고 철거공사업체(A사)에서 철거공사 진행

2개의 사안 중 어느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함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 해체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CSI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해체공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체공사의 내용을 안전관리계획서에 수록하고자 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사업자 (B)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7]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중 해체공사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7.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 승인 완료 시기(공사준비 작업 해당 여부)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토목 부지조성공사로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 '건기법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흙막이공사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항타항발기 사용공사

1. 흙막이 및 항타항발기 사용 등으로 대상인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장 착공 초기에 가설사무실 설치,휀스설치,양수작업, 제초작업등 공사 준비작업을 진행하려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공사준비 작업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과 무관하여 승인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한해 해당공종(가시설설치,항타기사용등) 투입전에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완료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2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의 [별표7]에 따라 총괄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은 공종별로 해당공종의 착공 전까지 제출·승인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8. 하나의 허가신청에 따른 2개의 별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가능여부

● **질의 내용**

하나의 공장 부지 내에 총 2개동을 증축하는 하나의 허가 신청 건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설계자/감리자/시공자가 다릅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각 동별로 작성.제출(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 일련의 절차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하나의 허가 신청건에 대한 분리 발주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에서 판단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한개의 시공사가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등록하거나 각각의 시공사가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서 등록방법 결정에 대해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1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점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건축허가 전 검토의뢰 가능한지 법규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4항, 제100조의2에 따라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1 · 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종외 시설물은 민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나. 따라서, 착공 전 인·허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후 검토기관(건설안전점검기관) 지정 요청, 검토기관이 지정되면 검토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의뢰를 하시면 되며, 인·허가기관은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최종 검토결과(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여부)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다. 검토의뢰는 건축허가 이후,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수립되었을때 인·허가기관이 지정한 검토기관에 검토의뢰 하여야 하며, 자세한 인·허가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의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메뉴에서 "작성" 버튼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우리 관리원에 검토의뢰 하신다면 '안전관리계획서의 신규 검토의뢰서 작성'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내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참고하시어 신규작성 의뢰하시기 바라며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알려드립니다 → 자료실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주체에 대한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관련 업무흐름과 주체가 맞는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요청과 국토부제출의 업무 주체가 시공사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발주자에 제출[시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접수[발주자] → 안전관리계획서 인·허가기관에 검토 요청[발주자]→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인·허가기관장] →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국토교통부에 제출[발주자]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에 의거하여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주체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며, 현재 CSI 시스템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을 먼저 등록한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검토결과를 최종 제출하는 순서로 구축되어있습니다. 또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주체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이므로 승인권자가 직접 CSI 시스템에서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자세한 입력 방법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CSI 홈페이지 우측 상단 → 알려드립니다 → [안전관리계획서]탭 → [공지]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2.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문의사항]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토목공사는 여러 관련 법규 등으로 일정 규모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인·허가 기관)하나
별도/분리 발주로 계약되는 소방공사,전기공사, 산업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모호한 사항이 있어 귀 원에 질의 드립니다

* 시특법 2종 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건축,토목공사: A종합건설사에 발주 ->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법규상 2종 시설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전기공사 : B 전기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방공사 : C 소방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산업설비공사: D 설비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별도로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설비공사는 대상 시설물의 주간사(보통 건축,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사)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통합 작성 및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문의(컨소시엄공사)

● **질의 내용**

광주에서 컨소시엄 공사 (A사 지분 51% B사 지분49%) 의

공동주택 (2종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려고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검토의뢰와 관련하여

갑사 (A사 지분51%) 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 검토의뢰 후 공사별 항목에 대해서는 A사 B사 별도로 시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나의 인허가 건에 대해서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허가 한 건에 대해서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질의와 관련하여 타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등록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시공사와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후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1) A현장(건축)공사 / A현장(토목)공사 _ 건축, 토목 시공사 각각 분리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등록
2) A현장 건설공사(ㅇㅇ 건설) / A현장 건설공사(ㅁㅁ건설) _ 동별 시공사를 분리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등록
3)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에서 각기 다른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

건설공사의 개요(ㅇㅇ 건설 공사분)/건설공사의 개요(ㅁㅁ건설 공사분)

.
.
.

콘크리트공사(ㅇㅇ 건설 공사분)/콘크리트공사(ㅁㅁ건설 공사분)

.
.
.

타워크레인공사(ㅇㅇ 건설 공사분)/타워크레인공사(ㅁㅁ건설 공사분)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4.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준비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건설(도로개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 공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현장은 약 300억원(300억 미만), 3km(왕복 2차선) 규모의 도로 개설(신설) 공사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의 2종 시설물 포함, 폭발물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시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의 조항이 있습니다. 위의 법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에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가설사무소 설치(가설사무소 부지정리 포함) 및 비탈면(임야)의 벌목공사(도로면 굴착을 하기위한 굴착 전 벌목)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의2의 공사준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벌목공사 관련하여 당 현장의 상황(상세 상황은 붙임파일 참조)은 전체 약16만㎡의 면적 중 약 6.2만㎡가 벌목수량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대부분의 부지가 경사도가 있는 산지이며 이로인해 절토부 옹벽이 약 1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벌목작업도 시행령 제59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에 해당되어 착공으로 보지 않는 공사준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착공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2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98조2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의 경우 발주청 및 각 인허가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으로 담당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건축주 직영공사)

● **질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해당하지않는 "1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①항 2호 및 3호의 동바리 및 흙막이가 반영되어야할 경우에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주체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이하 생략)

당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아래 사항 중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됨.(의문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2) 시공자인 건축주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문 : 법에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게되어 있음)

3)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문 : 법에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물임)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나. 질의 하신대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여도 법 제62조에서 정한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 직영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주체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CSI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권자인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6.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착공 가능 범위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건진법 제62조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공사착공을 하면 안됩니다.

건진법시행령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서 " 건설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가설울타리(EGE 휀스, RPP 등) 설치는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착공의 의미와 착공일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98조2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의 말씀처럼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고 있어 가설울타리 설치는 본공사가 아닌 공사준비에 해당하여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감리미지정일 경우 문의

● **질의 내용**

착공 전 2종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신규 건 검토의뢰 시 감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착공전 선정예정) 감리검토 의견서 없이 인·허가기관에서 검토의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나. 단, 최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미지정하여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8.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문의(2019. 7. 1. 이전 입찰 대상)

● **질의 내용**

'18년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현장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제출하는 적용대상이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장은 입찰공고에 준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 일자가 2019. 02. 15입니다.

하여 저희 현장은 오프라인으로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제출하는 적용대상이 아닌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질의내용과 같이 CSI 적용은 '2019년 7월1일 이후 공사시 '공공공사'의 경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인.허가 승인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따라서 귀 현장은 의무대상은 아니나 제출해도 무방함을 안내해 드리니 발주청(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2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구조계산서 첨부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범위 중 흙막이 지보공 관련입니다.
당 현장은 발주청(자체감리)-시공사 종합공사(토목,건축,기계,전기)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세설계도면까지 발주청에서 제공한 상태에서 착공 전 최초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용 구조계산서는,

1. 설계사에서 작성한 구조계산서
2. 시공사에서 건진법 시행령 제 102조의2에 의한 구조계산서

상기 2개 중 어떤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합니다.

나.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구조물은 관계전문가의 안전성 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는 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30.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문의(제101조의2제1항 4의2호 관련)

● **질의 내용**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제5의2호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입니다.

나.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4의2호의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은 SWC, ACS, RCS 등 지반에 지지된 가설구조가 아닌 공중에 지지된 가설구조물들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이 일체화된 가설구조물들을 말합니다.

다. 따라서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지반에 지지된 일반적인 비계인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는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인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3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문의

● **질의 내용**

현재 공사 현황 : OO 신축 공사로 경기도 한 개 부대 내에 5개동(동일한 건축물에 동일한 시공방법임) 신축공사이며, 시공사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준비 중 입니다.

[문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검토비용이 계약 내역서에 5개 각 동 별로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건축물과 동일한 시공방법인데,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비용이 건축물별로 소요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부지 안에 5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5개동의 위치는 일부 떨어져, 3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1개동+2개동+2개동)

[예 시]
계약내역(동별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백만원)+검토비용(백만원)]*5개동 = 천만원

질의내용(지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백만원)+검토비용(백만원)]*1개동 = 2백만원

질의내용 (부대내 구역범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백만원)+검토비용(백만원)]*3개동 = 6백만원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비용을 건축물별로 소요될 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계와 이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 등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가(P.S 또는 L.S)계약조건, 내역입찰 총액입찰 등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4.32.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지하매설물 현황 관련 문의(지하안전평가서 대체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지하매설물 현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데,
설계사나 시행사가 설계당시 작성한 지하안전평가서에도 동일한 지하매설물 현황 자료가 포함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이 지하안전평가서의 자료상 검토되어 있는 지하매설물(가스,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현황 자료로 대체하여 첨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시공사가 별도로 따로 상기 매설물 관리 주체와 확인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건가요?

확인 시기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 지하안전평가서로 대체가 가능할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하매설물 자료를 제출하셔도 되나, 시공자가 착공 전 사전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해야 함에 지하매설물 관리 주체와 협의를 완료(확인 절차)하여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을 참고하시고, 최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 배포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공지하고 있으니 공지된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자료들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에 대하여 제출시기와 제출 주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⑦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주체?
홈페이지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상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적합 : 국토안전관리원) - 인·허가기관통보 - 시공사 적합으로 통보후 건설공사 착공 허가 후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 제출 가능여부?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주체?
2. 인·허가기관에서 건설공사 착공 허가 후 건설사업자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 제출 가능여부?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3항에 의거하여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주체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며, 제출시기는 건설공사 착공허가와는 관계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관련 질의

● **질의 내용**

1. 제가 현재 시행하는 공사중에 안전관리게획서 검토 사업장이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의견서까지 송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업무흐름 절차를 보니 다음절차는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해당사이트에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에 적정성검토를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하고,

2.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같은데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알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드린김에 혹시 제가 승인권자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지자체 장 아래에 소속된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특성상 지자체 장아래 소속의 부서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발부가 됩니다. 이 경우에 파일첨부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어떤 사업자 등록증으로 첨부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승인권자는 발주청인 사업소로 하시면 되고,발주청이 CSI에 전송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될 예정이며, 검토결과 제출 이후에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절차 간소화 질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출 주체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CSI는 인·허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등록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로인해 시공자는 번거로운 절차를 수행하게 되었고,
발주청은 시공자가 먼저 등록을 안 하면 제출할 수 없어 법정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시공자에게 업무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직접 기한 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제출 입력란도 대폭 간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에 의거하여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주체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며, 현재 CSI 시스템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을 먼저 등록한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검토결과를 최종 제출하는 순서로 구축되어있습니다. 또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주체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이므로 승인권자가 직접 CSI 시스템에서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귀하의 고충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되며,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한 선단계로 시공사에서 선작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취지였습니다. 최소한, 필수값만 입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실제 사용하는 시공사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정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4. 안전관리계획서의 발주청 및 인 · 허가기관 중복 승인 및 검토결과 제출 문의

● **질의 내용**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중복하여 신청을 했는데 어떤 절차가 맞게 되었는지와 수정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출번호 : SA-2023-00363
   → 인·허가기관 : 강남구청, 시공사 : 민정토건 최재석, 건설사업관리인 : 건원엔지니어링 유우식, 검토기관 : 주식회사옵티마(최병관)

2. 공사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삼사옥 리모델링 건축공사 (* 현재 시공사 작성중)
   → 인·허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민정토건 최재석, 건설사업관리인 : 에이치케이 이규범, 검토기관 : 주식회사옵티마(최병관)

발주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정기안전점검 기관 선정 : 제일안전기술)에서 관리할 수 있게 2번 사항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공사는 정기안전점검 시기 등 일정이 벗어나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1번과 2번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수정이 필요한지? 이대로 놔두어도 괜찮은지? 자문을 구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별도 중복 승인(승인 결과 상이), 검토기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SI에 이미 제출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은 삭제가 불가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승인, 변경, 검토의뢰 및 CSI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나~라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종 외 시설물은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CSI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5. CSI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담당자 변경 요청

● **질의 내용**

CSI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요청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12468(2023.07.10.)호로 위 같은 문서가 왔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전임감독이 제출한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만 '검토완료'라서 별도의 제출을 안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건지 확인하기 위해 검색해봤는데 검색이 안됩니다.

'OOOO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가 아마 OOOOOO공사 OOOO본부에서 OOOOOO공사

OOOO지역본부로 관할이 바뀌면서 저한테 검색이 안되는거 같은데,

담당자인 제가 볼 수 있게 해당 지구를 OOOO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 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담당자 변경은 시공사가 변경/보완 제출 시 공사개요 수정을 통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담당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6.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검토 완료 후 검토 결과물 어디서 조회하며,
어떤 결과서를 제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검토결과'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서 승인통보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의미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의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자세한 입력 방법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CSI 홈페이지 우측 상단 → 알려드립니다 → [안전관리계획서]탭 → [공지]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7. CSI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내용 수정 요청

● **질의 내용**

질문:CSI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작성내용중 공사개요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종을 기재해서 변경하려면 어떻게?

1. CSI신청 당시 공사개요에 당현장 안전관리계획서에 없는 천공기,크레인을 기재해서 공사개요에 오류가 생겼음(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개요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종 등이 제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CSI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조화하면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정정 또는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정정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며?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가. 귀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공사 개요 수정 요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현재 내용 수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제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제출 후 10일이 지났으나, 아직 시공사로 반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문의를 드렸으나, 정확히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접수를 누르면 진행 중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 건은 발주청의 '검토결과 삭제 요청 중'으로 시공사의 수정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 데로 검토결과 삭제 요청을 반려해 드렸습니다.

나. 공사개요 좌측 하단 '진행상태 내역'의 반려 사유를 참고하여 수정 후 제출하시면 되며, 수정 권한이 발주청에 있어 수정이 불가할 경우 발주청 담당자에게 시공사 반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CSI 홈페이지 우측 상단 → 알려드립니다 → [안전관리계획서]탭
→ [공지]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완료 전 공사진행 가능 여부 문의(콘크리트 타설 등)

● **질의 내용**

감리 선정이 늦어져서 이제서야 CSI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 승인까지 득했으며, 현재 제출 접수중인 현장입니다.
발주처 승인 후 제출완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5월8일 정기안전점검(5M이상 시스템동바리 설치) 1차까지 받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완료 전 상태에서 시스템동바리 설치후 콘크리트타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검토결과 제출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접수 건수에 따라 접수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요시간의 공지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 7]에 따라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전',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공종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공종의 공사 진행 가능 유무는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7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종합정보망: CSI)에게 제출하는 단계로 공사 진행 여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5.10. CSI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에 현장대리인 입력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란에 시공사에 현장대리인 직원명이 없습니다.

직원명이 없는건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 **회신 내용**

가. CSI에 접수중인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의 현장대리인 입력 또는 변경은 대상시설의 시공사(CSI 담당자)가 공사개요 우측 하단의 [공사개요 수정]을 통해 현장대리인 입력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등록할 현장대리인은 대상 시설의 시공사 소속으로 CSI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자세한 입력 방법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CSI 홈페이지 우측 상단 → 알려드립니다 → [안전관리계획서]탭 → [공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범위 및 CSI등록 여부

● **질의 내용**

1. 현장 가설펜스 부위 변경
당초 100m + 추가 10m 설치를 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 CSI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항타기 기종의 변경
안전관리계획서에 A사 제품의 항타기 사용으로 작성을 했으나 국내에 여러 기종이 있어서 B사의 제품의 항타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하고 CSI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변경 발생시에도 모두 안전관리계획서를 개정하고 CSI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리프트, 곤돌라(양중기계: 자재운반용), 가설울타리, 출입구등의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는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간소화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및 검토대상에서 2021년 5월경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내용이 미비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관련

● **질의 내용**

1. 외부로 나와있는 처마 부분의 높이가 약 7,625mm 정도 됩니다
기존 설계사는 1층 등 하부 구조물 타설 후 브라켓 등을 설치 후 그것을 이용해서 동바리를 설치하여 높이를 5m 이하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 공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브라켓 등을 설치하여서 실제 높이를 5m 미만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구조물 시공계획과 관련하여 시스템 동바리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시공시 해당 가설구조물 사용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후에 시공을 하신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 시공 공법에 맞는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시고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주실것을 안내드렸습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 CIP 규격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 **질의 내용**

1. 흙막이 CIP 공사를 진행중에 기존 설계 D500에서 ->D530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CSI 에 등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다만, 흙막이 공사의 D530으로 변경사항이 구조적 영향이 작다고 생각이드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해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여부를 협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1. 공사개요,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 입·퇴사자등의 발생으로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입된 단순 변경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을 받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장에세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기술인의 검토 후 현장내 수정 보관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제3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3.2 총괄안전관리계획 3.2.1 건설공사의 개요 라(설계도서)에 따르면 현장사무실, 가설숙소, 가설식당, 현장 출입구, 가설울타리 등의 배치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장출입구, 가설울타리 높이(변경전 : 전체 4M, 변경후 : 4M+6M) 및 위치 변경 등이 발생시 마다 공사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현장대리인의 변경) 또한 같습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SCI)에 등록 시 공사개요 수정을 통한 현장대리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할 현장대리인은 대상 공사의 시공사 소속으로 CSI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라. 업무 간소화로 현장출입구, 가설울타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및 검토대상에서 2021년 5월경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5.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1. 당현장은 공동도급 3개의 시공사가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관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었고 나머지 2개 회사에서 지분조정을 통해 그중 하나의 회사가 주관사로 새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공사를 주관하던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었고, 그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시공사,현장대리인,조직도,비상연락망등)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2. 공법변경이나 추가적용되는 장비등은 없지만 안전관리 주체가 바뀌게 되다보니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이 필요한지가 궁굼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현장대리인의 변경) 또한 같습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SCI)에 등록 시 공사개요 수정을 통한 현장대리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할 현장대리인은 대상 공사의 시공사 소속으로 CSI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6. 거푸집설치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 **질의 내용**

콘크리트 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를 무해체 거푸집 공법(OS-BEAM)으로 계획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 받고 자재 수급상 지연이 되어 동일한 시스템임 무해체 거푸집 공법(DH-BEAM)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려고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나. 동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 · 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무해체 거푸집 공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며, 동일한 개념의 무해체 거푸집 공법이라도 부재력이 다를 수 있고 관계 전문가로부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1, 2종 시설물이라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성 검토 자료와 안전관리계획서 변경되는 부분만 작성하여 검토의뢰 후 승인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해당공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7. 총괄, 건설장비, 가설구조물 시공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 **질의 내용**

1..총괄안전관리계획의 공사기간 변경, 공사금액 변경, 인원조직(조직표, 비상사태 대비체계 등), 안전관리비 변경 등의 발주청 과업설명서 및 별도지침에 경미한 사항의 경우 발주청에 승인공문을 접수받았으나, 관련내용 및 공문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하는 절차를 알 수 없어 주체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항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문구에 변경대상 문의 입니다.
  1) 건설기계(건설용 리프트카 - [계획도면, 장비사양] , 항타기 - [계획도면, 장비사양] , 천공기 - [계획도면, 장비사양]의 경우 변동사항 발생 시 착공 이전 승인요청대상 여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의 변경, 추가발생 시 사전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여부
  3) 1)~2)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변경대상 자체기준 문의(비대상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

3.. 상기 내용의 경우 현장 안전관리 진행 시 모호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 · 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착공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기준 중 총괄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공종의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시행령 제101조의2의 가설구조물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구조물 안전성과 관련된 공법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해당공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검토기관에 변경검토 의뢰하여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8. 안전관리계획서 개정 시 검토기관 의견 필요 여부

● **질의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최초 승인(검토의견 : 조건부 적정) 후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개정 시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발주청 승인만으로 갈음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내용 개정할 경우에도 발주청 승인 시 검토기관 의견을 첨부란이 있어 모호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있습니다.

나. 다만 질의하여 주신 현장의 경우 종외시설물로 판단되며 종외시설물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계획서 검토를 수행하며 보완방법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9. 가설비계 설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강관 조립말비계 → 시스템비계)

● **질의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후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l)에 제출 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입니다

- 사업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조)

- 변경내용 : 건축동 내부 설치 가설비계 변경(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시스템비계)
  공사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시스템비계로 변경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 현장은 공공공사로써 공공공사의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 4.)'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현지 여건(비정형 구조물, 복잡한 구조형식 등)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 강관비계의 조립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강관 조립말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비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0.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이후 단순 변경 시 승인 필요 유무 문의

● **질의 내용**

1.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며 조직도 변경 및 공정표 변경 등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했으며
그 외 공사 내용이나 안전관리계획 등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직전) 수립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다만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등 단순변경 사항이 있는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여부를 협의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1. 공사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재작성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가 완료된 2종 시설물에 대해 공사 중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의 업무 처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CSI에 자주하는 질문을 보면 공사개요만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공사계약 완료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인·허가기관에 확인 후 CSI에서 관리자 변경을 도와드리겠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나. 또한 시공사 변경으로 인해 기존 건설사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공정표, 안전관리조직표, 협의체 관련사항,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내·외부 비상 연락망 등 기존 접수하였던 안전관리계획서와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변경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범위 문의

● **질의 내용**

신규 건에 작성되어 있던 도면(가.건설공사의 개요 - 4.공사설계도면 및 서류)이 전부 변경이 되어 최종 실시도서 기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규건에 작성되어 있던 도면만 최종 실시도서기준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실시도서(건축, 구조만) 전부를 변경건으로 하여 CSI에 검토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도면 첨부 범위 문의
- 최종실시도서 전부(건축, 구조만)를 변경 건으로 하여 CSI에 검토의뢰를 한다면 도면이 약 1500장 정도로 방대한데, 신규 건에 작성되어 있던 도면 외에 방화구획도, 창호도, 방수단열계획도, 슬래브배근도 등의 도면들은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범위 문의
- 총괄안전관리계획의 가.건설공사의 개요 - 4.공사설계도면 및 서류에는 건축 및 구조도면만 들어가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 도면을은 건축공정 도래 전에만 CSI에 올려 변경검토요청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공사 터파기 공정 진행 중이며 건축공정은 24년 3~4월 예정)
현재 토공사 터파기 공정 진행중인데 만약 점검이 나왔을 시
건축, 구조 도면을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문의사항 1번에 대한 답변
방화구획, 창호도 등은 미첨부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

나. 문의사항 2번에 대한 답변
현재 토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구조변경으로 인해 도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시점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등록하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3. 공동도급(분담이행) 수행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절차

● **질의 내용**

속한 현장은 공동도급 현장으로 공사 중 도급계약 이행방식이 당초 공동이행에서 분담이행으로 변경 예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초 공사 전체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대표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공사이행방식 변경(예정)에 따라 일부 1종, 2종 시설물이 회원사 분담구간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대표사(1개사)와 회원사(1개사) 각사 합의한 각사 분담구간(책임구간)에서 안전사고 및 관련 법규(중대재해처벌법 포함) 위반 등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 발생시 도급계약서 상 지분율이 아닌 각사 100% 책임처리를 위해서, 1개의 도급계약 건이지만, 안전관리계획서를 대표사는 공사 전체분이 아닌 대표사의 분담구간에 대해서만 변경하여 제출, 회원사는 회원사 분담구간에 대해 신규 제출하는 등 각사 제출시 따로 검토/승인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_KISCON의 공사개요 상 도급계약 방식을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변경예정)
(회원사 고용/산재보험 별도 가입예정)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나의 인·허가 건에 대해서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공동도급시에는 지분률이 높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질의에 대해 1 · 2종 시설물을 구분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하는것도 가능하며, 현재의 1건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사별 공사범위를 구분하고 파일명을 시공사별 따로 업로드 해주신다면 따로 검토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4. 타워크레인 마스트 일부 파손으로 교체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및 승인 사항여부 확인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타워크레인 마스트 일부 파손으로 인해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일 기종, 동일 자재로 교체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 현장은 타워크레인 마스트가 일부 파손되어 타워크레인 해체 후 재시공 예정이며 정기안전점검 또한 추가로 진행 예정 중 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타워크레인 해체후 동일 기종으로 설치하여 기초 및 브레이싱의 변경이 없다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신청은 필요없을것으로 사료되며, 타워크레인 재설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5.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보완 작성 문의

● **질의 내용**

1. 현장에 신규직원 부임시마다 안전관리계획서(다.현장운영계획 - 1.안전관리조직 / 라.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1.비상연락망)를 변경하여 CSI에 검토의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토의뢰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현장에서 내부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규건에 작성되어 있던 도면(가.건설공사의 개요 - 4.공사설계도면 및 서류)이 전부 변경이 되어 최종 실시도서 기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규건에 작성되어 있던 도면만 최종 실시도서기준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실시도서(건축, 구조만) 전부를 변경건으로 하여 CSI에 검토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실시도서 전부(건축, 구조만)를 변경건으로 하여 CSI에 검토의뢰를 한다면 도면이 약 1500장 정도로 방대, 신규건에 작성되어 있던 도면은 기본평면도, 기본단면도, 구조평면도 등 공통도면만 들어가있던 상태라, 방화구획도, 창호도, 방수단열계획도, 슬래브배근도 등의 도면들은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가. 질의하여주신 신규직원 부임과 도면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다만 신규직원 부임, 도면은 변경되었지만 구조적 변경이나 구조검토가 필요하지않은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 조직도 변경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건축, 구조 도면(평,단면도, 구조 일람표)은 구조적인 변경이 있을시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6. 구조계산서(검토서) 변경 시 보완 검토의뢰 여부

● **질의 내용**

1·2종 시설물이 아닌 현장으로 국토부 지정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초 안전관리계획서 상 비계 및 동바리와 관련하여 구조계산서(검토서) 변경될 시에 추가 검토의뢰를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의 내용 중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종외 시설물),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7.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및 변경 제출 기준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최초 제출 후 보완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공법 변경
- 보완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 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인 건 / 검토 미의뢰(해당공종 착수전 제출) 건

위와 같이 분류하면 되는 것인지, 관련 법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한 원칙은 기존에 제출 되어있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공법변경, 시공방법 변경, 도면 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변경사항 등 모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나. 다만 기존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는 등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의 경우는 질의하여주신 내용과 같이 검토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검토 미의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8.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시 계측수량 변경(감소)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시 계측수량 변경(감소)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비개착터널(연장 약 7m, 굴착면적 약 43㎡)로만 계획된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로,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지상에 전신주 및 고압전선들이 도처에 산재해있어 당초 계획된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 설치를 위한 시추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계측기 설치가 어려운 현황입니다.

이럴경우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시 계측수량 변경(감소)이 가능한지, 그리고 변경을 위한 필요 서류 및 필요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지하수위계 : [계획] 2개소 → [변경] 1개소
- 지중경사계 : [계획] 2개소 → [변경] 1개소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3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설치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설치개소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기존계획 계측기 2개소에서 1개소 설치로 변경을 하실 경우 정확한 검토를 위해 관련 도면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변경검토가 필요하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한 경우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규칙[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2.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나. 현장 특성 분석, 3)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서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되는 계측기 설치계획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19. 공사 범위 및 시기 변경에 따른 해체계획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1. 전체 공장 면적 중 일부를 해체하고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 현재 해체계획서상에는 전체 공장 면적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둥 및 기초, 지붕, 1층 바닥(최하층바닥) 전체를 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해체공사 진행중 현장사정이 여의치 않아 1층 바닥(최하층바닥) 및 철거되는 기둥의 기초부분은 추후 증축 및 대수선 공사시 진행을 하고자 원합니다.

[문의사항]

추후 증축 및 대수선 공사시 1층 바닥(최하층바닥)과 기존 해체공사에서 철거되는 기둥의 기초부분을 철거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해체공사진행 중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행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다만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부분 철거범위 및 시기가 변경되었을 경우 조닝계획도를 작성, 조닝에 따른 철거범위, 철거시기를 계획하고 그에따른 공정표, 조닝별 시공에 따른 단부발생 구간의 안전관리대책 내용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또는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0. 시행사(발주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

● **질의 내용**

2종 시설물 대상 사업지로 22년경 안전관리계획서를 접수하여, 총괄쪽 (적정)까지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였으나, 착공을하지 못하였으며,

사전에 계획수립한 공사계획은 동일하나, 시행사(발주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괄 개요측에서만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하면되는지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의 감리 확인 및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 등 절차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다른 부분 변경 없이 시행사(발주자)만 변경될 경우 공사개요, 비상연락망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중 시행사(발주자) 관련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가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은 감리 확인을 받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1. 안전관리계획서 인계 또는 양도에 관한 업무 절차 문의

● **질의 내용**

우리 회사는 1~4호기 공사를 함께 계약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받고 공사를 진행중이였으나,

1,4호기만 공사종료하고 잔여공사인 2,3호기는 우리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즉 건소시엄 탈퇴 함)

2,3호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회사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의 감리 확인 및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 등 절차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현재까지 작성 및 관리하시던 안전관리계획서는 변경 될 건설사로 승계하시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승계받은 건설사는 상기 가항의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종외 시설물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의 검토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동 법 시행령 제98조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시 변경된 시공사 담당자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시공사 변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 기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정기안전점검의 연속성, 변경된 시공사와의 계약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승계 또는 재지정(변경)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2. 시공사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

● **질의 내용**

당초 공사중이던 시공사 타절로 인하여 잔여분 발주시 기존에 제출된 안전관리례획서에서 시공사만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추가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안전관리계획서는 변경 전 건설사로부터 승계받아 작성 및 관리하시고,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도면 사업승인인가 변경 건)

● **질의 내용**

각 현장별 도면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청등의 승인 후에 도면 사업승인인가변경이 이루어 졌으며, 해당 변경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때 도면 변경사항에 관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 별도 검토의뢰를 신청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 하여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도면 변경의 경우 인·허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안전관리게획서 변경의 경우 공사관리감독자의 검토 및 인·허가청의 승인만 득하게 되면 변경해도 되는게 아닌가요?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종 외 시설물은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4. 안전관리계획서 경미한 변경의 검토의뢰 및 발주청 승인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현장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공종 착공 전 적정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등에 의한 당초 계획 대비 미미한 변경 사항이 다수 발생 할텐데요
(ex. 시스템 서포트의 배치 간격 일부 변경 당초간격 : 1,000mm 이나 900mm로 변경 등)

해당 사항 관련 공법 등에 변경이 없는 사항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매번 CSI에 검토의뢰 후 해당 관청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종 외 시설물은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야 합니다.

다. 참고로, 예시하신 시스템 서포트 배치간격 조정은 동바리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 공종의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5. 안전관리계획서 변경/보완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당 현장에서는 성토재 생산을 위한 크라샤를 설치하고자 하며,
죠크라샤 배면 덤핑을 위한 성토지반 조성을 하기위해 H-Pile(H=4m) 및 토류판을 시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⑪항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가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기 승인 완료)

[문의사항]

당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입니다

상기 구조계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과는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개정하여 승인 받은 후 시공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 따라 총괄안전관리계획은 착공전까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의 착공전까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7]의 '3.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는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를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의하신 구조계산서(굴착 비탈면 또는 흙막이 안전성 계산서)는 굴착 및 흙막이 공사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6. 안전관리계획서 상 공기변경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현재 OO구에서 지식산업센터 시공 중인 시공사입니다.

기존 제출하였던 안전관리계획서 상 공사기간이 23.07월 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고 시공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준공 기한은 23.11월입니다.

공기연장 및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중이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개요 내용 수정에 대한 확정된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변경 될 경우 공사금액(안전관리비 포함), 공법 등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변경계약이 이루어지며,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도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의 변경/보완 제출을 통해 공사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 변경 승인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지정한 검토기관(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의 검토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변경 관련 사항은 계약변경 관련 법규, 공사계약조건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7.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의뢰 여부 문의(타워크레인 기종변경)

● **질의 내용**

당초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계획된 무인 타워크레인 기종이 변경되어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승인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합니다.

당초: CW-2940 JIB길이-40M 인양하중 24~40M / 1.60~2.90TON 무인타워
변경: GHD3520 JIB길이-35M 인양하중 25~35M / 2.00~2.90TON 무인타워

● **회신 내용**

가. 말씀하신 변경 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우리 공단에, 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재검토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8. 기존 건축공사업자의 공사이행포기 시 안전관리계획서는 승계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본교의 "가칭)OOOOO 통합교사동 증축공사(건축공사)" 시공자가 2023.4.20. 공사이행 포기서를 제출하여 현재 타절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본 사업을 금년 내에 준공하기 위하여 후속업체를 선정하여 2023.7월 중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의사항: 기존 시공자의 계약포기시 "발주청(본교)과 후속 건축공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안전관리계획서는 변경 전 건설사로부터 승계받아 작성 및 관리하시고,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29.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검토 의뢰 여부 문의(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을 수직보호망 수정)

● **질의 내용**

OO에 위치한 OO OO도서관 건립공사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입니다.
최초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외부비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수직보호망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질문-1
변경된 수직보호망에 대해서 ①국토안전관리원(CSI), ②건설사업관리단(CM), ③발주처(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승인을 받아야하다면 ①,②,③에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부서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하여 타 기관 승인검사 및 중복 검토 등으로 검토업무 간소화 조치에 따라 검토항목에서 제외하여 낙하물 방지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담당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0.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문의(낙하물방지망 변경)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중 낙하물방지망 부분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며, '1·2종 검토의뢰' 등을 진행해야하는 사항인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1. 최초 착공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낙하물방지망의 내용 중
   - 1단 시스템망 / 2~4단 플라잉넷

2. 실시공하고자하는 낙하물방지망
   - 1단 플라잉넷 / 2단 시스템망 / 3~4단 플라잉넷

해당 사항(낙하물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이며, 그 중 시스템망은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지침(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 / 아래 참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 중 일부>
(8)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파트 현장의 경우 저층부(1~3층) 외부석 마감 작업시 비계 설치로 인해, 1단 낙방을 다른 낙방에 비해 선해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존치기간이 더 긴 2단 낙방을 kosha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8)에 부합하는 시스템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현장에서도 최하단부(1단)가 아닌 2단 낙방을 시스템망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서 '1·2종 검토의뢰' 등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참고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부서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하여 타 기관 승인검사 및 중복 검토 등으로 검토업무 간소화 조치에 따라 검토항목에서 제외하여 낙하물 방지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1. 공법의 추가 시 안전관리계획 변경 의뢰 및 CSI 제출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공법의 추가 시 안전관리계획 변경 의뢰 및 CSI 제출 여부 문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확인 요청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최초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기존에 제출한 2개의 공법 중 하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 **질의 내용**

공사 내용 중 지하주차장 설계도서에 현장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공법 또는 PC 공법이 표시되어 있어 최초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시 2개 공법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현장 실시공에는 PC공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PC 공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관련법령에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설계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RC공법외 PC공법 적용가능으로 표현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RC공법과 PC공법 두가지 공법 모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이나, 최종 RC공법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에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뢰,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질의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검토기관에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확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서 확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는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기관인 발주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3. 건설기계의 변경 시 안전관리계획 변경 여부

● **질의 내용**

A건설기계 기준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승인된 현장에서

B건설기계로 변경되어 현장반입된 상황에서 A건설기계와 B건설기계의 규격이 유사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재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위 경우 외에 어떤 경우에 재승인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변경 또한 같습니다.

다. 나항의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의 변경에 따른 변경 승인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터널 보강 공법 추가)

● **질의 내용**

OO건설 OOOO(OO-OO)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입니다

추가된 현장 터널 보강 공법에 대해 1·2종 검토의뢰 재검토 사유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검토의뢰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당초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발생(공법 변경, 공법 추가) 경우 해당공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검토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5.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 문의(공사관계자 변경 시)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당현장의 안전관리계획가 제출 완료된 상황입니다.

만일 현장의 직원이 변경(추가, 제외)될 경우에

다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보완해서 검토 및 검토결과 제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장소장이 변경될 경우에만

다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보완해서 검토 및 검토결과 제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직전) 수립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공사관계자, 공사기간 등 단순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보완(변경)제출시 수정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계획서 탭의 본문에 변경사항을 첨부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6.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방법 문의

● **질의 내용**

당 건설공사는 민간발주현장으로 1·2종시설물이 포함된 현장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최초)는 CSI에 등재하여 인.허가기관장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검토의뢰하여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여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데도 변경하지 않아 점검시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또는 일정기간 취합후 변경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단, 조건부적정(검토미의뢰 항목)은 해당공종 착공전 인·허가기관장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 승인받을 예정임〕

문1) 향후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사항 발생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예)안전관리조직구성 등 경미한 변경시〕에도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CSI에 등재하여 인·허가기관장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후 승인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변경사항을 취합하여 검토의뢰 승인받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문2) 상기와 같은 경미한 변경건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하지 않고 인·허가 기관장이 검토 및 승인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직전) 수립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현장대리인, 공사기간등 단순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보완(변경)제출시 수정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계획서 탭의 본문에 변경사항을 첨부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7.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흙막이 설계 변경)

● **질의 내용**

건설공사 현장 터파기공사 중 최초 오픈컷 95%, 흙막이 5% 정도로 설계되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오픈컷 100% 터파기를 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 진행 중인데,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흙막이 부분을 삭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 · 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검토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8.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콘크리트 타설 시공방법 변경)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변경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검토 의뢰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지붕층 슬라브에 데크플레이트를 적용하였을 경우
구조계산서 감리검토 승인 후 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 의뢰 없이
공사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 · 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검토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테크플레이트로 변경되었다면,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가 수반되는 공법변경 사항으로 우리 국토안전원에 검토 의뢰하셔야 합니다.

마. 우리 국토안전원에 검토의뢰 하신다면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절차’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매뉴얼 참고하시어 변경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9.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총괄:현장대리인, 조직도 등)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 1·2종 검토의뢰 대상 현장입니다.
당초에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상 현장대리인이나 조직도, 공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정이력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수료를 내고 재검토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개정이력만 따로 보관하면 되는것인지요
만약 재검토 의뢰를 한다면 그에따른 수수료나 작성비는 내역서상 추가금액이니
설계변경이 되는지까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다만, 다만 공사내용 및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다시 검토를 받는 경우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내용이 미비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0.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옹벽 등 공종 추가)

● **질의 내용**

공동주택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 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현장외곽으로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생성을 위한 옹벽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옹벽은 높이5m이상 연장100m이상의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은 16층이하로 2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데
안전관리계획서에 추가로 옹벽을 포함시키려 합니다.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검토 의뢰시 해당현장은 변경 승인사항이나, 우리 국토안전원 관점에서는 신규검토에 해당하며, 공사 중 2종시설물로 인해 검토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추진경과, 공사추진현황 등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라. 우리 국토안전원에 검토의뢰 하신다면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절차’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매뉴얼 참고하시어 변경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설계변경 등)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2017년 이후 설계변경으로 현재 공사 개요의 변경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이 경우 기 제출되어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재작성 및 CSI 의 등재가 필요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경미한 설계변경 시)

● **질의 내용**

현장 진행 중 흙막이공사의 설계변경(경미한변경)이 발생 시 CSI에 변경된 도면을 업로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 · 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검토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우리 국토안전원에 검토의뢰 하신다면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절차’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매뉴얼 참고하시어 변경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리프트카 규격 변경)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상 리프트카의 규격이 변경 되었을 시 검토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의 내용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업무 처리절차 문의

● **질의 내용**

현재 건설공사에서는 금액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정기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대리인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선임계를 승인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CSI에는 변경이 따로 안되는거같은데 혹시 어떻게 변경을 해야하나요?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직전) 수립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현장대리인, 공사기간등 단순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보완(변경)제출시 수정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계획서 탭의 본문에 변경사항을 첨부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5. 검토의뢰(검토의견서) 보완 · 변경 여부에 관한 문의(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 조정 시)

● **질의 내용**

저희 현장은 2m 흙막이 지보공과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해당 현장입니다.
기존 2m 흙막이 지보공을 5개소 2회(최초설치와 설치완료)씩 총 10회의 점검시기를 작성했는데 공법의 변경 없이 2m 흙막이 지보공을 1곳 총 2회로 점검시기 조정 시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6. CSI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의 현장대리인 변경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적정' 판정을 받은 현장입니다.
이후 현장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CSI에 현장대리인을 수정하여 변경검토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괄 안전관리계획 변경(현장대리인의 변경) 또한 같습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SCI)에 등록 시 공사개요 수정을 통한 현장대리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할 현장대리인은 대상 공사의 시공사 소속으로 CSI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라.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7.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점 문의(설계변경 시)

● **질의 내용**

현재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단계입니다. 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실시설계보고서 초안단계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적정성검토 완료 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에서 '변경'의 의미는 법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초 계획과 달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판단되며,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시기를 실시설계초안 단계 또는 설계·계약 확정 후 단계 등 설계변경 시 어떤 시기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 따라서, 건설공사 착공 전 해당공종은 해당공종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수립 가능한 시점에 하시면 되고, 설계변경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시점은 실시설계초안 단계에서 설계확정시점까지의 갭이나 공정 진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8.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펌프장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승인하여 공사 진행 중, 가시설 도면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기술 및 구조검토를 받아 책임감리원 제출 승인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내용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공사 진행 가능 여부 혹은, 국토안전관리원(CSI)에 제출하여 승인까지 받고 공사를 진행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

2. 발주청 승인 후 공사진행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검토를 의뢰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3. 다른공종(오수관로(추진공사등)) 추가 변경시 1·2종시설물(펌프장)에 포함이 안되어도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검토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해야되는지 아니면 발주청 제출후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흙막이 가시설 변경사항으로 당초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이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가 수반되는 변경사항으로 해당공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변경검토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해당 공종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펌프장(1종시설물)외 위험성이 큰 다른 공종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9.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문의(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질의 내용**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및 가설구조물(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귀하의 현장은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현장으로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5조의2의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는 해당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하여야 하며,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도록 되어있어, 그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50. 안전관리계획서 인수인계 등 절차 문의(시공사 변경 시)

● **질의 내용**

- 건축주와 계약사 시공사A에서 시공사B로 변경 될 경우(공정 약 30% 진행 완료)

1. 시공사A에서 시공사B로 변경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2. 안전관리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시공사A에서 시공사B로 변경하면 해당 공정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CSI에 검토요청 하면 되는건지?

3. 안전관리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시공사A에서 시공사B로 변경 될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 외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건지?

4. 안전관리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시공사A에서 시공사B에서 변경 될 경우 기존 시공사A에서 시공사B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절차가 있는건지?

5. 안전관리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시공사A에서 시공사B로 변경 될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해 CSI 시스템 상 시공사 변경신청 하면 되는건지?

6.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따른 기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있는데 새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직전) 수립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5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흙막이 설계의 경미한 변경)

● **질의 내용**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현장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인·허가청에 경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흙막이도서 관련 구조계산 및 도면은 관계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공법변경이 없이 기존공법에서 위치 및 높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기검토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적정)에 대하여 인·허가청의 설계변경 승인이 진행된 부분을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수립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흙막이 가설구조가 변경된 사항으로 해당공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검토의뢰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5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공정중 흙막이 공사가 없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2미터 이상 흙막이 공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착공 시 종외시설물에 해당하여 외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적정 검토의견 득)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재작성 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발주청 내부승인 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적정 승인 검토서도 추가로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직전) 수립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 · 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5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대상 문의(흙막이 공사 추가)

● **질의 내용**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CSI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의 내용]
현재 안전관리계획서 양수장에 대한 PHC파일 항타 및 항발과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정기안전점을 2회씩 모두 실시하였으나 양수장이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당초 설계에 없는 PHC파일 항타공사와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 설계된 PHC파일 항타 및 항발은 정기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설계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정에 정기안전점검 이외 추가 점검을 발생했 을 경우 CSI에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미등록시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있습니다.

나.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와 횟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8조 7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정기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 91조 제3항 1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54. 안전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기준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당 건설공사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1종 건축물 등)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별 공사계획이 변경 될 경우에도 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천정공사에 사용되는 시스템비계(최대높이 31m 미만) 설치계획을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가설공사)에 반영하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받아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해당 비계는 높이가 31m 미만으로 시행령 제101조의 2의 가설구조물에는 해당되지 않음.)

[문의사항 2]
본 공사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존 건물의 외장 커튼월 철거계획을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체공사)에 반영하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받아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해당 커튼월은 건축물의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음.)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1종,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 외장 커튼월 철거에 대한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의2호. 제6호에 해체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7]에 안전관리계힉 수립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귀 현장의 외장재 해체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기준 문의(처짐 방지조치)

● **질의 내용**

1. 슬라브 타설 양생 및 하부 동바리 해체 후 장비가 슬라브 위에 이동 시 처짐 방지용으로 잭서포트나 시스템동바리로 슬라브 처짐방지 설치 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으로 올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벽체고정해서 설치되는 브라켓비계가 아닌 바닥에서 설치된 시스템비계에 꽂아서 사용하는 상용자재인 브라켓비계의 경우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기타 공사를 위한 잠깐 설치하고 해체하는 틀비계(10미터이하) 경우도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으로 작성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수립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99조,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 나와 있으며,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를 통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공개하여 두었습니다.

나. 첫 번째 질문인 중차량 이동 및 작업구간 하부 구조체(슬래브)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토와 이에 따른 보강 상세도면을 안전관리계획에 수립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외줄비계에서 브라켓을 이용 쌍줄비계로 설치되는 경우 비계하중이 콘크리트에 앵커 인발저항에 의해 지지하는 구조가 아닌 하부 수직재를 통해 하중 전달되는 구조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의2호에서 말하는 '브라켓 비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중 불균형에 따른 비틀림과 수평력이 크게 작용하는바 안전성 계산에 따라 하부 2중 기둥 또는 충분한 벽이음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마지막으로 틀비계의 경우에도 과거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방지계획서 통합작성지침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제작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틀비계에 대하여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성토 및 절토공사)

● **질의 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에 공종별 안전관릭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대상현장에 절성토 행위가 있었을때 안전관리계획서內 '성토 및 절토공사' 단락을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 현장 일부구간에 덤프 약 1~2대의 분량의 절토 또는 성토행위가 있을 때 안전관리계획서 '성토 및 절토공사' 단락을 작성해야 하는건지? 어느정도의 규모의 절성토 행위가 있었을때 '성토 및 절토공사' 단락을 작성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성토 및 절토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기준 : 마.성토 및 절토공사에 따라 해당공종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 성토 및 절토공사 공정 검토시 비탈면의 변화 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계측대책, 강우 후의 토사붕괴 방지대책, 피난 통로 및 공간의 확보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일 오전 10시경 유선상 통화를 통해 현장의 성토 및 절토 공사의 범위가 좁고 오픈 컷 시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 공사의 범위가 작고 미비한 경우라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기존 2종 시설물인 방파제에 추가 공사 시)

● **질의 내용**

기존시설물인 방파제가 600m 정도로 2종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추가작업(연장 및 보강,제거)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현장은 2종 시설물 대상으로 안전관리작성 공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면 안의 회색부분이 추가 공사 입니다.

도면 안의 노란색 부분은 기존 운영 중인 시설물입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3.항만 - 나. 방바제, 파제제 및 호안'에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방파제 또는 방파제 기능을 하는 호안은 연장 500m 이상을 의미하며, 첨부하신 도면 확인 결과, 대상 공사는 기존 2종 시설물로 등재된 방파제에 약 30~100m 길이의 방파제 8개소를 연장, 보강 및 철거하는 공사로 확인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유지관리공사 여부(1·2종 시설물의 경우), 사용 공법 및 가시설, 발주자의 수립대상 지정 등에 따라 수립대상이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및 제10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건축주 직영공사)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건축주 직영공사로 연면적 200㎡미만 단독주택 현장이나 높이 5.0m이상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서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 하신대로 건축주 직영공사는 주체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게획서 작성 및 CSI 제출 의무는 없으며 발주청(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해체 가시설물)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현장은 지상층 해체공사가 완료되어 지하층(1개층)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지하층 옹벽이 도로가 연접해 있어 불가피하게 흙막이 설치를 하여야만 전체 해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흙막이 높이는 약 3m로 상기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축 계획이 지하층이 없는 매트기초로 설계되어 있어 해당 가시설은 사장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구조체로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해체만을 위한 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흙막이 지보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해당 현장의 흙막이는 '흙막이 지보공'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흙막이 가시설 계획은 첨부한 '가설흙막이구조검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질의하여주신 현장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5의2호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3호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지보공이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느 시기에 어느 물건을 지탱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을 지보공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파일을 참고하였을때 사용부재의 버팀대, 띠장 모두 지보공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 **질의 내용**

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공 시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문의(5m이상 동바리 공사 관련)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중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높이 5미터 이상의 기준

1.상부 슬래브 두께, 합판, 장선, 멍에 두께를 뺀 순수 동바리의 설치 높이.
2 하부층 슬래브 바닥에서 상부층 슬래브 두께 포함

두 항목 중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문구 대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거푸집과 동바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부층 슬래브 상면바닥에서 상부층 슬래브 측면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원자력시설공사)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수립

1에,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조문의 해당여부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내 전력구(터널) 연결공사 입니다.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건진법에의한 정기점검기관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원자력공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

나. 또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 1] 비고 9호에 [별표 1]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승인기관 문의(2m 이상의 자립식 가시설 사용 공사)

● **질의 내용**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2미터 이상의 자립식 가시설을 시공한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맞는 것인지 또한, 해당 서류를 어느 곳에 제출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5의2호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다. 또한 공사에 대한 인. 허가권을 가진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권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교량 보수공사)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수공사 내용은 2종 교량 하부에 가설벤트를 설치 후 교각 보수 후 교량받침 설치하는 공사이며,

공종 중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상기 법령 기준에서는 [1·2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가설벤트 공종이 있는 저희 공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안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유지관리는 일상적인 점검, 정비란 내부 마감재 설치, 창호 설치 등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발주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교량 보수를 위한 가설벤트 설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5의2호에 해당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대수선 공사)

● **질의 내용**

대수선 공사로 인한 용도변경 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필요 서류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4의2호의 각목 인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함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냉동기 설치공사 관련)

● **질의 내용**

건축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법 대상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1만8천여 제곱미터 (지하4층, 지상4층)의 데이터센터 전산동에 냉동기를 공급하게 된 업체입니다.

당사에서 냉동기 설치와 관련된 양중, 안착, 고정, 시운전, 안정화,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건물의 공사 자체는 도급인(발주사)-원수급인(건설사) 간에 진행되지만, 당사가 공급하는 냉동기의 경우는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도급인과 당사간에 직접 공급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냉동기 설치 공사에 대한 건축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유선 통화결과 '건축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로, 유선 안내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중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립하고, 수립 주체는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공사를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건설공사' 해당여부와 동법 제2조제7호에서 말하는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소규모 건축공사 중 2m 이상의 지보공)

● **질의 내용**

소규모 건축공사(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 중 2m 이상의 지보공 존재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 현장의 경우 2m 이상 지보공이 존재함에 따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제5의 2호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절토사면 내 계단식 옹벽)

● **질의 내용**

당 현장 절토사면은 계단식옹벽 상단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연장이 1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절토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식 옹벽은 지면으로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계단식 옹벽은 토압을 지지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절토사면과 옹벽을 각각 2종시설물로 보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을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옹벽을 절토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절토사면만을 2종시설물로 보아 절토사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만 수립하고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 현장의 계단식 옹벽은 사면보강을 위한 앵커가 설치되지 않은 중력식 콘크리트옹벽으로 옹벽과 절토사면 각각 2종 시설물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은 각각 하셔야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는 대상 공종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옹벽이 2종 시설물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폭발물)

● **질의 내용**

1. 본 사업은 시가지 도로를 가로막는 임야를 절취하여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연장은 L=0.5km이며, 주변에 가옥이 있는 상태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령 제 98조 제 1항 제 3호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항에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1, 2, 3종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본 사업이 건진법 제 62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을 위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건진법에 명시된 시설물에 기존 가옥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옥이 포함된다면 20m안의 기준은 도로 경계인지 아니면 발파원(폭약을 사용하는 구간) 기준인지 여부

● **회신 내용**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항제3호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시 20미터 안에 시설물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도로 경계에서부터 인지 폭약 사용 구간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해당 질의의 경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정확한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시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다수의 건축물로 되어있는 관광숙박시설)

● **질의 내용**

현장 내 2종 시설물, 5000㎡이상 건축물, 관광숙박시설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나 지하 및 지상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15개 동으로(1층 10개동, 2층 1개동, 3층 3개동(11.3m높이), 관리동 1층 1개동)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각 동별 구조가 연결되지 않는 건축물 임을 확인하였으며 개별 시설물은 종외 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종외시설물일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법조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첨부된 자료와 유선상 통화로는 연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제한되어 개별 동의 연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를 확인하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될경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낙하물방지망)

● **질의 내용**

당 공사현장은 신축공사(층고 45층)를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체식 낙하물방지망"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추가변경(CSI에 등록 여부) 신청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도 개정을 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간소화로 낙하물 방지망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및 검토대상에서 2021년 5월경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수립하며, 검토대상은 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 탭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및 검토 체크리스트'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헥사곤(테트라포트) 제작)

● **질의 내용**

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헥사콘 제작을 위해 특허품 거푸집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해당 공정이 건진법 시행령 제 101조의2 제1항 가설구조물 관련에 해당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헥사콘 설치 시 측면에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이 설치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다만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가설 구조물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권해석을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1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폭발물)

● **질의 내용**

1)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중 폭발물이란 '발파 작업' 외에 다른 폭발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에서 옹벽(약 6m) 작업을 위한 거푸집 설치 시 4m 거푸집 설치 및 타설, 해체 후 2m 거푸집 설치 및 타설(분할타설)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발파공사는 굴착 공사 시 사용하는 폭발물에 대해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설치기준은 바닥 구조체 등 상부면에서 설치구간의 상부 슬래브 등 구조체 하부면까지 높이를 의미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의 높이 또는 거푸집의 단일 규격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라. 또한, 존치된 1차 거푸집 위로 연결하여 2차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설구조물로서, 이에 대한 전도, 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조체의 거푸집 높이를 합산하여 거푸집 높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마. 따라서 5미터 이상의 기둥, 벽체 거푸집을 끊어치기 할 경우에도 하단부의 거푸집이 존치되어 있다면 거푸집 총 높이에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가설울타리 계획변경)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소음민원으로 인하여 기존 설치되어있던 가설방음벽(해당구역은 EGI=3M설치) 에 추가로 강관파이프로 비계를 설치하여 방음벽(RPP판)설치 예정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①항 4의3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 될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추가하여 검토의뢰를 진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리프트, 곤돌라(양중기계: 자재운반용), 가설울타리, 출입구등의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는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간소화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및 검토대상에서 2021년 5월경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방음벽의 종류이지만 비계 규모가 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공종에 포함여부를 질의하였으며 비계 사용공사에 해당되나 사용 목적이 가설울타리로 포함됨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시켜줄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국가하천 내 호안형 스톤네트)

● **질의 내용**

국가하천 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호안형 스톤네트(여울형 낙차공,좌안(58m)/우안(30m)) 설치 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국가하천의 제방 내 호안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호안형 스톤네트 설치공사는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합벽지지대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는 현장에서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합벽지지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벽지지대라는 것이 브레이스 프레임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구조물이 합벽 지지대라고 알고 있는데 거푸집에 강관 서포트를 버팀대로 사용한 형태도 합벽지지대라고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내드리니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 중 제4호의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은 교량가설공법인 FCM, MSS, ILM 같은 가설구조물들을 말하며, 4.2호의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은 SWC, ACS, RCS, 고소작업대 등을 말하며, 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을 말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4의3호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가설구조물의 종류는 CSI〉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는?〉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복합형가설구조물 중 합벽지지대는 일반적인 벽체 거푸집과 같이 양측으로 거푸집 설치하여 벽체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편측 거푸집에 버팀대 지지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라. 첨부하여주신 파일의 동바리의 설치는 거푸집의 버팀대로 지지되는 구조의 일종으로 복합형 가설구조물에 포함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현장에 설치되는 복합가설구조물의 높이가 약 1.5M정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안전점검 실시시기)제1항제2호에 “구조물별로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고 안내 드렸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공사 종류별 해당 여부_발전기 시설)

● **질의 내용**

1・2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등록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고 종외 시설물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 중 당해 프로젝트가 어떤 종류의 시설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공사 규모 : OOOO 500MW급 1기 건설공사
* 공사 범위 : 주.보조기기 및 기계, 전기, 제어, 환경, 토건, 조경, 도로 등의 설치 시공
* 공사 기간 : 착공일 ~ 2026.6

● **회신 내용**

가. 해당 현장의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및 [별표1]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또한 유선통화를 통해「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종외 시설물인지에 대해서 판정은 우리 관리원은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해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워킹타워)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철골구조에 판넬마감으로 외부비계가 없이 장비작업으로 마감이 진행되고 있으며
옥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없어 워킹타워를 외부에 설치하려고합니다.
높이는 8미터이고 철골조에 지지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워킹타워 설치만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현장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다만「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되어 있음으로 워킹타워 설치에 따른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주시길 권고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전기공사)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송전선로 22.9kV 지중선로공사 로서 구간내 맨홀이 1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맨홀설치시 굴착깊이가 3.0m내외로서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구간이므로 당일 굴착 및 복구 공사이므로

정기안전점검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 공사의 경우 도면상 굴착최대 깊이가 약 3m되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제1항제3호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에 해당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2호제4호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에따른 전기공사로 발주된 현장인 경우 건설공사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현장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따라 해당현장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발파공법 변경적용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 **질의 내용**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소구경 Shield TBM 157m 및 수직구(가설) 2개소의 전력구공사로,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하고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 협의된 지하안전평가에서는 수직구 암반구간 굴착시 무진동 암파쇄 공법 적용을 계획하였으나,
당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진동 암파쇄 공법에서 발파공법으로 굴착방법이 변경 될 경우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면서 발파공법으로 굴착방법이 변경될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지특법」제18조제3항 및 「지특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서 첨부

나. 또한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재협의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지특법」제18조제4항 및 「지특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관련하여

- 재협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첨부
- 재협의한 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 첨부
- 재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승인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서 첨부
- 지하안전평가 협의 및 보완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 필수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해체공사)

● **질의 내용**

당 사업지는 재개발 현장으로 해체계획서 작성,심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 원에서 공유해주고 계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_2022.12" 안에 3.3.6 해체공사 의 최하단부에 보면
"* [건축물관리법 제21조 5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의뢰하므로 해체공사 제외 함" 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 사업지 총 2000여개의 건물 중 1개 건물이 21조 5항에 해당되어(13층 건물1동 해체를 위해 10톤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 예정) 허가권자를 통해 귀 원에 검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고 상기 해체계획서 심의로 갈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해석이 타당한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사'라고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시행령 제98조제1항제4의2호 다음 각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에서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에도 해당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하여주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5항은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의뢰 하여야 하며 검토 완료된 의견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 참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증축공사)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건물 1동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붙여서 600제곱미터인 증축공사를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될까요?

2. 건물을 붙인다는 경우 철골 기둥에 판넬 형태의 공장에서 별도의 기둥과 판넬을 이용, 증축공사중 1개면이 판넬이 중복되는 형태와 별개의 건물로 구분되었으나, 통로 부위를 연결하는 형태의 증축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될까요?

3. 기존 건물 2개동이 합쳐서 3만제곱미터 이상일때, 1개동 건물에 600제곱미터인 증축공사를 할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까요?

● **회신 내용**

가. 기존건물 1동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의하여 제2종시설물로 해당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종시설물의 건축물에 붙여 증축을 할 경우 증축되는 건축물이 따로 종시설물이 되는 것이 아닌 종전과 같은 2종 시설물 안에 포함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1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장의 형태와 시공 재료에 상관없이 공종별(가설, 굴착, 콘크리트 ,강구조물공사 등) 해당되는 공종에 포함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2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흙막이 지보공 추가)

● **질의 내용**

1. 현황

당현장은 배수펌프장이 2종시설물에 해당하여 최초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하여 검토 및 발주청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 실착공 전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유출부(우수box)의 시공방법이 하천제방을 OPEN CUT로 굴착하여 시공하는 것에서 추진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항타항발기 사용 및 높이2미터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이 추가되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등이 추가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위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98조제4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변경 또한 같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고속철도 교량 내진보강공사)

● **질의 내용**

당 사업장은 고속철도 교량 내진보강공사(교량받침 교체공사) 현장입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중 다른 내용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하천 횡단 교량 작업이 있어 가교설치가 필요하고, 가교설치 작업중 파일 항타작업★ 있습니다.
해당작업은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닌 「기중기」를 이용한 항타작업 입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질의1] '나'항에서 언급한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공사는 아니므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 해석이 적합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더불어, 가~다'항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해당여부는 '차량등록증'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것인지도 함께 질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는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장비제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항타 및 항발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질의하신 장비가 오거를 달아서 천공작업을 하는 기중기 등 건설기계등록증 상 천공기(22) 또는 항타 및 항발기(23)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해당 건설공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정기안전점검(최소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종외 시설물)

● **질의 내용**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 되는 현장인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높이5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해당 현장과 일반 안전관리계획서 해당 현장 중 어느 해당사항으로 보아야 하나요?

2.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서 작성이 건진법에 기입되어 있는 과정 상 내용을 찾을수가 없는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서 불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중략)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주신 현장은 종외 시설물로 확인되었으며 종외 시설물인 경우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등록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시어 인,허가 기관에서 지정해준 안전점검 기관에 검토의뢰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단지조성)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1호~제6호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민간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정비구역 내에 공동주택 단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등의 사업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사업 의제 처리 및 사업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각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비사업을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고 단일(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의 여부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된 건설공사별(원도급자 기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공동주택, 도로, 공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체가 하나로 계약되었다면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컨소시엄을 통한 공구분할의 경우에도 컨소시엄 주간사가 공구별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취합하여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관리), 공구별 별도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된 건설공사별(원도급자 기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방식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 사업추진 방식(컨소시엄, 공구분할 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에 따른)

● **질의 내용**

L형 옹벽으로서 높이가 6.5m(기초 0.75m 포함)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옹벽 설치 작업시 동바리 설치는 없으며 비계 및 벽체 거푸집만 6.5m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건진법에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푸집과 동바리가 동시에 5m 이상 설치 될 때에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푸집만 5m 이상일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문구 대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거푸집과 동바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거푸집 5m만 시공할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별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입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3단 보강토 옹벽의 해석기준)

● **질의 내용**

관련 법상의 내용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1) 보강토옹벽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높이 5m 가 1단 기준인지? 3단 기준인지?

2) 위의 질문중 3단 기준이었을때 각단의 높이가 4.5m 이하이고 안전율 고려하여 소단을 1.5m~2m 시공하여 각 단(2~3단) 설치하면 1단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가. 옹벽이란 토압에 저항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하는 구조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국내 소단에 대한 기준(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산지관리법,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5m를 초과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나. 여기서, 소단의 폭은 상.하 각 단별 단일옹벽으로 가정한 안정해석 및 전체 구조의 안전성 해석을 모두 만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단식 보강토 옹벽의 경우 3단을 합친 높이가 기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방열공사 및 냉동장비 설치공사)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건물현황
   - 2023년 상반기에 준공 득하고 사용중인 건물임.
   - 연면적 약 125,300m2, 1~6층, 1~2층 저온창고임.

2. 공사실시범위
   - 1~2층 저온창고 내부의 방열공사와 냉동장비설치공사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내부 방열공사 및 냉동장비 설치공사를 진행하실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라. 다만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을 참고 하시어 해당되는 공사가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건축물 일부 해체 및 리모델링 시)

● **질의 내용**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관련 해체공사 중 16층 건축물이나 해체공사범위는 15층이며 부분철거 입니다.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개요
지역지구 : 상업지구/방화지구
용도 : 호텔
규모 : 지하2층 / 지상16층 , 연면적 약 8,000m2
해체범위 : 1. 지상 15층 슬래브 해체 15m2
2. 지상1층~3층 계단부분 해체 약 46m2
3. 지하2층~지하1층 계단부분 해체 약 30m2
4. 외벽마감재 철거 (드라이비트+조적벽체) : 약 3,700m2

위의 내용으로 해체가 진행 할 예정이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대상이 국토안전원인지 외부기관에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위의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국토안전원일 경우 같은 규모의 건축물 대상에서 해체 면적의 규모가 16층 미만의 공사에서 소규모 작업에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대상이 국토안전원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면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1 · 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종외시설물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기초 콘크리트 철거)

● **질의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검토 완료 후 작업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2. 구조물 작업중 기초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타설 강도가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여 재시공 예정입니다.
3. 안전이 아닌 품질의 콘크리트 강도 기준 미달로 기초 콘크리트 깨기 작업 후 재시공을 하여야 됨에 따라
4. 콘크리트 깨기 작업을 안전관리계획서 공법 추가로 국토관리안전원에 검토 의뢰를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해체공사에 포함 되는 공사는「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른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에 해당하나 당 현장의 기초 콘크리트 철거 공사는 본 구조물의 구조적 영향을 받지 않는 철거 공사인것으로 판단됨으로 추가적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기초 철거 공사에 필요한 폐기물 반출계획서, 위험성 평가표, 장비사용계획서 등 작업전 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필요서류를 작성하시어 안전하게 철거작업을 진행할것을 권고 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전기공사의 부대공사 등)

● **질의 내용**

1. 공사규모
 - 토목 : 연료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지반 다짐 및 타설, PED설치, 포장
 - 전기(수전설비) : 발전기 8SET 설치
 - 전기(배전설비) : 개폐기 56SET설치, 케이블 약 90,000m 포설
 - 통신공사 1식
  * 주요공사는 케이블 및 전기설비 공사

2.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여부
 - 1,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해당없음
 - 지하 10m이상 굴착 공사 - 해당없음
 - 폭발물 사용 공사 - 해당없음
 - 10층~16층 건축물 공사 - 해당없음
 - 10층이상 리모델링, 해체공사 - 해당없음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 해당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건설공사 - 해당없음
 - 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 - 케이블 매설을 위한 SBH판넬 설치 예상(검토 중)

[문의사항 1]
흙막이지보공 SBH판넬 설치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인지?

[문의사항 2]
SBH판넬 설치 검토 중 OPEN CUT 가능하여 흙막이지보공 설치 없이 공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문의사항 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이면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토목공사의 공종이 별도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등의 부대공사로 포함되어 하나의 공사로 되어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SBH판넬도 2m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에 해당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며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 · 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3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가로수·가로등 이설공종)

● **질의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가로수·가로등 이설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국토안전관리원) 작성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당 현장은 영동대로 지하화 건설공사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건설공사 : 1종시설물 및 지하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시공순서는 ①가로수·가로등 이설 → ②개착구간 줄파기, 파일박기(복공설치) → ③굴착 순으로 시행됩니다.

4. (질의) 시공순서 중 파일박기 및 굴착공사 전 시행되는 ①가로수·가로등 이설공종이 안전관리계획서(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해당 공종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2제1항제3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1종 시설물 등이 수립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8조제1항제5호의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항타 및 항발기는 해당 시 수립대상 포함)

나. 가로수·가로등 이설 공종 자체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공사의 내용 수록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의 현장 세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으로 갈음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지침 [별표 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전기공사 내 관로공사)

● **질의 내용**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전기공사입니다.
지중 송전선로 공사내용중 높이 2m이상 흙막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승인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3항 '건설공사 고시' 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 1항 '건설공사'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항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를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리모델링)

● **질의 내용**

건진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르면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물은 지상 8층, 연면적 25,000m2입니다.
증축 인·허가는 완료 되었고 1층 입구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층 확장을 위해서는 외장패널 철거, 철골기둥, 데크설치, 타설, 방수, 외장패널 설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면적상 1·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되는지?
2.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리모델링인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되는지?

● **회신 내용**

가. 해당 공사의 1·2종 시설물 여부는 기존 시설물의 1·2종 시설물 여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5. 건축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의2에 해당하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유지관리공사 여부(1·2종 시설물의 경우), 사용 공법 및 가시설, 발주자의 수립대상 지정 등에 따라 수립대상이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및 제10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가설구조물 중 동바리)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건입니다.

엘리베이터 피트나 계단실 옥탑층 등 한정된 공간만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현장이라도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여부인지
혹은 예외대상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제1항제2호에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 최소면적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면적(연장)에 관계없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건설장비(천공기))

● **질의 내용**

저의 현장은 토목현장이며, 방음벽 공사관련하여 크레인이 반입 예정입니다.

여기서 크레인이 인양물 작업이 아니라 크레인에 오거를 달아서 천공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장비를 건설기계등록증에 등록된 크레인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또는 장비명은 크레인이여도 작업은 오거를 부착후 천공작업을 하오니 천공기로 봐야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등록증의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장비제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선으로 확인 결과 해당 장비는 크롤러 크레인에 오거를 달아서 천공작업을 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상 크레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장비는 크레인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천공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천공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장비는 오거(Auger)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굴착_압입공법)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2번 항목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여기서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하는 공사는 비대상인가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항목에 있지만 예외 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하천도 포함인가요?

질문 요약
1. 지향성 압입공법은 2번 항목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항목이지만 예외 대상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즉,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나. 나. 지향성 압입공법 자체는 비개착 공법의 일종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진기지와 도달기지 설치를 위해 굴착 및 흙막이 공사가 수반될 경우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2제1항제3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 수립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8조제1항제5호의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항타 및 항발기는 해당 시 수립대상 포함)

다. 귀하의 현장 세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으로 갈음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제외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지침 [별표 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차수를 위한 시트파일(차수벽) 설치)

● **질의 내용**

건축 터파기공사 진행예정입니다. 당 현장은 석문산업단지 매립토사 구간으로 사전 시험굴착시 지하수위가 높고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비탈면 법면이 유실되는 상황입니다.
보완대책으로 유입수 차단을 위한 차수벽용 쉬트파일을 법면 후면측에 설치하여 법면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굴착깊이: 약5.5m
쉬트파일 근입깊이 : 10m

질문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쉬트파일을 박기위한 진동햄머가 정기안전점검 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3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자립이 불가능하여 지보공(띠장, Strut, 브레이싱, 어스앵커 등 흙막이 벽에 걸리는 토압을 받는 부재)이 필요한 흙막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탈면 후면의 차수를 위한 시트파일(차수벽)만 시공할 경우 해당 차수벽은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등록증의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장비제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파이프 동바리 시공에 따른)

● **질의 내용**

OO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로 검토받아서 CSI에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가설물중 5M가 넘는 시스템동바리는 이미 검토받아 제출했는데, 가설물중 강관동바리 부분이 있는데, 건설사업단에서는 대상이 아닌 강관동바리 V4(최고높이 4.15M, 평균높이 4M이하)부분에 관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강관동바리 구조검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제출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법령부분이 궁금합니다.)
2.제출해야 한다면 CSI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검토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 **회신 내용**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7,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다. 콘크리트공사를 참고하시면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 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의거 콘크리트공사의 시스템 동바리와 파이프 동바리 설치계획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⑤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은 구조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출시 다. 콘크리트공사에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설계변경 및 5m이상 거푸집 끊어치기)

● **질의 내용**

착공당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 아니였으나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에 따른 조경기반시설물 옹벽(역T형) H=5~6m, L=60m, 추가반영되어 시공전 단계에 있습니다,

1. 착공 당시 수립대상이 아니였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시설(옹벽) "거푸집 5m이상" 해당되어 수립대상이되는지 여부.

2. H=5~6m 옹벽을 2회에 (3m),(3m)나누어서 분할시공하는데도 "거푸집 5m) 이상"해당되어 수립대상이되는지 여부

3. 건진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아닌 조경공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즉,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별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설치기준은 바닥 구조체 등 상부면에서 설치구간의 상부 슬래브 등 구조체 하부면까지 높이를 의미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의 높이 또는 거푸집의 단일 규격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바. 또한, 존치된 1차 거푸집 위로 연결하여 2차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설구조물로서, 이에 대한 전도, 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조체의 거푸집 높이를 합산하여 거푸집 높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 따라서 5미터 이상의 기둥, 벽체 거푸집을 끊어치기 할 경우에도 하단부의 거푸집이 존치되어 있다면 거푸집 총 높이에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에 따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5미터 이상인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거푸집만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하는 대상여부

2. 총 벽체 높이가 5미터 이상일때, 5미터를 한번에 치지않고 끊어서(높이 3m 거푸집 설치 및 타설, 해체 이후 2m 거푸집 설치 및 타설) 치는경우도 수립대상 여부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별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설치기준은 바닥 구조체 등 상부면에서 설치구간의 상부 슬래브 등 구조체 하부면까지 높이를 의미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의 높이 또는 거푸집의 단일 규격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라. 또한, 존치된 1차 거푸집 위로 연결하여 2차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설구조물로서, 이에 대한 전도, 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조체의 거푸집 높이를 합산하여 거푸집 높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마. 따라서 5미터 이상의 기둥, 벽체 거푸집을 끊어치기 할 경우에도 하단부의 거푸집이 존치되어 있다면 거푸집 총 높이에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질의 내용**

- 용도 : 자동차 관련시설
-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구조 :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연면적 : 2,236.39M2
- 지하층 면적110.0M2 굴착고 G.L -4,610M
- 질의내용
  1) 골조공사 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적용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으로 인지
  2) 당 현장은 허가당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서 도면이 없음-설계자의 구두 답변
  3) 그러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2M 이상 굴착시 흙막이 지보공"설치를 해야된다는 내용 있음
  4) 흙막이 지보공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대상이 된다면 흙막이 지보공 도면과 구조계산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가.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이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제5의2호에 의거하여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서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2m 이상 굴착시 흙막이 지보공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현장의 여건에 따라 OPEN CUT과 흙막이 지보공으로 설계에 적용 할 수 있으므로 2m이상 OPEN CUT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유지보수공사)

● **질의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종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예 : 교면재포장, 신축이음장치 교체, 단면보수 등)의 경우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현장은 유지관리을 위한 건설공사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관급자설치 관급(가교))

● **질의 내용**

1. 당 현장은 2종시설물(통문) 등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 당 현장은 교량가설을 위한 가교설치가 관급자설치관급(재료비 비목으로 반영)으로 반영되었으며, 가교설치의 내용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5호 가목 천공기,나목 항타 및 항발기 사용

[문의내용]

1) 관급자설치관급인 가교설치를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문의

2) 가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문의

3) 가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 확인 요청
당현장 시공자 A업체
가교설치 관급납품자 B업체

4) 시공자 작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가교에 대한 내용 포함 또는 각각 별도 작성 여부 확인 요청

● **회신 내용**

가. 관급자관급공사의 경우 자재 및 시공을 모두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로 해당 현장의 도급자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입니다.

나. 그러므로, 도급자는 관급자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의무가 없으며, 해당 발주처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해당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만큼 관급자재의 반입 경로 등 해당현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수록됨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토양정화용역)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대상사업장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당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에 7에 의한 토양정화업(업종코드:5548) 및 토양정화업(표준산업분류번호 39001) 면허를 득한 후 토양오염정화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 현재 당사는 토양정화용역을 수주하여 대상부지에서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토양정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염토양 굴착 심도가 10m 이상입니다.

[문의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토양정화업에 의한 엔지니어링 용역 사업으로 통계청 표준 산업분류 코드현황에 보면 건설업에 해당되는 각종 업면허 코드는 F코드이며, 토양정화업은 E코드로 분류되며 업면허 분야를 다른 산업분야로 정의하여 코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토양 굴착 후 바로 되메움이 계획되어있는 현장입니다.

이 경우 토양정화업에 의한 당 사업장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한 유사민원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즉,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 위 '나'의 건설공사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은 업무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문의(워킹플랫폼 및 리프트(호이스트) 등)

● **질의 내용**

1. 가설구조물 검토시, 워킹플랫폼(첨부자료)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대상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워킹플랫폼은 호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심사를 하는 대상이여서, 검토대상에 들어가나요?

또한, 현장에서 가설 사용 시,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승인받는 제품(호이스트 등)도 안전관리계획 검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5의2호에 따라 제101조의2의 가설구조물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입니다.

나. 워킹플랫폼은 시행령 제1항제4의2호의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여 해당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며, 워킹플랫폼은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리프트(호이스트)'에 대하여 타 기관 승인검사 및 중복검토 등으로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부서에서는 검토업무 간소화 조치에 따라 검토항목에서 제외하여 리프트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22년말 제작 배포중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CSI)알려드립니다)안전관리계획서에서 열람 가능)에 '리프트'를 작성 항목에서도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엘리베이터 박스 시공 사례)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층 철근콘크리트 공공건축물을 계획중인데, 엘리베이터 박스가 피트포함 9.2m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1항에 의거 1-9호에 해당될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하여 제출할 대상인바,

위 건축물과 같이 9.2m의 엘리베이터 박스가 있을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가구조물중 "높이 5m이상인 동바리"항목에 포함되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요?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엘리베이터실 슬래브를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한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제1항제2호에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하여, 설치면적에 관계없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해당 구간을 호리빔, 데크플레이트 등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높이 5m이상의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제101조2제1항제2호의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5.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정기안전점검 항목 문의

● **질의 내용**

절토사면 2종시설물 대상 공사입니다(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절토 2회 초기 1회

절토 시 연직높이가 10미터 이상인데 이것을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러면 굴착에 대해 정기점검 2회를 잡아야 하나요?

일부 흙깎기중 발파가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에 시설물이나 가축은 해당이 없지만

이것도 정기점검 2회를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서 절토사면은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을 말합니다.

나. 절토사면은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를 말하고, 폐기물매립시설은 굴착면 바닥이 되메우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됨에 매립시설을 포함한 전체 연직높이로 판단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파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은 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포함하여 발파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셔야 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DCM 공법 시 해상선 리더길이 관련)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중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서

해상 작업시 연약지반개량 및 보강하는 DCM(심층혼합처리) 공법에 있어 해상선 리더길이 28M가 됐을때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5호에서 천공기와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천공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이면서 높이가 10m이상인 천공 장비(건설기계등록증과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기종별 표시인 22번으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입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은 현장에 반입계획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건설기계명을 확인하여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문의(소규모안전관리계획_조절식 간이흙막이)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토목공사로 주공종은 맨홀펌프장 4개소 시공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1·2종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조물공
맨홀 사이즈 : B x L = 3.500 x 3.500 H = 6.500 m 굴착심도 6.650 m 1개소
맨홀 사이즈 : B x L = 3.500 x 3.500 H = 5.500 m 굴착심도 5.650 m 3개소

가시설공
조절식 간이흙막이 5.8m×5.8m,H=6.8m 1개소
조절식 간이흙막이 5.8m×5.8m,H=5.8m 3개소

기타 관로공 및 포장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조절식 간이흙막이는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중 “높이 5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에 해당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에 해당합니다.

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위 시행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말하므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시행령 제99조,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을 참고하시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알려드립니다〉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해체계획서 관련)

● **질의 내용**

해체공사 관련해서 해체계획서 작성 시 구조설계도서 또는 구조안전성검토를 위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허가건일 경우 모든 해체공사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7페이지 그림2-1에 표시된 것처럼 장비탑재일 경우 구조도면 유/무 확인을 거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조설계도서가 따로 없어서 기본설계도서만 있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체계획서 작성 시 구조설계도서 또는 구조안전성검토와 관련해서는 앞서 유선 통화내용과 같이 기존 건축물 설계도서 유무, 건축물 조건, 건축물 해체작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에는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해체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의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5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국가보안 시설물)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도면 일부분이 비밀 문서로 처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신 내용**

가. 우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시행령 제98조제항에 따른 원자력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현재 건진법 또는 건산법에는 국가 보안시설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물은 도면 등의 유출이 금지되어 있어, 수립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발주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국토안전원은 법령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안전관리계획 승인 주체인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질의 내용**

□ 현황
ㅇ 본 공사는 민간 발주 해상풍력단지 조성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력발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ㅇ 토목, 건축, 전기, 기계공사가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임.
ㅇ 시설물(①해상풍력 발전기 시설, ②개폐소, ③변전소, ④물양장)은 각각 별도 위치에 설치되는 구조물임.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황
ㅇ 해상풍력 발전기 시설 기초파일 공사
- 영 제98조제1항제5호 나.에 따른 항타기 사용공사
ㅇ 개폐소 공사
- 영 제98조제1항제5의2호(영 제101의2제1항 가설구조물) 에 따른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사
ㅇ 변전소 공사 : 해당없음
ㅇ JETTY(물양장)공사 : 해당없음

□ 질의내용
ㅇ 공정 순서상 상기 시설물은 동시에 착공할 수 없어,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이 아닌 JETTY(물양장), 변전소 공사를 선 착공 시에도 본 공사 착공으로 보아, 법 제62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 해당공사(기초파일공사, 개폐소) 착공 전 발주자 승인을 받으면 되는지?
ㅇ 또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된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건설공사"의 정의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된 공사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해체 허가대상과 해체 신고대상)

● **질의 내용**

해체허가를 득해야 하는 규모의 기존 공장 일부 해체철거공사 현장관리자입니다.

해당 해체철거공사의 대상 건축물은 철골구조에 외부 그라스울 판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체계획서는 해당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해체허가를 득하였고,
해체허가를 득한 후 해체공사착공계를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은 선박제조공장으로 예정생산일정이 촉박하여 조금이라도 공기를 단축하고자 주요구조부의 해체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판넬의 해체를 착공승인 이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해체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있어 해체허가를 득한 현 상황에서 우선 외부판넬의 해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국토관리원은「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⑥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기관이므로 해체계획서의 신고 및 허가 관련 사항은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하신 사항은 해체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의 공사 착공 관련으로 보입니다. 공사 착공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2.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문의(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질의 내용**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기존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로 기존 교대 측면 옹벽(날개벽)을 철거하고 교대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신설될 교대의 높이가 기초 저면으로부터 11미터이며 배면측 성토 법면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교대를 시공하게 되는 공사인데 옹벽 배면 기존 성토법면 최고 높이가 10미터 내외입니다.

이 경우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3호에 고저차에 따른 굴착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91조제2항을 따르도록 하고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하층의 지표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지하 높이에 대한 기준은 해당 법령만 정의되어 있어 해당 현장의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하깊이에 따른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문의(수중 발파공사)

● **질의 내용**

항만공사 현장 입니다.
현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이 아니며, 방파제 및 물량장이 주요 공종인 현장 입니다.
물량장 시공구간에 준설을 해야하는데, 수중에 암이 확인되어 발파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1항3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로 대상공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 현장은 20미터 이내에는 민가나 시설물이 없고, 100미터 이내에 축사나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20미터 근접하여 가설사무실(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3호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현장의 조건이 말씀하신데로 발파공사로 영향을 받을 시설물이나 축사가 없다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나 수립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4.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하천시설물)

● **질의 내용**

1종시설물 중 하천(OO강) 보해체 및 재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공사 중 제외지측 외수위를 하천으로 배수하기 위해 D1000관을 설치합니다.

수지예산서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사는 설계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현장은 아니기에 반영된 비용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와 설계안전성검토와 별개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하천시설물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는 “국가하천에 설치되는 다기능 보”에 해당하면 보의 높이에 따라 1종 및 2종시설물로 분류됩니다. [별표 1] 비고 제19호에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보“로 정의되어 있어, 취수목적의 한 가지 기능을 가진 보라면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D1000관은 국가하천의 제방을 관통하는 통관에 해당하며, 통관은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제2종시설물로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 통관은 제방의 부속시설에 해당하고 국가하천의 제방시설물로 제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다.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하며,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5.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문의(타당성 검토 공사)

● **질의 내용**

기존 상수도관을 확인하고 추후 수열에너지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공사로 시험터파기 시 높이 3.5m 가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공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에 의하여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 때문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되고,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공사를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현장이 건설공사라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귀하의 말씀처럼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5의2호에 따라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는 해당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다. 의견을 추가하자면, 기존 상수도관 확인 작업이 즉 해당 작업의 목적과 성격(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하는 것으로 도급자가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6.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옹벽공사)

● **질의 내용**

CSI 업로드 작업 시 콘크리트공사 중 옹벽(콘크리트) [패널식옹벽 포함]과 성토/절토공사 및 옹벽공사(콘크리트옹벽 제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1) 위 내용을 기준으로 콘크리트 옹벽, 패널 옹벽 공사는 콘크리트 공종에 검토요청 할 수 있으나 보강토옹벽, 중력식옹벽, 패널식(PEN)옹벽, PSP패널옹벽의 경우 성토/절토 공종에 업로드 후 검토요청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질문1)의 경우 이외에 콘크리트옹벽, 패널옹벽, 성토/절토 및 옹벽공사 공종에 대하여 옹벽 종류를 분류(구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지침) 또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에서 옹벽 중 콘크리트옹벽과 패널식 옹벽은 RC 및 PC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성이 있고, 보강토옹벽은 성토 및 절토공사와 관련성이 있어 CSI에서 구분하여 등재하도록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 옹벽 종류를 분류(구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지침)은 국가건설기준(KCSC)(구 설계기준, 시방기준)에서 옹벽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CSI에서 옹벽을 구분하여 등재하여하는 기준(지침)은 없습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즉 작성과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을 참고하시고, 최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 배포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공지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질의 내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중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원형구조물에 동바리 설치 높이가 6.7m정도 이며, 캔틸레버 돌출 1m,
캔틸레버 부분 동바리 전체 설치 면적이 약8㎡입니다.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동바리 설치 면적과 관련 없이 동바리 높이 5미터 이상이 한 개소 라도 있으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수립·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제1항제2호에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하며, 최소면적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면적(연장)에 관계없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문의(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업무범위에 대해 3가지 질의드립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조 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1차 시기가 최초 설치 완료시]라 적혀있는데 이 시기는

  - 현장 내 최초로 갱폼을 설치하는 시기인지
  - 현장 내 모든 갱폼이 최초로 설치되는 시기인지

2. 위와 동일한 법령으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2차 시기가 설치말계 단계시]가

  - 해체 구간 도입시 해체 직전의 시기인지
  - 현장 및 점검일정 협의하여 설치 말기단계의 시기인지

또한, 2번 항목은 1번항목과 동일하게
  - 현장 내 마지막으로 갱폼을 해체하는 시기인지
  - 현장 내 모든 동의 갱폼이 해체하는 시기인지

3. 안전관리계획서 상 강구조물 공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당 현장은 주출입구와 지하주차장 램프구간에 강구조물 시공예정입니다. 당 현장도 승인 대상현장인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어 실시시기와 횟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나. 점검횟수와 구체적 점검시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 및 인허기가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점검시기는 위 지침 [별표 1]에 1차는 '최초 설치 완료시'이로 최초로 완료한 시기이며, 2차는 '설치 말기단계시'로 대상 갱폼의 최종 설치완료한 시기를 말합니다.

다. 주출입구와 지하주차장 램프구간에 강구조물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아니며, 제99조제1항,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 따라 해당 공종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는 시공자가 판단하시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승인기관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라.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알려드립니다>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면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가 있어며,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6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문의(기존 교외선 시설물 보수, 보강 및 개량 공사)

● **질의 내용**

당 공사는 '운행중지된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노반 시설개량공사'로서 기존 교외선 시설물을 보수, 보강 및 개량하는 공사로 상세 공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 사 명 : OOOO~OOOO 개량공사
나. 목 적 : 운행중지된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노반 시설개량공사 시행
다. 공사내용

공 종 : 옹벽(3개소), 승강장(6개소), 배수시설(4개소), 낙석방지망(1개소), 교량 보수보강(5개소), 사면 보강(1개소), 울타리(1식), 구교(1개소), 예초/벌목(1식), 터널 보수보강(5개소) 등

[문의내용]

위와 같이 당 공사는 기존 교외선 시설물을 보수, 보강 및 개량하는 공사로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상의 '안전관리계획서'수립대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는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바, 당 공사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청과 재 확인하시기 바라며, 운영 중지된 시설물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안전관리 여부 또한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70.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기존 교량의 일부 구간 확장공사)

● **질의 내용**

기존 100여미터되는 2종시설물(교량)의 확장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해당 교량은 총 9경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경간(약 50m)은 기 확장 시공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나머지 5경간에 대해 확장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확장공사 교량은 길이 60m, 폭 4.5m입니다.
해당 공사 길이로는 종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종 시설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만약 종 시설물로 해야한다면 신축이음교체나 받침 교체 등도
종시설물로 봐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수립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귀 현장은 2종 시설물인 교량의 확장공사로 유지관리을 위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 · 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검토의뢰와 관련하여서는
[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1. 2종시설물 주차타워 해체 신설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관련 질의

● **질의**

1. 당 현장의 병원 건축물은 연면적 10,466.08m2 의 의료 시설로써 5000m2이상 이므로 2종 시설물에 해당

2. 당 현장의 공사 범위는 주차 타워만 해체 및 신축 공사

3. 구조체적으로 거동이 되지않는 상황

따라서 해당 주차타워 해체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대상 시설물은 1·2종시설물인지 종외시설물인지 확인바랍니다.

● **회신 내용**

가. 본 질의에 대한 첨부파일 검토 결과 지하1층~ 지상1층 구간 병원, 주차타워의 구조가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되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병원과 주차타워의 인·허가등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은 할수없으나 같은 2종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준공된 건축물의 종시설물의 확인은 인·허가기관에 문의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체 선정 관련 문의(종외 시설물)

● **질의**

종외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할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문의

● **질의**

1종 또는 2종 시설물이 아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진단면허 업체에 의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검토 의뢰 기관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의뢰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 현장은 하수관로 현장으로써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안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당 현장은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아닌 관계로 건설안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후 공사 중 추가된 공정이 있어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추가된 공정은 "경강선 BOX구조물 하부 추진공사"입니다.
추가공정의 주요 작업내용은 "강관압입 추진공사(강관압입 D500mm, L=43m)"입니다.
이에 따른 가시설공사는 Sheet Pile로 시공예정이며, 가시설(Sheet pile)공사는
최초안전관리계획서에 펌프장 시공과 관련하여 이미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문) 위 내용과 같이 추가공종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보완작성할 경우 최초 착공 전과 같이 건설안전전문기관의 검토의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말씀하신 변경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우리 공단에, 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보완검토 의뢰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5. 안전관리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문의

● **질의 내용**

이번에 OO맑은물 순환센터 (OO하수처리장)의 정화설비를 거친 배출 하수를 메인 배관에 연결시켜주는 배관 및 지지대 설치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옥내 소형 배관설치공사로서 비계 및 건설기계 사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기계설비공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별표 1] 끝단의 비고 22호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건설공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유선으로 상담해 드린 바와 같이, 문의하신 공사의 2종 시설물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는 도급계약조건, 상기 법령 등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6.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주체 및 해당 공종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가. 1·2종 시설물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일 경우 최종 검토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하는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당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계획의 수립) 제1항 제5호: 천공기(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3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작성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있는 항목 외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당 현장의 공종 중 조경공사, 포장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지붕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외장판넬공사 등은 작성에서 제외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첨 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끝.

● **회신 내용**

가. 질의하신 '가'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기관 지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종 외 시설물은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목차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그 외의 건설공사 추가 여부는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우리 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8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7.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검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질의 내용**

당사에서 시공 중인 OO~OO OO건설 OOOO현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기간 : 2018년 5월 9일 ~ 2023년 10월 29일)

OO~OO OO건설 OOOO공사는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2018년부터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검토,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당초 도급공사(1,400억)이외에 추가공사(45억)로
9월~10월경에 "기존OOO(OO~OO) 철거공사를
"OO~OO OO건설 OOOO공사" 도급에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OOOO(OO~OO)철거공사는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는 아니며
1. 2종 시설물이 아니며 발주청 요청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후
발주청에서 검토를 "CSI"에 의뢰하여 진행 하여야 하는지
발주청 검토나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기존OO선(OO~OO)구간 철거공사"

● **회신 내용**

가. CSI 확인 결과, 기존 'OOOO선 OO~OO OO건설 OOOO OO시설 기타공사(제1차)'는 1종(교량, 터널) 및 2종(교량) 시설물로 확인됩니다. 상기 건설공사에 '기존OO선(OO~OO)구간 철거공사'를 추가하여 변경계약 하는 경우 추가하는 철거공사는 기존 공사(1·2종 시설물)의 부속공사로 보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변경), 검토의뢰 및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승인권자인 발주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 해야 하는 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및 발주청 승인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철거공사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변경)의 검토의뢰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참고로,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의 가항(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나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따라 해당 철거구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정기안전점검(최소 2회 이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9. 취약공종

9. 취약공종

9.1.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타설용 동바리의 취약공종 적용 여부

● 질의 내용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동바리 설치에 따른 합동검토회의 시행 대상 여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취약공종 대상 중 동바리 높이 10m이상 공종에 대하여 취약공종으로 구분하여 관계 전문위원의 합동검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부분은 엘리베이터 상부 기계실 바닥 슬래브 시공을 위한 동바리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문의하신 부분은 동바리 설치 면적과 높이를 비교할 때 합동검토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상세한 부분은 유선 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취약공종

9.2. 합동검토회의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문의

● **질의 내용**

합동검토회의, 취약공종별(고층건물, 굴착, 동바리 및 슬래브, 특수건축물, 특수교량) 회의에 관한 법적근거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립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동검토회의 등은 사고발생이 많은 취약공종에 대해 관리원 내부 원장의 방침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해당 원장의 방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14.5.23.)이후 내부 절차에 의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세부규정을 관리원 내부지침(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지침)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 취약공종

9.3. 안전관리계획서 중 합동검토회의 관련 문의(ILM교량)

● **질의 내용**

거더 런칭 시공 전 합동검토회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중인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최초 제출 시 거더 런칭에 대한 내용의 검토를 받았으며, 해당 검토 의견서에 거더 런칭에 관한 보완 요청이나, 부적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더 런칭 작업을 준비하던 중 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 합동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최초 검토 의견 회신 시 교량 상부공 내용 중 부적합이나 보완 필요 의견은 '캔틸레버 까치발(브라켓형 동바리) 안전성계산서 보완' 1건 이었습니다.

2. 최초 검토 요청 시 안전관리계획서 내 거더 런칭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상기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당 현장에서 거더 런칭 작업 전 합동검토회의를 실시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립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동검토회의 등은 사고발생이 많은 취약공종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내부 원장의 방침을 받아, 내부지침(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지침)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ILM교량은 특수교량으로 위 내부방침에 따라 취약공종에 해당하여 합동검토회의(또는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ILM교량은 거더 런칭 작업뿐만 아니라 ILM교량 전반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대상공종 및 준비자료 작성, 검토비용 등에 관하여는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종보망)에서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CSI 홈페이지 우측 상단 → 알려드립니다 → [안전관리계획서]탭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안내 등)

10. 안전관리비

10. 안전관리비

10.1. 1종, 2종시설물이 없는 공사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비 산출시 적용규정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국가지원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현장 시설물중 터널(L=189, 2차로)이 있으나, 1종,2종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1·2종 시설물도 없습니다. 다만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반경 100m 이내에 가축사육시설이 있음), 터널의 지보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터널 라이닝 폼, 터널의 작업대차) 등이 있어 정기안전점검과 가시설 구조검토를 시행하고 안전관리비에 반영코자 합니다.

1. 이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7조2항에 따라 터널에 대해 "안전점검의 비용계산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별표8 하단의 별도규정인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을 적용한 산출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을 받고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조항입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과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제1항에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별표8]과 같으며, 제5항 및 [별표8] 비고 2호에 따라 [별표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합니다.

다. 따라서 터널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정기점검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터널의 지보공, 복합형 가설구조물 등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제5의2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정기안전점검 및 이에 대한 점검비용을「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라. 다만,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로 지정한다면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요율에 따라 안전점검비용을 산출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비

10.2. 안전점검비용 요율 산정 보간식 계산시 순공사비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1.건축물점검 및 초기점검시 보간식 계산시 총 공사금액의 70%를 순공사비(대략)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나 법규 등 관련비율을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60~70% 정도를 순공사비로 하는데, 순공사비를 총공사금액의 60%로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과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제1항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별표8]과 같으며, 제5항에 따라 [별표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 도급계약서 내 정확한 순공사비 산출이 가능할 경우 해당 순공사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수립을 하여도 무방하나 순공사비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4조에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 하는데 따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검토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 누락여부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8]에 따른 안전점검 요율 적용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 비용 등 안전관리비 '항목별 금액'등은 도급계약 당사자인 건설회사 및 발주자가 과다,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관리비

10.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문의

● **질의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상 잘못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 적정요율이 반영되도록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검토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 누락여부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8]에 따른 안전점검 요율 적용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출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잘못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변경 여부는 해당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관리비

10.4. 도급내역 상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 관리

● **질의 내용**

도급내역 상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 관리 문의 드립니다.

총액계약으로 진행된 시공사 도급계약 내역 상 안전관리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도급계약 내역상 '따로 분리' 되어있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적용절차)

2) 안전관리계획서 상 계상 된 금액을 사용 할 경우 건축사법 현장의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 시 '세금계산서 등 사용근거'를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정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4항

3)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문의사항 1번에 대한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 규칙 제60조에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2번에 대한 답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함으로 현장 감리에게 안전관리비관련 서류를 제출·검토 받아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3번에 대한 답변

현장감리의 벌칙관련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관리비

10.5.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안전점검 계약금액 변경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법령에 따라 인,허가청에서 입찰하여 낙찰받은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준공 시점에 상기 산정방식의 근간이 되는 도급공사비가 당초계약시 기준금액에서 변경이 되는 현장인 경우 건설공사 안전점검비용도 공사비 변경에 따라 증액 혹은 감액되어 정산되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비용은 위 지침에 따라 [별표 8]의 안전점검 대가 요율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보간식을 적용하며,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여 안전점검비용을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공사비가 변경됨에 따라 순공사비, 안전점검비용 또한 변경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안전관리비 추가(증액)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 계상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계약금액이 과다·과소 계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라. 귀 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계약 조건과 유선으로 안내한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여 증액 가능여부를 가늠하여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0. 안전관리비

10.6. 건설공사 안전점검비 사용 관련

● **질의 내용**

본인은 건설공사의 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인으로 건설공사 안전점검비를 계상함에 첨부파일과 같이 2가지 (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받고자합니다.
1(안)은 시공사, 2(안)은 본인의 (안)으로 안전점검업체 선정 시 계약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역서 적용금액은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해당공종(정수장, 배수지)에 맞게 산정되었습니다.

● **회신 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에 "정기안전점검은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 등을 고려 정기안전점검 횟수 및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협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와 하시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점검실시횟수와 관계없이 동 지침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요율에 따른 계상으로 점검비용은 동일하며, 동 지침 제53조에 따라 정산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관리비

10.7.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증액 계상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60조 제1항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안전관리비") 각 호의 7개항목 중 일부항목이 계상비용보다 실적금액 크다면 실비기준으로 매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변경을 하여야하는지, 정산 시 일괄적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 규칙 제60조에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나. 안전관리비 추가(증액)에 관하여는 유선 통화한 바와 같이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 계상에 관한 내용은 있으며, 안전관리 실적에 따라 정산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 승인 후 비용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기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자와 절차, 주기나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계획서에 수립된 내용 변경으로 안전관리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괸라계획서의 안전관리비를 변경하여야하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내용에 변경 없이 안전관리비 정산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변경 계약된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약자간의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는 변경 불필요합니다.

10. 안전관리비

10.8.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기준 문의(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여부)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內 안전관리비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장 감리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여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內 안전관리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시켜야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공사중 주변 피해방지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 공사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공사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목적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즉, 사용 목적(성격)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분되고, 원가산출 방법 또한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둘 다 사용비용은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 규칙 제60조에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0. 안전관리비

10.9.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 **질의 내용**

연면적 39,000㎡인 건축물에 연면적 800㎡짜리 증축공사를 실시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39,800㎡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공사비 및 요율 산정법에 의해 점검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연면적에 따른 요율은 총 연면적인 39,80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되는 구간의 연면적인 800㎡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조항입니다.

나. 건설공사 중 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위 지침 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별표 8] 요율표에 비례식을 적용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하며, 건설공사는 '증축공사'를 의미함에 적용 요율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아닌 증축 연면적에 해당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상하여야합니다.

10. 안전관리비

10.10.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계상 등에 대한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비를 정기안전점검비용 산출식에 따라 계상했을때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로 계상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에 들어있는 정기안전점검비용 그대로 입찰공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조항입니다.

나.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도급내역서, 계약서, 계약조건 등이 수록되지 않아 정확한 순공사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 비용 등 안전관리비 '항목별 금액'은 도급계약 당사자인 건설회사 및 발주자가 과다,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절차 및 입찰공고에 관하여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관리비

10.11. 안전관리비 증액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재검토 시 기존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안전관리비가 증액됩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액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비는 위 지침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 추가(증액)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 계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라. 총액입찰,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내역입찰 조건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검토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검토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청에 질의하거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관리비

10.1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 문의

● **질의 내용**

건진법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2가지 문의 드립니다.

■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산정 관련
1) 시공사에서 발주처(지방공기업)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함.
(EX. 안전관리계획서 설계반영 금액이 5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청구)

2) 아래 지침 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안전관리 계획" 작성에 대한 대가가 불분명하고,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도 없음.

3) 그렇다면, 청구한 금액 전액(1400만원)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설계반영 금액(500만원)만 지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지침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계상은 별표 7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 정기안전점검 대가 산정 관련
1) 건진법 안전관리비 중 정기안전점검 대가 산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7조"에 따름
2) 하지만, 동지침 별표8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엔지니어링 대가를 이용한 자체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3) 시공사에서 그 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발주처에 요구하는 경우, 비용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일부만 지급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비는 위 지침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 추가(증액)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 계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 조건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에서 그 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발주청에 요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을 지급해야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관리비

10.13.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정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당초 정기안전점검 비용 견적은 건축구조물 3회, 초기점검, 동바리점검, 항타항발점검을 모두 합하여 총금액 2천만 원의 견적에 입찰하였습니다.

연면적 14000m2에 총공사비 400억일 경우, 구조물 3회점검, 초기점검 비용 산출을 보간식 적용으로 계산했을 경우 구조물 1회 점검당 천단위 절삭 후 21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출 관련 법령이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비용은 위 지침에 따라 [별표 8]의 안전점검 대가 요율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보간식을 적용하며,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여 안전점검비용을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추가(증액)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 계상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계약금액이 과다·과소 계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계약 조건과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여 증액 가능여부를 가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0. 안전관리비

10.1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문의

● **질의 내용**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38페이지)을 보시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비용'도 건진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발주자나 감리단에서 먼저 지시한 것이 아닌, 시공사에서 현장 안전/품질/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내 안전 모니터링용 CCTV를 설치하였을 경우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현장은 CCTV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토목현장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상태가 아니라, 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안전관리용 CCTV를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및 [별표 7]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서는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용 CCTV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1항제5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도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즉, 안전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용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반영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및 계약변경 관련 법규, 공사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추가 계상 가능여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 정기안전점검

11.1.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점검 질의

● **질의 내용**

높이가 가장 높은 구간의 높이가 약 4,974mm(h1)정도 됩니다. (동바리 설치 구간)
2층 바닥 슬래브 상부면에서 경사지붕 슬래브 최상단까지는 약 5,424mm(h2)정도 됩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이 되어 정기안전점검(2회차)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높이를 의미하므로 거푸집+동바리의 높이가 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안전점검 대상입니다.

나. 질의하여주신 4,974mm구간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사 지붕 슬래브 최상단에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경우 5미터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 안전관리계획서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변경에 관한 질의

● **질의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변경시 발주처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검토의뢰를 해야한다면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변경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의견 통보를 해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3. 예를들어 당초 갱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23년 11월에서 24년 01월로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보완)제출을 시공사에서 감리단 또는 발주처로 언제까지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시기 변경시 CSI상에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정기안전점검 시기 변경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변경신청을 하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1. 건설기계 관련 검진법 점검을 할때에 타워크레인은 대수 마다 점검을 하게끔 기재 되어있는데 항타기, 천공기 관련해서는 대수마다 점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점검을 할 경우 대수마다 1차,2차 두번을 점검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수 상관없이 1차,2차 점검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2]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원은 장비 추가될때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관련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 항타기 및 천공기가 반입될때 추가 되는 장비에 대해 각각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별 안전관리비 및 현장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사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 정기안전점검 횟수 질의 문의

● **질의 내용**

당현장은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으로 역사(2종시설물)2개소, 본선(1종시설물)2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구간 천공기 사용 및 10m이상 굴착공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 1·2종 시설물 4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3회씩 총12회, 천공기 점검 2회씩 8회, 10m이상 굴착공사 점검 2회씩 8회, 총 28회 점검을 실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 :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고, 제31조제1항에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따라서 천공기 사용 및 굴착공사에 따른 점검시기와 점검실시 횟수 및 시기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자 협의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 정기안전점검 완료 일자 기준 문의

● **질의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제5항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점검 완료란 언제를 말하나요?
1. 현장조사 완료일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완료일
3. 그 외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허가 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실제 해당 공종에 대해 점검한 날(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6. 정기안전점검 수행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1. 정기안전점검 수행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해당 현장의 경우 착공이후 정기안전점검 업체 계약 시점이 2021.03.30. 입니다.

3. 그러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06.29.] [국토교통부 고시 2021-194호]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별표1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점검에 대한 점검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고 관련 지침부칙에 확인된 내용은 적용시기가 시행시기 기점으로 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변경 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내용은 변동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타워크레인 인상, 해체 작업의 보고서 제출 기간의 경우 타워크레인 1대 설치현장의 경우 문의사항이 생기지 않겠지만 다수의 타워크레인 현장의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 시점을 최종 마무리 타워크레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점검시점은 각호기별로 각각 인상 시에, 해체 시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또한 문의 드립니다.

4.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당초계약 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 후 진행되야함의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2012년 6월 29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은 건설기계 . 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별표 1]에 건설기계와 가설구조물이 추가되었으며, 그러나 이전의 지침에도 [별표 1] 비고의 단서조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정기안전점검에 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 개정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제4호〈2020.12.14.〉에 규정되어 있고,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92호, 2020.12.14.〉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오니, 계약시점으로 보아서 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하여 정기안전점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은 위 지침 제31조제1항제1호에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점검결과는 해체작업 시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토록 되어있고, 제3호에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7.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건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이란 항목으로 합벽지지대를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하층 벽체 타설 시 현장에서 합벽지지대 설치를 안하고 거푸집과 동바리로 나눠 시공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점검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3.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적혀있는 점검을 안하고자 할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정하여 C.S.I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복합형가설구조물 중 합벽지지대는 일반적인 벽체 거푸집과 같이 양측으로 거푸집 설치하여 벽체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편측 거푸집에 버팀대 지지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의 가설구조물 중 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을 말합니다.

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거푸집과 동바리로 나눠 시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복합형 가설구조물 해당여부에 대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라.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8. 건설기술진흥법-타워크레인점검 문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으로 하여금<이하생략>안전점검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재직인원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해당분야 산업안전, 기계, 전기, 전자 등) 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구분(책임검사원, 검사원)에 관계없이 1명 보유 시 타워크레인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시설보유기준 만족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책임검사원 1명이상, 검사원1명이상(총2명이상)]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6항에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원이 안전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9.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점검 대상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중에 있습니다.

1동 의 2종 시설물인데 부지내 철골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철골주차장의 높이가 50m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별도의 점검이 필요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2종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초기점검시 점검항목에 관하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3]과 [별표 4]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점검항목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건축물편'에 정기안전점검요령과 정밀안전진단 요령, 철골구조의 조사항목 등 참고하시어 실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세부지침은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기술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본적인 조사와 더불어 철골구조의 특성상 부재내력과 접합부 접합상태, 방청상태, 부재 변위여부 조사 등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0. 천공기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 확인

● **질의 내용**

천공기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천공기 제원]

장비 길이	5,700 (mm)	장비 너비	1,950 (mm)
장비 높이	2,500 (mm)	장비 총 중량	4,980 (kg)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시행령 제98조 에 따라 천공기높이가 10m가 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위 공사가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이에따라 천공기 높이가 10미터 미만일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천공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이면서 높이가 10m미터 이상인 천공 장비(건설기계등록증과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기종별표시인 22번으로 등록된 장비)는 정기안전 점검 대상이나, 높이가 10미터 미만일 경우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 **질의 내용**

1. 항타기 1대를 사용하여 지반을 천공 > H빔을 삽입 > 콘크리트 타설순으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 해당 장비에 대해 항타기만 점검을 진행하면 되는지 항타기와 천공기까지 2가지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계의 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문의에 대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상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등록증의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2. PBD(Plastic Board Drain) 장비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5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저희는 연약지반 PBD공종과 관련하여 장비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입 예정 장비 3대의 등록증 갑지를 첨부합니다.

첨부된 장비에 대해 상기 시행령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계의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장비 등록증에 해당 장비의 분류가 천공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상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등록증의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3.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여부 문의(보도육교 (L=96M(58+38 2경간)

● **질의 내용**

민간공사로서 보도육교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도면 중 2경간 으로서 L=96M(58+38 2경간)인 보도 육교 입니다.

일반 교량일 경우 1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시공 중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인데
당 시설물은 보도육교 입니다.

1.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시공중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
2. 아니면 기타시설물에 해당하여 시공중 정기안전검검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면 해당 공사는 1·2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보도육교 공사이며 종외 시설물로 판별됩니다.

나. 종외 시설물 일지라도 현장의 파일, 항타, 가설벤트 시공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다. 또한 해당 현장 공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교량 공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의 교량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제외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4. 정기점검업체 선정방법 문의

● **질의 내용**

건설업체가 보행교 설치중에 항타, 항발기사용, 가설벤트, 10m 이상 안전발판사용등이 시공중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서 시공중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업체를 선정 하고자 합니다.

1. 민간공사인데 정기안전점검 업체는 무조건 조달청 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
2. 인·허가 기관에서 추천한 업체를 선정 가능한지 문의
3. 민간공사임에 따른 시공사에서 선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은 건설안전점검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인·허가기관에서 정해준 정기 점검업체에서 안전점검 기관을 지정받았을 경우 조달청 입찰과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서 정기안전 점검을 수행하시면 될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5. 초기점검 용역시 상태평가 필수여부 문의

● **질의 내용**

초기점검용역시 상태평가 필수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필수가 아닐시 등급은 무엇을 참조해서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초기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것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3]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에 따라 진행하시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철근 배근 간격등의 시험결과를 추정한 등급을 첨부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준공 후의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FMS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산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6. 정기안전점검 횟수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도로교량 정기안전점검 계약 후 실시 중인 현장입니다.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의 정기안전점검이 피어별 2회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둥폼 1회 코핑폼 1회씩 점검을 진행해야 할지 기둥폼만 2회를 점검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을 참고하시면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 단계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 :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피어별 점검횟수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7. 블루모듈폼 정기안전점검 대상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현장에 높이가 8m정도 되는 블루폼이 기둥에 사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블루폼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인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높이 8미터의 지하층 기둥 타설을 위한 거푸집(블루폼)을 사용시 5m이상 거푸집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18.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질의

● **질의 내용**

노인복지관 설치사업(리모델링 공사이나 일부 증축 존재, 연면적 : 5,000㎡초과)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시행한 결과, 계약 체결하여 진행중인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나 그에 따른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라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나 안전점검 이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준공 이전에 안전점검을 이행한다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정기안전점검 등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공사는 증축공사를 포함하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에 정기안전점검은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해당현장이 종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서작성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현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정기안점검검 미수행에 따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15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벌점,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며 준공전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함으로 늦었지만 수행하지 않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시정명령을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 1항 4호(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확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안전점검 종류 및 절차)를 위반한 해당 현장에 대하여 아래의 건설기술 진흥법을 참고하시어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처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1]과태료의 부과기준

11. 정기안전점검

11.19. 초기점검 계약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터널 초기점검을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초기점검 기본대가 이외의 추가조사(외관망도조사, gpr탐사등)가 필요하여 시공사와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gpr탐사를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저희 업체는 그 이외의 것들만 수행시키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기점검을 하는 업체가 2개의 업체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발주처가 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직접 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했던 건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에 계약했던 건)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 기관 선정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을 하여야 한다고는 정의되어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은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에 설명되어있는 바와같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나. 따라서 안전진단업체 선정 관련 문의사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0. 거푸집 끊어치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저희공사에 교량 설치가 있습니다. 교량 교대 높이가 7m인데, 거푸집 높이를 4m 설치하여 레미콘 타설 후 거푸집해체하고 다시 거푸집을 3m 설치하여 시공을 하려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거푸집설치 5m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푸집를 4m,3m로 설치할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해주신 현장은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가 점검대상이며 동바리 없이 거푸집만 있는 경우도 점검대상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의 높이 또는 거푸집의 단일 규격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라. 또한, 존치된 1차 거푸집 위로 연결하여 2차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설구조물로서, 이에 대한 전도, 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조체의 거푸집 높이를 합산하여 거푸집 높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마. 따라서 5미터 이상의 기둥, 벽체 거푸집을 끊어치기 할 경우에도 하단부의 거푸집이 존치되어 있다면 거푸집 총 높이에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도면에 끊어치기에 대한 구체적인 높이가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1. 초기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시기

● **질의 내용**

철도 초기점검 현장입니다. 여러 공구 중 저희 공구는 공사가 완료되어 철수 예정이며, 시공사는 이후 일정은 옆 공구에 이관할 생각입니다.

발주처에서는 노선 모든 공구가 완료되면 일괄 재하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공구는 준공이 완료되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이 완료되지 않아 종합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 35조 2항에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타 공구 공사 지연으로 인해 종합보고서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종합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최종 완료 후 종합고서를 작성한다.
2.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부분은 빼고 작성하고 추후 수정 보완한다.

어떻게 옳은 판단일지 몰라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당질의에 대하여 유선상 통화를 진행하였으며 당 현장은 전체 공구에 하나의 인·허가가 등록되어있는 현장으로 전체 공구 준공시 관련 종합보고서를 등록하여 주실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종합보고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2. 옹벽시공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여부

● **질의 내용**

현장 정기안전점검 대상여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장 내 건축물 주변 에 대한 옹벽이 기초 포함 높이(기초 =65cm, 옹벽높이=5.85m) 약 6.5m이며 길이는 200m 정도가 됩니다.

단순 시설물특별법에 의하면 높이가 5m이상이며 길이가 100m 이상인 옹벽은 2종시설물에 포함되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옹벽 시공전 물은 다 양수후 시공후 물속에 약2.1m가 잠겨있을 예정이며, 옹벽 저면은 1.7m로 지표면에서 노출되는 면은 4.95m입니다. 이 경우 정기안전 점검 대상일까요?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에 의해서 제1·2종 시설물의 구분을 위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옹벽이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1·2종시설물에 해당시 옹벽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해당 옹벽 시설물이 1·2종 시설물 여부에 해당하는지 관하여서는 확인이 어려운바 관련 협의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와 하시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안전점검 실시시기)제1항제2호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1],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3. 장비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질의

● **질의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에 따르면
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도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트파일 항타시
높이가 10m 이상인 바이브로햄머도 항타기 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는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장비제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질의에 대해 유선상 통화를 진행하였으며 장비가 오거를 달아서 항타 작업을 하는 기중기 등 건설기계등록증 상 천공기(22) 또는 항타 및 항발기(23)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해당 건설공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정기안전점검(최소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4. 안전관리비 사용 시 정기점검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에 대해 작성이 되어야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보면
건축물의 경우 기초공사 시공시/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총 3회를 정기점검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2종 시설물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3회를 실시하는데
종외 시설물은 정기점검3회를 따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외 시설물도 똑같은 건축물일경우에는 기초공사 시공시/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종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다가 안되어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의미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1·2종 시설물의 범위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 1]의 5호 건축물에 1.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건축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정기안전점검(3회) 및 1.2종 시설물의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종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4호(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정기안전점검(3회)을 실시해야 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5. 해체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계획

● **질의 내용**

검토내용 중

다. 현장운영계획 보완이 맞지않아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당현장은 9층 건축물로 해체공사에 해당되어 유지.점검이 해당되는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안전점검은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기재된 31m이상 비계 점검만 진행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다시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인천 OO동 현장은 2종 시설물으로 검토 의뢰가 진행 되었으며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나.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1항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참조하시면 건축물-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에 해당됨으로 해체공사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2회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인천 OO동 현장(최초제출)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결과 최초제출한 '1.3_총괄_안전관리계획-OO산업 (주)-다. 현장운영계획' 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현장의 경우 건축물 리모델링또는 해체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 가설구조물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정기안전점검 2회를 수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6. 건설중 안전점검에서 초기점검 대상여부 질의

● **질의 내용**

제방의 초기점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기 설치된 2종 제방에서 호안에 대한 재정비만 이루어지는 공사일 경우 초기점검 대상인가요? (만약 초기점검 대상이면 호안만 해당되는지, 제방 전체가 해당되는지요)

2. 기 설치된 2종 제방 중 제체에 대하여 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초기점검 대상인가요? (만약 초기점검 대상이면 보축이 이루어지는 구간연장만 해당되는지, 제방 전체가 해당되는지요)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공사는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포함)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건설공사가 기존 2종 시설물인 제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지관리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부분이 2종 시설물(국가하천의 제방)에 해당하므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유지관리공사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유지관리공사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7. 종시설물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대수선 공사로 금번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1) 건물 1동의 1층 마감재, 누름콘크리트 해체(구조물 해체는 없음)
2) 건물 2동인 철골 주차장의 신축공사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공사 모두 종외 시설물이며 건물2동만 항타기사용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수선 인·허가를 받을 때 공장 전체 10개동에 대한 연면적 78,402.23m2로 받은 상황입니다.

1,2동은 종외 시설물이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점검내용에 1·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정기점검(기초공사시,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도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종외 시설물의 경우에도「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8. 추가공사(철거공사)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행여부 문의

● **질의 내용**

당사에서 시공 중인 OO~OO OO건설 OOOO현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기간 : 2018년 5월 9일 ~ 2023년 10월 29일)
OO~OO OO건설 OOOO공사는 10월말 준공예정으로 2018년부터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검토,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당초 도급공사(1,400억)이외에 추가공사(45억)로9월~10월경에 "기존OOOO(OO~OO) OO공사를 "OO~OO OO건설 OOOO공사" 도급에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OOOO(OO~OO)OO공사는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는 아니며1. 2종 시설물이 아니며 발주청 요청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후 발주청에서 검토를 "CSI"에 의뢰하여 진행 하여야 하는지
발주청 검토나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기존OOOO(OO~OO)구간 철거공사"

다. 참고로,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의 가항(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나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따라 해당 철거구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정기안전점검(최소 2회 이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 OOOO(OO~OO)철거는 단순 기존 구조물 과 궤도선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로
(신규 구조물이 없음)
1) 교량 중력식 4개소 (L=52.4m, 22.4m, 11.04m, 14.04m)
2) 암거 2개소(통로박스) (L=3.0m, 4.0m)
철거입니다

기존 OOOO(OO~OO) OO공사는
단순 OO공사 (와이어쏘, 브레이커, 이동식크레인)에 따른 작업으로
답변받은 내용 중

1) 정기 안전점검을 2회이상 실시해야 하는지?
2) 신규 구조물이 없는 단순 철거공사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수행시 점검 내용은 무엇인지?

● **회신 내용**

가.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공사건에 추가공사를 진행할경우(1 · 2종 및 종외 시설물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을 통하여 추가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장비동선, 해체 순서에 따른 해체 시공계획 수립 등을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의하여주신 내용(기존OOOO OO공사)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정기안전점검은 수행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철거공사 수행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관련내용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29. 정기안전점검 대상 항목 중 복합가설시설물 및 가설교량에 관한 질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상 정기안전점검 대상 항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상 항목 중 가설구조물(시행령 제101조의 2) 항목 중 '현장조립 복합 가설구조물' 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에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동안 거주민 통행을 위한 가설 교량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가설 교량이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가설교량 자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설교량 설치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 가설교량 설치시 천공기 또는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여 파일(H파일, 강관파일 등)을 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공종이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의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5호의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가설교량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상기 법령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0. 건설기술진흥법상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에 계획돼 있었던 10m 이상 천공기 1대를 현장 반입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천공작업이 천공기 1대로는 공기를 맞출수가 없어서 오거크레인 1대를 추가로 반입하여 천공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오거크레인은 건설기계등록증상에 등록번호 "07" 기중기로 등록돼있습니다. 크레인 붐대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고 천공 작업을 한다고 해도 건설기계등록에 천공기 또는 항타기(등록번호 "22", "23")가 아니므로 점검을 안해도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현장과 조율 하여 점검을 한다는 등의 두리뭉실한 답변 말고 법적으로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중기의 형식은 JA250C 입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자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등록증의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장비제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하신 장비(오거 크레인)는, 오거를 달아서 천공작업을 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상 기중기(07)로 천공기(22) 또는 항타 및 항발기(23)가 아니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의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헤딩 장비 및 공종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상기 법령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1. 시스템비계 높이 10-20미터 내외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기존 OOOO선 OO교량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된 공사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기존교량의 교량받침만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과업에는 지표면에서 작업자의 고소작업을 위해 높이 10-20미터 내외의
시스템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 31미터 이하)
시스템비계의 설치목적은 사람이 고소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이며, 별도의 거푸집 용도로 활용되진 않습니다.

상기에 설명드린 시스템비계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및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문의하신 지표면에서부터 설치하여 높이 약 10~20m 내외의 작업발판 용도의 시스템 비계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스템 비계의 구조 안전성 검토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는 문구는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공사는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제98조제1항제1호 한정)이며, 유지관리공사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2. 건설현장 안전점검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OO군 발주공사 OOO OOO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안전점검 관련 질의입니다

[당 현장 점검대상]
1. 항타기 및 항발기 -> 4회 (2개소*2회)
2. 높이 5m이상 동바리 -> 2회 (1개소*2회)
3.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20회 (10개소*2회)
점검대상의 구조물이 중복되므로 10개소 26회 입니다

그러나 설계 반영된 안전 점검비로 6개소 12회만 안전점검을 시행할수 있어 추가 점검분 14회의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증가되는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실정보고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도급내역에 반영된 안전점검비에 맞추어 대표지점을 선별하여 당초 6개소 12회로(개소당 1차,2차)안전점검을 해도 되는지의 관련 법규및 규정을 문의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에 정기안전점검은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의 횟수 조정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라며, 정기안전점검 횟수 증가 및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액은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사항에 해당합니다.

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하므로, 도급계약조건, 발주청 요구 및 귀책사유 여부 등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1. 공사기간의 연장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11. 정기안전점검

11.3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 중

4의3.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은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일법령 4항이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4의3.항 역시 동력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작,조립, 설치하는 갱폼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공사를 위해 하천부 가설교량을 설치하는 과업을 진행중입니다.
가설교량도 현장에서 제작, 조립,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지만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조물은 아니기에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4의3항이 4항과 개별법령으로 정기안전점검이 대상이될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므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가설교량 자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설교량 설치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및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 가설교량 설치시 천공기 또는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여 파일(H파일, 강관파일 등)을 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공종이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에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SWC, ACS, RCS, WORKING PLATFORM, 건축물 외장재 및 사장교·현수교·주탑 등의 외부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작업발판 등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3)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FCM, ILM, MSS 등

11. 정기안전점검

11.3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의 제1항 4의2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내진보강을 위해 운행중인 기존교량의 받침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에는 높이 10-20미터 내외의 시스템 비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
- 1항. 높이31미터 이상인 비계와
4의2항.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은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4항의 경우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에 해당되는 경우로 건축분야의 갱폼과 같은 시설물이 해당된다는
의견과 작업발판이 일체화 되어있는 거푸집이므로 시스템비계도 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 높이 10미터 이상 시스템비계가 4의2항의 사항으로 분류되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가설구조물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SWC, ACS, RCS, WORKING PLATFORM, 건축물 외장재 및 사장교·현수교·주탑 등의 외부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작업발판 등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3)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FCM, ILM, MSS 등

나. 다만,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의 가항(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나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 관련 문의 (1)

● **질의 내용**

관급(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문의사항]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관계전문가로부터 확인 및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①높이가 5미터 이상인 벽체거푸집과 동바리(슬라브)를 각각 따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②높이가 5미터 이상일때 슬라브거푸집에 대한 동바리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는 말 그대로 거푸집 높이와 동바리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슬래브 또는 보 하부 거푸집 또는 벽체거푸집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슬래브의 높이 즉 거푸집 및 동바리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와 벽체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모두 관계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 확인) 관련 문의 (2)

● **질의 내용**

관급(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해당조건 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설계시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고 설계가 승인.완료되었습니다.

낙찰받은 시공사가 설계도서 그대로 시공을 실시한다면, 설계시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승인받은 동일한 관련서류를 그대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렇지않다면 또다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관련하여 대상 가설구조물과 관계전문가의 자격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제1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는 건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이며,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설계자가 아닌 시행령 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가로부터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7.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점검 시 간단한 부재 변위 조사 관련

● **질의 내용**

구조체 관련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3]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중 ③ 기본조사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에서 간단한 측정장비로 수평계, 다림추, 측량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간단한 측정 장비가 FMS에 등재된 장비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3. FMS 등재된 장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인지요.

4. 구조체 정기안전점검 진행 시 지하주차장은 비파괴조사(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조사)를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5. 구조체 정기안전점검 진행시 지하주차장 비파괴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관련 규정은 어떤 것인지요.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진단측정 장비와 관련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5]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2]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별표 3]에 ②기본조사 항목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는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철근탐사는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8. 정기안전점검 시기 경과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적정성 여부를 지정 기관에서 받은 현장임. (안전관리계획서 상 항타 및 항발기 관련 1,2차, 높이가 5미터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1,2차가 정기 안전점검 항목에 해당 4회 계획되어 있음)
2. 인·허가 청에 착공계를 접수 착공신고필증(5/26일)을 득하고
3. 인·허가청 담당자에게 정기안전점검 지정기관 지정하여 줄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4.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 17일이 지나 지정기관 지정을 근거할 공문을 접수 하라는 지시로 공문을 접수(6/12일)
5. 상기 기간동안 현장에서는 항타시공이 감리자의 감리하에 안전하게 시공이 끝났고(6/7-6/19일)
6. 이 후 정기안전 점검 지정기관이 선정 통보 (6/27일)됨
7. 이러한 경우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한다고 되어 있으며,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는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업무내용 외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지연 등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미이행 후속조치 절차는 소관 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39. 정기안전점검에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건진법에 의거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

토목, 건축 분야에 대한 분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2]를 참조하면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에 대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유무, 직무분야 및 자격유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시특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2]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0.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문의(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질의 내용**

거푸집 및 시스템 동바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벽체 거푸집이 5m이상일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 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정기안전점검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거푸집 및 동바리 5미터 이상은 말 그대로 거푸집 높이와 동바리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됨으로 정기안전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1.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계획 변경 문의

● **질의 내용**

정기안전점검 실시항목 삭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의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삭제 예정)

(최초) 정기안전점검 실시항목 작성시, 당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항목 모두 추가하여 작성,
(이후) 흙막이 도면 확인 및 비 합벽으로 진행 및 시공

그러므로 당 현장은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항목이 해당하지 않아 삭제 예정

[문의사항]
해당 항목 삭제를 하려고하는데 CSI 시스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업로드 승인 및 정기안전점검 항목 변경만 하면 될까요? 또는 추가적 정기안전 점검 항목 삭제 관련한 의견서가 필요할까요?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공종의 착공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 당현장 복합가설구조물 시공 계획이었으나 변경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에서 정기안전점검 실시항목 삭제 시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 및 실정보고서, 관련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본문에 첨부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제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2.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차수 및 실시 시기 문의

● **질의 내용**

타워크레인 점검시기와 관련 문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타워크레인 점검시기가
[1회차 -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전, 2회차 - 상승작업 시] 로 되어있고
1회차 점검은 완료, 2회차 인상 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인상 관련해서 개정된 일자(2020.12.14) 부터 인상 시가 적용되어
[1회차 - 설치 시, 2회차 - 인상 시, 3회차 - 해체 시]로 바뀐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장의 사업승인일(2020.09)이 개정일(2020.12.14) 이전이면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점검시기대로
2회차 - 인상 시만 점검하고 해체는 점검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개정 법에 의한 점검시기인 2회차 인상, 3회차 해체로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점검시기를 변경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제4호의 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 개정 규정은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92호, 2020.12.14.〉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귀 현장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차수 및 실시 시기는 상기 가항 및 나항을 기준으로 사업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3.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나와있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항타기사용 공사+2m이상의 흙막이 가시설

+5m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가 해당이 되어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는

현장인데 수문과 제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문과 제방이 1·2종 시설물에 포함이 안되지만

정기안전점검계획을 수문과 제방에대하여 각각 세워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에 따라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1)국가 하천의 배수펌프장, 2)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되니, 대상 시설물의 1·2종 시설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배수펌프장은 빗물펌프장을 포함하며,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일 경우 배수펌프장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수펌프장과 수문을 하나의 시설물로 보고 정기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수문 및 제방의 정기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4. 발주청이 지정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문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발주처 및 인·허가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서 항목 중의 안전점검계획 수립에서 안전점점검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주처와 협의가 된다면 안전점검 계획 수립 없이 자체 안전점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대상을 지정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의 하단에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최소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5.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건설용 리프트)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상 정기안전점검 대상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세부공종안전관리계획 - 가설공사 중 건설용 리프트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 확인 요청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중 건설용 리프트 관련 필수 작성/제출 항목인지 여부 확인 요청

● **회신 내용**

가.「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기계 및 건설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령 제101조의2의 가설구조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즉,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다. 참고로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부서에서는 ‘리프트’에 대하여 타 기관 승인검사 및 중복검토 등으로 검토업무 간소화 조치에 따라 검토항목에서 제외하여 리프트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22년말 제작 배포중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CSI>알려드립니다>안전관리계획서에서 열람 가능)에 ‘리프트’를 작성항목에서도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6.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조정 문의

● **질의 내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기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 계획되어 있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의 경우 1차 점검시기는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미지정되어 있지만 1차 점검시기(1차점검시기는 1단 지보공 설치 완료시, 2차점검 시기는 최하단 지보공 설치완료 말기단계시, 2021.11.12. 질의회신 답변)인 1단 지보공까지는 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미지정 상태이면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 완료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의 1차 점검시기인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라는 문구 그대로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 후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시면 되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장 여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조정 등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7.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 **질의 내용**

100미터 이상인 교량과 지방하천 수문이 대상입니다

2종시설물이 2가지라도 초기점검은 1회만 하면 되나요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제12호에 따른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으며,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초기점검 또한 구조물별(1·2종 시설물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8.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 공사에도 해당 공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교량 내진 성능 보강공사 라는 실시설계상의 이유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서 애기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현장이나 발주처의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건진법 시행령 98조 제1항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도 같이 실시해야 하는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하는 의무대상 건설공사가 아닌, 동조항 제6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즉,「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5호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는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49.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점검비용 문의

● **질의 내용**

정기안전점검 시 적용 대가 요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현장 위치는 OO시 OO OO동 OOOO-OO OOO 이라는 OO이며 설치 구조물은 교량(30m), 수문(1개소) 이고 배수문이 관급 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으로 정기안전점검 시 당 현장에 설치되는 구조물(교량, 수문)은 3종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시행 횟수(1~5회)로 안전 점검을 산정하며 대가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혹은 이와 관계없이 대가 요율을 산정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기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이외의 정기안전점검은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하는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동조항 제6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만약,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을 하신다면 유선 안내한 바와 같이 안전점검 및 점검비용은 위 지침 [별표 1] 및 [별표 8]을 참고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귀하께서 '3종시설물'에 해당여부는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3종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0.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관련 종합보고서 제출여부 등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가압장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상 정기안전점검은 2종 가압장구조물과 기타공정(항타,2M지보공, 5M이상 거푸집)이 해당되는 현장이나, 당 현장에서는 공사에 따른 별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현재 진행하여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된 공정말기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안전점검은 가압장구조물에 대한 초기안전점검이 진행가능한 상태이나, 이에 따른 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자료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1. 이에 따른 가압장 시설물 FMS 등록을 위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외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정기안전점검시기가 지나 현장점검 자료가 어려운 상태로 현장에서 보유한 시공 및검측자료, 품질,안전자료 확인을 통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3. 당 현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현장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미실시한 완료된 구조물에 대한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를 위하여 FMS 등록가능한 방법 및 지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현재 귀 현장은 안전전문 진단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는 각 차수별 정기안전점검의 내용이 포함되어 정리된 보고서를 뜻하므로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된 종합보고서의 작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한 초기 안전점검은 실시 가능하므로 해당내용은 CSI 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탭에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FMS 제출 관련사항은 시설성능관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1.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횟수 문의

● **질의 내용**

기존 교량에 보도부를 신설확장하여 건설진흥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건설진흥법에 따라 2회차(하부공 완료시) 점검을 실시해야하는 상황이나 하부구조가 강관파일로 시공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회차 점검(하부공 완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2회차 점검을 생략하고 3회차 점검을 실시하여도 되는지(상부공은 RC구조로 완료 후 실시예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안전점검 실시시기)제1항제2호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에 대한 협의는 승인권자인 발주청과 하시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항목에 관하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 및 별표 3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점검항목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각 시설물편 중 정기안전점검요령과 정밀안전진단 요령, 철골구조의 조사항목 등 참고하시어 실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세부지침은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기술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본적인 조사와 더불어 철골조의 특성상 부재내력과 접합부 접합상태, 방청상태, 부재 변위여부 조사 등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2.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문의(지방상수도 이설 공사 및 우수관 공사)

● **질의 내용**

지방상수도 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지방도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지방상수도 이설공사 (D1350MM 연장 L=165M) 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절식 흙막이 지보공(ts판넬) 에 관련하여 정기안전점검이 2회 예정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우수관 공사에도 조절식 흙막이 지보공(ts판넬)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설치구간은 (109m, 79m) 2구간으로 나눠서 설치예정인데 이부분에서도 정기안전점검을 해야되지 않느냐에 대해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2m이상 흙막이지보공 정기안전점검 대상이지만 점검비용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상수도 165m 구간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설치시 1회, 해체시 1회 에서 총2회 예정인데 이번에 우수공사에 관련해서 109m, 79m 구간에 대해서도 총2회 2개소 해서 4회 실시해서 점검비용을 책정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흙막이지보공을 상수도와 우수관에 설치 되는것을 전체를 하나로 봐서 2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안전점검 실시시기) 제1항제2호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나. 즉, 원칙은 총4회 실시하여야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시횟수에 대한 협의는 승인권자인 발주청과 하시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3. 정기안전점검 관련 문의(터널 지보공)

● **질의 내용**

터널 지보공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공법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터널 굴착 시 숏크리트, 락볼트, 스틸리브 등이 모두 터널 지보공법에 해당하나, 건진법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 중 '터널 지보공'은 터널 지보공법 중 터널 원지반 붕락위험이 가장 큰 구간에 설치되는 지보공인 스틸 리버(H형강, 레티스 거더, 강관파이프 등)가 적용되는 단면부터 터널 지보공으로 하고 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4.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문의(상수도이설공사(지방상수도))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지방도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저의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인 D1350MM 연장 L=165M 상수도이설공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는 2종시설물이므로 안전점검 대상이다. 혹은 일부 부간 이설이니 점검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하며,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구조물별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 귀 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5. 정기안전점검 관련 문의(슬러리월 공법)

● **질의 내용**

슬러리월 공법을 적용한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관련 문의입니다.
공종의 초기단계와 완료단계가 명확히 구분하기 쉬운 H-PILE과 띠장 이용 현장과 달리 슬러리월 공법 같은 경우, 실시시기를 선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진단업체의 경우 실시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에 정기안전점검은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흙막이 시설인 슬러리월 공법 적용 장비는 천공장비에 해당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서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천공기 사용공사로 1차(최초 천공 작업시), 2차(천공 자업 말기단계시)에 해당합니다.

다. 그리고 흙막이 지보공은 위 지침 [별표1]에 따라 흙막이(슬러리월)에 지보공을 설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와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로 되어 있어 지보공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6.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한 문의(Top-Down 공법)

● **질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시기 별표1과 관련하여,
Top-Down 공법 적용 현장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시기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Top-Down 공법 적용시 기초 검측 시기가 되면, 2차 점검시기(구조체 초중기)가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점검 시기 적용을 어떻해 해야 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Top-Down 공법 특성에 맞게 초기(바닥슬래브), 중기(기초바닥(이 시점이면 일반적으로 구조체 중기에 해당)), 말기(구조체 말기)에 진행하면 일반적인 Top-Down 공정상 적절해 보이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기관에 문의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7. 정기안전점검 업체선정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흙막이 가시설 관련 정기안전점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정기안전점검 업체선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8. 정기안전점검 대상 문의(합벽데크)

● **질의 내용**

현장 공사 중 공법이 변경되어 합벽지지대에서 합벽데크로 변경 시공하여야하는데 정기안전점검(현장 조립형 복합가설구조물)에 대하여 합벽데크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굼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별표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합벽데크 관련 정기안전점검은 현장조립 복합 가설구조물에 해당될시 (1차)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2차)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시에 발주청 또는 인.허기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59.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문의(가설장비 추가에 따른)

● **질의 내용**

계약 내용 중에 천공기 2회가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1회차에 천공기 1대가 투입되어 작업 진행 중이였으며,
추후 한대가 더 추가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 1개월 뒤 1대 더 투입되어 원래 있던 장비와 같이
총 2대로 작업 진행 중에 2회 점검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천공기 점검 관련 내용을 보면 초,중기단계 및 말기단계시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말기 단계를 장비 반출시 점검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진행한 것처럼 한대가 더 투입되었을경우 진행해도 되는지, 만약 아니라면 천공기 1회차를 더 추가해서 총 3회 점검(보고서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천공기가 10대가 투입 예정이여도 보고서는 2회차만 나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번관리계획의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나. 질의하신 천공기 관련 정기안전점검은 천공기 별 (1차) 최초 천공 작업시, (2차) 천공작업 말기 단계시 기준으로 시행하시고 추가 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기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60. 정기안전점검 항목 관련

● **질의 내용**

1. 정기안전점검 항목 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데크슬라브에 철골 보 구조인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코어(RC구조)의 부분의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2) 대형거푸집(유로폼)을 사용하는 현장의 대형거푸집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3) 대형거푸집(알폼)을 사용하는 현장의 대형거푸집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위의 항목들이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합벽지지대 설치시 하부지지 시스템동바리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1)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에 동바리 5m를 포함하여 점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과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각각의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 정기안전점검 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문구 대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슬래브 또는 보 하부 거푸집 또는 벽체거푸집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슬래브의 높이 즉 거푸집 및 동바리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와 벽체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나. 합벽지지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가설구조물에 해당하며, 이때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동바리까지 포함하여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수행하며, 복합형 가설구조물에 해당합니다.

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고, 제31조제1항에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합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61. 타워크레인 등 정기안전점검 적용기준 문의(입찰공고 2020.12.14. 이전 현장)

● **질의 내용**

[문의사항]

1. 해당 현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입찰공고가 2020.12.14. 이전 현장에 해당되어 타워크레인 점검 시기 변경 및 점검자격 강화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대상으로는 해당되는 건설공사로써 고시 개정된 2021.6.29.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해당 규정 변경 후 해당되는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기별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혼돈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질의하신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14)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청이 발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에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 타원크레인 인상 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로 정기안전점검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시기는 시행규칙 시행일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 :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고, 제31조제1항에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62. 초기점검 실시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별표3, 별표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2022.09.2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9(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에 근거하여 건설 중 초기점검 실시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 에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9 정밀안전점검 과업 내용 중 구조안전성 평가는 선택 과업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3, 별표4에서 제시한 추가조사 항목 중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2.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별도의 대가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2항]의 “초기점검에는 별표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3의 추가조사 항목(구조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구조안전성 평가 시 대가 산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8항]의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안전점검

11.63.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문의

● **질의 내용**

저희 현장은 공사계획에 따라 천공기 반입/반출이 동일장비로 3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정기안전점검 횟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안) 정기안전점검 횟수를 3번*2회(초기, 말기) = 6회 진행

2안) 정기안전점검 횟수를 천공기 장비 초기반입시 3번*1회 + 말기 1회 = 총 4회 진행
- 사유 : 천공기의 작업 말기에는 단순히 장비를 철거후 반출하는 작업으로 정기안전점검이 필요없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천공기 관련 정기안전점검은 (1차) 최초 천공 작업 시, (2차) 천공작업 말기 단계 시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기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12.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12.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12.1. “안전점검 완료 후 제출”에서 완료 후의 정확한 시점 질의

● **질의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4항에 따르면 "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점검 완료 후"의 정확한 시기 및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1. "안전점검 완료 후"의 의미가 시기상으로 (각 공정별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완료된 후)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 2. 5항에 따르면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 각각의 공정별 안전점검 보고서가 아닌 (종합보고서)만 31조 4항,5항의 시기에 맞추어 시공자가 제출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점검보고서의 제출은 각 공정의 차수점검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점검시기가 비슷한 타 공종과 연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종합보고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12.2. 안전점검보고서 제출 대상 문의(개 · 보수공사)

● **질의 내용**

OOOO공사 OOOO지사 OOOO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 중에 기존 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 초에 전문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를 CSI에 제출하려 하다가
신설공사가 아닌 개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점검보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
안전점검보고서만 따로 제출하는 메뉴도 없고
자연히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에 안전점검보고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대상 현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의 결과보고서의 제출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12.3.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CSI 내 등록) 기한 문의

● **질의 내용**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결과보고서 등록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몇일 안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12.4.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의 사항
1. 일반적으로 보고서 3~5부를 시공사에만 제출하였는데, 시공사에만 제출하여도 되는지?
2. 아니면 위 조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발주자, 인·허가기관, 시공사에 각각 결과 통보를 해야 하는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 시공사 -> 감리 -> 발주자 순으로 보고가 진행되는데, 공사 기간이 길고 점검 횟수가 많을 경우 감리에서 발주자에게 결과 보고를 1년 단위로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4항에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별표1]에 따라 점검차수별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13. 기타

13.1. 건설공사현장의 동절기 안전점검의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1. 건설공사현장의 동절기 안전점검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제1항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인 · 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3. 기타

13.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의 건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시공사 측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의 시설물이 2종으로 분류되고
본 공사의 신설교량중 100미터 이상의 교량이 있어 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를 맡겼는데

도로법 제 10조에 의거 도로의 종류는 지방도나 시도, 군도 및 구도에 해당되며, 본 공사의 교량은 무명교 4EA와 OO교가 있으며 무명교의 관리주체는 확인이 불가하며 OO교의 경우도 군도에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질의. 1. 교량 신설공사의 경우 도로의 종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교량 신설공사 완료 후 관리주체가 군청이 되더라도 2종 시설물에 해당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에 도로교량에 대한 종별 구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표 하단 비고 제1호에 “도로”란「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도로법」10조에 의거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 「도로법」외 도로는「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에 의거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 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해당 도로의 도로의 종류 및 등급 확인은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시점에서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항에 의거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기타

13.3. 화재감시자 인건비 관련 질의(1)

● **질의 내용**

저희 회사 교량현장에 용접작업 중에 교량 하부에 갈대숲이 있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소화기와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화재 발생시 즉각 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설진흥법 안전관리비로 화재감시자에 대한 인건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공사중 주변 피해방지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 공사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공사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목적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귀 현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중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7] 제3호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기타

13.4. 화재감시자 인건비 관련 질의(2)

● 질의 내용

1. 저희 현장에는 건설사규정상 고소작업(테이블리프트작업포함) 및 화기작업시 신호수 및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수 및 화기감시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되지않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청구되지않는다면 저희 공사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민간공사 특성상 공사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계약되어있습니다. 이런실정이다보니 작업공정마다 신호수 및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워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근로자 안전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건비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게 현실입니다.

하여 모든 공정에서 신호수 및 화기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공사중 주변 피해방지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 공사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공사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목적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신호수의 경우 신호수의 목적(성격)에 따라 외부 교통안전 등의 목적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사장 내 근로자를 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청구 가능하나, 공사 효율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사용이 불가합니다. 화기감시자 또한 신호수처럼 배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용접공사의 경우 공사내역에 화기감시자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합니다.

다. 현장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기관인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5.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승인 기일

● **질의 내용**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승인에 대해 처리 기간 및 승인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를 의뢰한 날부터 15일(근무일 기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결과 통보 기한 고려)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 (참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주체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며, 결과 통보 기한은 20일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3. 기타

13.6.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설계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할 수 있는 대상인 공사입니다.

1. CSI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등재하고 싶은데 설계안전성검토를 받지않는 사업인데 등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신규작성 시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리인 이름이 검색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안전관리계획서 등록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 탭의 소개 및 메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 신규작성에 따른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이름이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CSI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회원 가입 후 검색)

13. 기타

13.7.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변경가능여부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용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최초 작성 및 검토 후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근입장 길이 변경으로
가시설 도면과 공법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검토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최초 검토한 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똑같이 재검토 요청을 하면 되는지,
2. 최초 검토 요청할 때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검토기관 선정 의뢰를 통해 타 업체에 검토를 해야하는지
3. 1번 내용과 같이 동일한 기관에 요청을 하는게 맞다면,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제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내용**

가. 질의 내용상 질의하여주신 현장은 종외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종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및 보완에 대한 상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임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재검토 요청시 해당되는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8.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방법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관련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중 낙하물방지망의 시공방법에 관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1단 낙하물방지망에 대하여 시스템방호선반(1단 낙하물방지망)으로 표기 되어 있어 당 현장에서는 근로자 통행 주출입구, 건설용 리프트 주변에는 시스템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1단 전체를 방호선반으로 해석하고 방호선반으로 설치하던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문구를 변경하여 경미변경 처리 후 시스템방호선반 설치와 나머지 부분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문구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경우 경미 변경으로 감리단 승인으로 시스템방호선반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로 문구 변경이 가능 한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문구의 해석도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간소화로 낙하물 방지망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및 검토대상에서 2021년 5월경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수립하며, 검토대상은 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 탭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및 검토 체크리스트'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낙하물방지망에 관련하여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9.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벌과규정 문의(과태료 등)

● **질의 내용**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 미제출 등 관련 과태료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88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벌과규정만 있는 듯한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벌점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건진법 위반내용 및 벌칙, 행정 처분 등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10. 기중기장비 항타작업에 사용시 장비등록기준

● 질의 내용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교량(하천 횡단) 내진보강공사 작업 중
가교설치 과정에서 '기중기'를 이용한 항타 및 항발 작업이 있습니다.

(질의)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7조에서 언급된 건설기계라 함은, 차량등록증 기준인지, 아니면 작업내용 기준인지 질의드립니다. 차량등록증 기준일 경우, 기중기로 적법하게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붙임 사진 참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분은 해당 기계가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기중기 장비로 항타 항발 작업시 건설기계등록증 상 천공기(22) 또는 항타 및 항발기(23)가 아닐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13.1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질의 내용**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지원장비의 경우 특정한 제품이 정해져있나요?
2. 만약 정해져있을 경우 지원장비로 선정되는 절차, 조건 등은 어떻게 되나요?
ex) 당사의 제품을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지원장비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 **회신 내용**

가. 보조·지원사업의 지원 장비 품목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78조(보조·지원의 품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 75조(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에 따라 제 78조(보조·지원의 품목)의 각 호 다중에서 대상 품목의 종류·내용·규격·성능·비교 및 선정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리원은 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추가 대상품목의 선정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13.12. 건설공사 착공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중인 상태이나 현재까지 제출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현장내 가설컨테이너 반입 및 부지정리, 가설울타리 및 세륜기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공사 착공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공사준비 단계는 안전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98조2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설사무소 설치와 부지정리는 공사준비 단계의 공종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세륜기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9조의2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서 공사준비 단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님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법적효력을 갖고자 하신다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13.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서 작성 여부

● 질의 내용

건진법 법률상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 및 검토결과 제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건진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안전진단전문기관 의뢰 가능한 공사(1・2종이 아닌 공)에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작성이 제외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위 사항이 해당할 경우 이행하지 않을시 향후 조치내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동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2조3항7호, 제65조제3항(안전관리) 를 참조하시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2호(정의) '공사감독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여 공사 감리를 의미합니다.

13. 기타

13.14. 파일공사 관련 진단방법 질의

● 질의 내용

현재 저희 현장은 기초공사의 일부인 파일 항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설계도서 및 내역에 의한 SIP공법으로 PHC PILE(Ø500)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항타 작업 중 시멘트 믹서기의 전원선 피복이 불량하여 보수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호스내에 잔여 시멘트 청소후 남은 물이 의도치 않게
파일주변으로 잠시 동안 주입되었고, 이후 바로 정상적인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였습니다
마침 현장을 방문한 발주처 감독이 이상황을 보게 되었고
감독은 현재까지 시공을 마친 파일(약282본)에 대해 전수조사(정밀안전진단)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정재하,동재하,재동재하를 제외한 시험은 없는걸로 파악되었기에
이렇게 국토안전관리원에 문의를 드리는 바이며
현재 저희 상황에 맞는 진단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1항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13조2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PHC파일 내부에 우수 유입에 따른 안전진단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점점검·진단 편] 3.2.4 정밀안전진단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조사·재료시험 방법은 해당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방법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다. 우수유입에 따른 PHC파일의 성능발현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PHC재하시험 종류인 동재하시험 및 정재하시험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기타

13.15. 해체공사 및 증축공사 동시 진행 가능 문의

● 질의 내용

현재 공장 전체면적 중 일부분을 해체하고 증축공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해체공사를 진행중에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득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체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증축허가분에 대한 착공신고를 진행하여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체공사완료보고이전에 해체공사와 증축공사가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일 경우 해당되는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다면 해체공사와 증축공사를 동시에 진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해주신 내용은 건축물 해체신고와 건축물 증축신고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공사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13.16. 대수선공사 감리업체 선정필요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대수선 공사(대수선공사 9개 대상 중 4번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진행 시 감리업체 선정이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 본 법령은 2가지인데 서로 상충하여 문의드립니다.

1.건축주는 증축,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제110조 제4호 가목)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1항1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하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정의)1항8호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회신 내용**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함)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나. 또한 이를 위한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4호가목)

다. 문의내용의 1번 항목은 대수선 공사시 공사감리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2번 항목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공사감리 선정필요여부에 대한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기타

13.17. 안전관리계획 법령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 수행되는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과업 진행에 있어서 작성하고있는 안전관리계획서와

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 안전관리비용 사용에 관한 법령이나 기준은 어떤 법을 참고해야 하나요?

● **회신 내용**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진단 과업을 수행 하면서 작성해야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재해나 사고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치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서로 생각됩니다.

나.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기관으로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시설물 안전법에 관한 법령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산정기준을 고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한다고 되어 있으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4조에는 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같은 지침 제6장에는 안전점검 등의 비용 산정기준, 제8장에는 교육훈련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3. 기타

13.18.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기준(신청자격) 문의

● **질의 내용**

한 구청에서 이번 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업체 모집을 공고하였는데, 해당 공고문에 해당 구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를 거부할 시 신청자격 미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및 제100조의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로 보고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을 실격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업체가 강제적으로 떠안는 일이 맞는 지, 수행기관 모집에 있어서 구청이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5항에는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업무내용 외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기준(신청자격)에 관해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19.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적용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22.10.04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에서 배포한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Tn) 적용 계획(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1년 2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가 개정되며 도입된 '기온보정강도(Tn)'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미미하며 22년 초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도 사고원인 중 하나도 기온보정강도 미적용이 언급된 바,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에서는 '기온보정강도(Tn)' 개념을 전파하기 위하여 충청권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Tn) 표를 만들어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온보정강도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파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레미콘 사용자가)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레미콘을 주문하는 것은 전국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타 지사에서도 기온보정강도 개념 적용을 위한 전파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지역별 타설시점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다르므로 지역별 시공자가 보정강도를 계산하기 용이하도록 각 지사별 기온보정강도 적용 지침을 배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0.04 중부지사에서 배포한 기온보정강도 적용 계획(안)이 좋은 선례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 제천시에서는 기온보정강도 적용 협조요청 공문이 각 현장에 연락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Tn) 적용을 위한 안내지침을 국토안전관리원 본부 차원에서 배포할 계획은 없으신지?

2. 혹시 '22년 10월 중부지사 이후로 타 지사에서 기온보정강도 적용을 위한 전파활동이 실시된 내용이 있는지?

3.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호칭강도 선정 시)관련하여 기온보정강도를 적용하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 기온보정강도(Tn) 적용은 의무사항인가요? 현장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충청권에서는 기온보정강도를 적용하고, 타 지역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 회신 내용

가. 2021년 2월 18일 콘크리트 내구성 국가건설기준(KKCS 14 20 10)이 개정·배포 되어 있으며 기온보정강도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건설기준 체계의 구축은「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운영·관리 및 건설기준 체계를 구축하며 저희 원에서는 현재 기온보정강도 적용을 위한 안내지침 배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나. 기온보정강도 적용에 대한 내용은 위 시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및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20. 타워크레인 조종사 취업 문의

● **질의 내용**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되었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워크레인 면허 취득한지 5년이 넘었는데 취업 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지금도 이렇게 헤메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취업 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홈페이지의 건설기계 e-마당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구인/구직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아래의 매뉴얼에 따라 구직신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매뉴얼 위치 : 홈페이지 우측 상단 “알려드립니다” / [공지] (건설기계 e-마당) 사용자 유형별 매뉴얼 배포

나. 참고로, 타워크레인 인력풀 및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을 추가 안내드리며,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건설협회(02-3485-8277) :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 참여신청
- 건설일드림넷(https://cw.or.kr) : 타워크레인 구인/구직 포함 채용정보 사이트

13. 기타

13.21. 타워크레인 검사원 자격 문의

● **질의 내용**

00건설공사의 타워크레인 점검을 위하여 검사원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한 업체는 노동부, 국토부 지정업체는 아니며, 사업자 종목에 건설기계 안전컨설팅이 있어서 노동부 자율안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진단 업체 요청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시 관리감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 업체는 타워크레인의 점검대행기관의 요건이 되는것인지요.
고용노동부, 국토부 지정업체여야 되는지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6항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제3항에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합니다.

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부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적격 여부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22.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진행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1)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동바리 구조기술사 구조계산의뢰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소요기간이 30일정도 소요되었고, 작성 후 건설산업 종합안전관리 정보망 승인 요청한 바 최종승인(안전관리 계획보완기간)까지 일수.(허가청 접수및 승인)

2) 허가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위하여 입찰공고 및 최종낙찰자선정까지의 소요되는 일수가 3주정도 소요되었슴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수행지정기관까지의 소요되는 일수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건설공사 계약서의 계약조건 등 귀현장의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일반적인 공사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요기간 및 보완작성 소요기간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접수·검토·승인 등의 절차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절차 등은 건설공사 입찰·계약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즉 일반적인 계약조건인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법정기한 초과 등)이 없다면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위 계약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청 또는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2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3조(안전교육) 관련 문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3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에 따르면 유해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흙막이지보공 설치시 특별교육으로 흙막이지보공의 보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교육 실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공사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 그리고 교육 순서 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을 근거로 매일 아침 실시되는 일일 안전교육(일명 TBM)이 당일 교육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특별교육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는 일일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3. 기타

13.24. 계약 공사기간 종료 후 건설공사 중 사고 발생 책임 소재 문의

● 질의 내용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로써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공사와 계약한 공사기간이 종료되었고, (23.04.30.으로 종료)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기한이 지켜지지 못한 사유는 시공사에게 있으며, 저희의 별도 귀책사유는 없다고 여겨져,
추가 기한 연장은 해주지 않을 생각인데, 준공을 위해 시공사는 기한연장없이 공사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저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것도 아니고,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발주자로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귀하의 의견과 같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령 및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한 공사기한까지 발주청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 가능합니다.

나. 그리고 지체상금은 계약한 준공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도급자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며, 준공기일이 경과하였다하여, 즉 지체상금 부과기간이라고 하여 건설공사의 계약조건, 계약당사자간의 지위 등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된 공사기한 이후 건설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는 공사기간 내 건설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기타

13.25. 해상교량 재하시험 문의

● 질의 내용

해상교량 재하시험 관련 교량하부가 바다이고 썰물 시 갯벌이 드러납니다.
서해 쪽이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바지선 이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교량 하부에 발전기, 계측기(처짐계) 등 각종 장비 및 센서를 설치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해상교량에서 적용 가능한 교량재하시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해상교량 재하시험 시 바지선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교량 상부에서 굴절차량, 다굴절차량, 플랫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장비 및 센서 설치 후 재하시험을 시행합니다.

나. 재하시험 중 차량하중의 영향 등 재하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교량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26.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건설공사 착공 가능 범위 문의

● **질의 내용**

[문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항 에서 착공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서 착공의 의미가 건설행위(터파기 등)이 이루어진 실착공을 말하는건지, 인·허가 기관의 서류상 착공신고일을 말하는건지?

2. 긴급한 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서를 먼저 검토하고 승인한 이후 인·허가기관에 착공신고를 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나오는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정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여도 되는건지?
* 인·허가기관에서 위의 조건으로 승인 해주는 경우에 한함.

●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공사 착공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98조2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착공이 가능한 시점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에 발주자(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착공 가능 시점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시점이 됩니다.

다. 착공신고 절차 및 요구서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27.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 유무 문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 중 안전점검 문의입니다.

당사는 교량 및 터널 분야를 등록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입니다.

1. 교량 및 터널분야를 등록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수리시설물의 공사중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교량 및 터널분야를 등록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수리시설물의 공사중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술등급, 교육 이수 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유무, 직무분야 및 자격유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2]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의 직무분야는 건축, 토목 및 종합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직무분야의 자격조건, 기관등록을 위한 기술자 보유 및 교육에 대해 구분하고 있으며, 토목분야에서 교량 및 터널분야와 수리시설분야로 구분하고 있음에 교량 및 터널분야로 등록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수리시설분야의 점검기관으로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 만약 귀 점검기관이 수리시설분야의 자격까지 갖추었다면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위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2]에 따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로서,「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13.28. 지하안전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협의 간소화 건의

●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내 총괄안전관리계획-현장특성 분석 항목에 주변 지장물(지하매설물) 여건과 해당 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의 협의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현장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경우 지하매설물 관련 작성부분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첨부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면 업무 과부하의 해소 및 신속한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 제출이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간소화 제안이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나. 그러나,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하매설물 조사의 정도가 개별 사업 또는 .용역 보고서마다 달라,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에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현장특성분석에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에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가 첨부되어 입증된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안전관리계획서 해당내용에 명시한다면 현장의견으로 갈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기타

13.2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은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7조 제1항에서 나열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우선, 건진법 시행령 제67조제 1항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법 제46조제1항에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 따라서, 건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말씀하신 설계 안전성 검토 생략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13.30.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등 CSI 정보망 외 타기관 제출 여부

● 질의 내용

민간발주처에서 특정업무 위임을 통하여, 도급계약 범위 외 임대차 관련 공사 대행을 제 3의 업체에 위임을 하였다고 품질시험계획,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등을 그 업체에 전달하는 행위를 하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CSI 정보망에 등록한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의 현장 담당자, 감리등 현장 관리자를 변경할수 있을까요?

● 회신 내용

가. 시공사, 현장 대리인의 변경, 공사 감리자의 변경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해당 현장의 담당자가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31. 가설구조물의 종류 문의(터널 연직갱(수직갱) 출입 통로)

● **질의 내용**

터널 연직갱을 굴착시 작업자들이 굴착바닥면에 출입 및 이동하는 가설구조물로서 높이 50m 이상의 가설계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높이가 31m이상인 비계' 또는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등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수직갱 굴착공사 중 출입 및 이동을 위한 가설구조물은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 중 어느 가설구조물에 해당할지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1호의 '높이가 31m이상인 비계'와 제4의2호의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보다는 제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에 가까워 보입니다.

나. 또한, 가설구조물의 분류보다는 해당 가설구조물은 수직갱 굴착 중 발파진동에 따른 가설구조물 용접부 균열 파손 등 접합부 손상위험이 있어 가설구조물 안전성 계산 결과에 맞게 설치 후 점검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기타

13.32. 제2종시설물의 초기점검 시 재하시험과 구조해석 실시여부 문의

● 질의 내용

1종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지만 2종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에 중대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2종시설물 교량의 초기점검에서 재하시험과 구조해석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제2항에는 “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의 포함 여부 등 추가조사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13. 기타

13.33.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에 따라 안전성계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감리가 맞는지, 참여기술인은 시공사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리와 시공사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면 구조계산서마다 날인해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내용

가. 위 안내사항은 설계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자가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는 사항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자)는 설계사의 참여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 또한, 법 제48조제4항의 시공 상세도면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가 설계용역시 납품한 설계도서가 아니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자 및 검토자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합니다.

다. 참고로 위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하는 안전성 검토서와 다릅니다, 즉,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은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별도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필요로 합니다.

13. 기타

13.34.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 유무 문의(1)

●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지방도확장포장공사 현장으로 당초[폭발물을 사용하는공사, 천공기(높이10m 이상), 흙막이 지보공(상수도) 등] 공정에 따라 2022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추가 과업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점검 대상이 추가 된 경우 (흙막이 지보공, 지방상수도 등) 추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해야 하는지, 기존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 과업변경 등으로 수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에 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기관을 모집, 선정 관련 업무 또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으로 안전진단업체 선정 관련 문의사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13.35. 정기안전점검기관 자격 유무 문의(2)

● 질의 내용

1.정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사업승인 완료된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본 건축물 착공전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승인에 포함된 기부채납 공사)를 선 착공 준비에 있읍니다.
안전관리계획서 1차 검토받았고 인.허가 기관인 건축과에서 정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위해 지정 공고를 낼려고
하는데 수행기관 등록 명부 분야가 건축으로 진입도로(옹벽,가교,교량포함) 정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내용

가.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유무, 직무분야 및 자격유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2]에 정의하고 있으며,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의 직무분야는 건축, 토목 및 종합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직무분야의 자격조건, 기관등록을 위한 기술자 보유 및 교육에 대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위 지침 [별표2]에 따라「시설물 안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직무분야는 동법 제23조제1항 [별표9]에 따른 등록 분야에 해당하여야하며,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로서,「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 대상 건설공사가 진입도로로 옹벽, 가교 교량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는 불가하며,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셔야합니다.